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778-01

혁신경제

기업경영 ...

# 지식재산 경영과 기업 성과 : 복합적 권리 활용을 중심으로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nd Firm Performance  
: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undles

2020. 12.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2020년도 기초연구과제 최종보고서

혁신·경제 - 기업경영

# 지식재산 경영과 기업 성과: 복합적 권리 활용을 중심으로

Innovation and Economies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nd Firm Performance: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undles

2020. 12.



#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혁신·경제 - 기업경영 - 지식재산 경영과 기업 성과: 복합적 권리 활용을 중심으로”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 구 기 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책 임 연 구 자 : 강경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

연 구 원 : 김혜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임연구원)

김아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임연구원)



## 국문 요약



### 제1장 서론

- 지식재산을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복합적) 권리 유형으로 보호함으로써 무형의 지식재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분석 연구가 요구됨
  - 기술의 융복합화,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등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권리 유형을 통한 보호 필요성 증가
  - 선행 연구에서 특허권 보유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이 주로 이루어짐
  - 지식재산을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권리 유형으로 보호하는 현황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 필요
  
- 본 보고서에서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전략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다루고자 함
  -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 현황 파악
    - \*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 기업이 혁신 성과를 무형의 자산으로 보호하기 위해 서로 다른 권리 유형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이용하는 활동을 의미
  - 산업 단위에서의 통계분석, 관련 사례분석, 기업단위에서의 계량분석
  -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의 특성,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과 기업 성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 제2장 지식재산권 제도 및 복합적 권리 활용 사례

- 지식재산권법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의 총칭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발명 또는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발명과 창작의 성과물에 대한 이용 활성화를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식재산권법을 운용
  - 우리나라는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헌법 제 22조 제2항에 근거하여 특허법, 저작권법 등 개별법을 제정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산업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는 출원과 심사 과정을 거쳐 등록이 된 때 권리가 발생되며 존속기간 내에서 독점적 실시(사용) 가능
  -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별도의 출원, 심사, 등록 등의 절차를 요하지 않으며 창작된 때에 즉시 권리가 발생되고, 존속기간 내에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에 관한 배타적 권리 및 저작인격권 인정
  - 영업비밀,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식물신품종 등 기존의 산업재산권법 또는 저작권법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새로운 영역의 지식재산권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보호
- 지식재산권에 관한 개별법은 제도의 취지(목적), 보호대상, 보호요건, 권리 효력 및 존속기간 등이 서로 상이함
- 각 개별법은 서로 저촉되지 않는 한 각각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제품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첩적 보호도 가능
  - 즉, 기업이 하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했을 때 보호 영역이 넓어지고 보호 수단이 다양해져, 실제 지식재산권 분쟁 상황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
-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조사하는 하나의 접근법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에 여러 권리 유형이 관련된 사건을 분석
-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을 키워드로 선정한 후,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판례를 검색한 결과, 두 개 이상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내지는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은 53건으로 파악
  -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들은 서로 저촉되지 않는 한 각각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권리자는 법적 분쟁 발생 시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며, 각각의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음

- 하나의 상품에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례로, 전기전자, 제약, 음식료 분야 사례 조사
  - 대표적인 예로 갤럭시 폴드, 갤럭시 Z 플립을 출시한 S 전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폴더블폰과 관련된 다수의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등록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며 폴더블폰 시장을 주도
    - S 전자는 폴더블폰 자체에 대한 상표출원과 별개로 주요 부품(예: 힌지(hinge),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상표출원
  - C사, O사, D사 등에 대한 서면자문 결과, 기업이 특허권을 바탕으로 상표권, 디자인권 등 이종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 및 자사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 상승, 통일적 마케팅, 외부 자금 유치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 제3장 지식재산권 복합적 활용과 효과

- 기업의 특허권 보유에 따른 효과 연구는 다양한 분석이 축적되어 온 반면, 상표권 보유, 산업재산권 보유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진행됨
  - 특허권 보유는 기업의 생산성, 매출증가율, 종업원 증가율, 후속 혁신활동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외부자금 유치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됨
  - 상표권은 비기술적 혁신의 성과물로 부각되고 있으며, 기업의 상표 활동이 주식시장 가치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됨
  - 특허, 상표,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의 보유는 기업의 수익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연구는 최근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현황파악 위주로 진행되어 정량적 실증연구가 미흡한 상황임
  - Jennewein et al.(2010)은 고기술 분야(high-tech) 산업에서, 특허권과 상표권이 기술기반의 자산과 시장기반의 자산의 역할을 하며 가위의 양날처럼 보완적이고 상호 의존적으로 작용한다고 파악
  - Helmers and Schautschick(2013)은 산업별 지식재산권 묶음(IPR bundle)의 활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의약품, 화학, 통신 등 강한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구사하는 산업 분야에서 권리의 보완적 활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
  - EUIPO(2019)는 지식재산권을 복합적으로 보유한 경우, 기업의 성장가능성이 높아지는지 분석

## 1)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보유 현황과 기업 성장

### □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출원 활동은 특히 중심으로 이루어짐

- 최근에는 상표출원이 증가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내국인의 상표출원이 특히 출원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에 이룸
- 기관유형별 출원 중 중소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건수 중 39.8%, 상표 출원 중 72.7%, 디자인 출원 중 75.8%를 차지
- 2018년 기준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46.9%, 상표권 보유기업은 46.8%, 디자인권 보유기업은 22.3%
  -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30.5%,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같이 보유한 경우가 19.8%,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같이 보유한 기업이 17.9%
  -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산업재산권 보유 기업 비중이 높고, 산업별 산업재산권 포트폴리오에 특징이 존재

### □ 산업재산권의 복합적 보유에 따른 효과 분석

- 기업이 산업재산권을 복합적으로 보유한 경우,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 종업원 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만 추려서 살펴본 결과에서도 산업재산권의 복합적 보유와 기업 성장이 양의 관계에 있음

## 2)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과 효과

### □ 기업의 복합적 지식재산권 활용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그 효과 분석 실시

- 기업의 복합적 지식재산권 활용 현황 파악
  - 산업재산권 보유 포트폴리오의 특징이 구분되는 산업 분야에 대한 조사
    - \* 제조업 중 상표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식음료/의약품 분야와 특허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전자제품 분야, 서비스업 중 산업재산권 보유비율이 높은 정보 서비스 분야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복합적 지식재산권 활용은 산업 분야에 따른 특징\*과 더불어 내수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기업보다 수출기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 특허권 & 상표권의 복합적 활용전략은 의약품 분야에 속한 경우, 특허권 & 디자인권의 복합적 활용

전략은 전기전자 분야에 속한 경우, 특허권 & 디자인권, 상표권 & 디자인권의 복합적 활용전략은 전기 전자 분야에 속한 경우 더 많이 활용

- 기업의 복합적 지식재산권 활용전략과 기업 성과(매출, 투자유치 등) 간의 관계 분석
  - 복합적 지식재산권 활용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매출 규모가 크고, 외부로부터 자금조달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제4장 결론

- 본 연구는 기업의 무형자산을 다양한 지식재산권 유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활동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의미
  - 지식재산권 권리 유형 보유의 복합성과 기업 성장 간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두 가지 권리 유형을 보유한 경우와 세 가지 권리 유형을 보유한 경우, 기업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전략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 특허권 & 상표권의 복합적 활용전략은 의약품 분야, 특허권 & 디자인권, 상표권 & 디자인권의 복합적 활용전략은 전기전자 분야에 속한 경우 더 많이 활용
  - 권리결합 유형 전반에서 수출활동이 있는 기업이 내수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기업보다 복합적 권리 활용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
  - 복합적 권리를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수준과 기업의 매출 규모 간에 양의 관계를 가지며, 외부자금조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 본 연구는 데이터의 부족 등으로 인해 분석모델의 한계를 보이며, 관련 사례 연구의 필요성 등 후속 과제를 남김
  - 산업재산권의 복합적 활용에 따른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아 분석모델의 한계가 존재
    - 산업재산권 보유와 기업 성장의 경우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분산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산업재산권의 복합적 활용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데이터의 한계로 패널 분석을 실시하지 못함
    - 산업재산권 보유와 기업 성장에서는 산업재산권 활동과 기업의 성장 사이의 시차(time

lag)를 고려하였으나, 그 외의 연구에서는 산업재산권의 복합적 활용과 기업 성과 간의 시차를 고려하지 못함

- 산업재산권 복합적 활용에 대한 산업 분야별 특성을 제한적으로만 확인
- 정량분석을 통해 권리의 복합적 활용과 기업 성과 간의 양의 상관성은 확인하였으나, 여전히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
  -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해석적 결과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필요
  - 특히 산업 분야별 특징 및 성공사례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필요

<b>제 1 장</b>	<b>서 론</b>	<b>1</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목적 .....	7
<b>제 2 장</b>	<b>지식재산권 제도 개괄 및 복합적 권리 활용 사례</b>	<b>9</b>
	제1절 서설 .....	11
	제2절 지식재산권 제도 개관 .....	14
	I. 특허법 .....	14
	II. 실용실안법 .....	16
	III. 디자인보호법 .....	17
	IV. 상표법 .....	19
	V. 저작권법 .....	21
	VI.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 .....	23
	VII. 기타 .....	25
	제3절 복합적 권리 활용 관련 판례 분석 .....	27
	I. 조사 개요 .....	27
	II. 조사결과 분석 .....	29
	III. 구체적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29
	제4절 복합적 권리 활용 관련 사례조사 .....	37
	I. 전기전자 분야 .....	37
	II. 의약품 분야 .....	44
	III. 음식료품 분야 .....	46
	제5절 소결 .....	47

제 3 장

지식재산권 복합적 활용과 효과

49

제1절 지식재산권 효과 관련 선행연구 .....	51
I. 특허 보유의 효과 .....	51
II. 상표 보유의 효과 .....	52
III. 산업재산권 보유의 효과 .....	53
IV. 권리의 복합적 활용 .....	54
제2절 산업재산권 활동 현황 .....	56
I.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 .....	56
II.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	60
제3절 산업재산권 복합적 보유와 기업 성장 .....	64
I. 연구 개요 .....	64
II. 데이터 및 주요 변수 .....	65
III. 분석모형 .....	66
IV. 분석결과 .....	67
제4절 산업재산권 복합적 권리 활용 현황 .....	73
I. 권리의 복합적 활용 조사개요 .....	73
II. 지식재산권 활동 현황 .....	74
제5절 산업재산권 복합적 권리 활용의 특징 .....	81
I. 연구 개요 .....	81
II. 데이터 및 주요 변수 .....	81
III. 분석모형 .....	82
IV. 분석결과 .....	84
제6절 산업재산권 복합적 권리 활용의 효과 .....	89
I. 연구 개요 .....	89
II. 데이터 및 주요 변수 .....	89
III. 분석모형 .....	91
IV. 분석결과 .....	91
제7절 소결 .....	96

# CONTENTS

제 4 장	<b>결 론</b>	<b>97</b>
	제1절 주요 결과요약 및 시사점 .....	99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	100
	<b>참고문헌</b>	<b>101</b>
	<b>부 록</b>	<b>105</b>
	1. 기업 지식재산 경영활동 조사 .....	107

## 표 목차

표 2-1	주요 지식재산권법 비교 .....	13
표 2-2	상표법 제34조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	20
표 2-3	저작인접권의 내용 .....	22
표 2-4	부정경쟁행위 10가지 유형(부경법 제2조 제1호) .....	24
표 2-5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부경법 제2조 제3호) .....	25
표 2-6	두 개 이상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판례 건수 .....	28
표 2-7	두 개 이상의 지식재산권이 쟁점이 된 판례 건수 .....	28
표 2-8	‘00 갤럭시 Z Flip’ 상표출원 현황 .....	40
표 2-9	‘Hideaway Hinge’ 상표출원 현황 .....	41
표 3-1	전 세계 산업재산권 출원통계(1995~2018) .....	57
표 3-2	우리나라 내국인의 산업재산권 출원통계(1995~2018) .....	58
표 3-3	산업별(대분류 기준)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비중(2018년 기준) .....	60
표 3-4	산업별(대분류 기준)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비중(2018년 기준) .....	61
표 3-5	제조업 분야별(중분류 기준)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비중(2018년 기준) .....	62
표 3-6	제조업 분야별(중분류 기준)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비중(2018년 기준) .....	63
표 3-7	주요 변수 .....	65
표 3-8	데이터셋 구성(n=14,184) .....	67
표 3-9	주요 변수 관련 기초통계량(n=14,184) .....	68
표 3-10	변수 간 상관관계(n=14,184) .....	68
표 3-11	주요 분석 결과(1): 제조업(프로빗 분석) .....	69
표 3-12	주요 분석 결과(1): 제조업(프로빗 분석) - 한계효과 .....	69
표 3-13	주요 분석 결과(2): 제조업(프로빗 분석) .....	69
표 3-14	주요 분석 결과(2): 제조업(프로빗 분석) - 한계효과 .....	70
표 3-15	주요 변수 기초통계량(중업원 수 300인 미만 기업) .....	70
표 3-16	변수 간 상관관계(n=11,726) .....	70
표 3-17	주요 분석 결과(3): 제조업 중소기업(프로빗 분석) .....	71
표 3-18	주요 분석 결과(3): 제조업 중소기업(프로빗 분석) - 한계효과 .....	71
표 3-19	주요 분석 결과(4): 제조업 중소기업(프로빗 분석) .....	72
표 3-20	주요 분석 결과(4): 제조업 중소기업(프로빗 분석) - 한계효과 .....	72
표 3-21	설문내용의 구성 .....	73
표 3-22	설문대상 및 응답기업 구성 .....	74
표 3-23	응답기업 평균 근로자 수 .....	74
표 3-24	응답기업 평균 매출액 .....	75
표 3-25	매출액 중 각 비즈니스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 - B to B .....	75
표 3-26	매출액 중 각 비즈니스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 - B to C .....	76
표 3-27	매출액 중 각 비즈니스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 - 기타 .....	76
표 3-28	혁신 성과물 보호 위한 지식재산 확보 선호도 .....	77
표 3-29	권리를 복합적으로 보유하는 전략 활용 - 특허·실용신안권 & 상표권 .....	78
표 3-30	권리를 복합적으로 보유하는 전략 활용 - 특허·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78
표 3-31	권리를 복합적으로 보유하는 전략 활용 - 상표권 & 디자인권 .....	79
표 3-32	권리를 복합적으로 보유하는 전략 활용 - 특허·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	79
표 3-33	복합적 지식재산권 확보 필요성 판단, IP 포트폴리오 구축 설계 단계 - 1순위 .....	80

# CONTENTS

표 3-34	권리 복합적 활용 전략의 효과 판단	80
표 3-35	주요 변수	82
표 3-36	주요 변수 관련 기초통계량(n=395)	84
표 3-37	변수 간 상관관계(n=395)	84
표 3-38	주요 분석 결과(5):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	85
표 3-39	주요 분석 결과(5):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 - odds ratio	86
표 3-40	주요 분석 결과(6):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	87
표 3-41	주요 분석 결과(6):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 - odds ratio	87
표 3-42	주요 분석 결과(7):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	88
표 3-43	주요 분석 결과(7):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 - odds ratio	88
표 3-44	주요 변수	90
표 3-45	주요 변수 관련 기초통계량(n=395)	92
표 3-46	변수 간 상관관계(n=395)	92
표 3-47	주요 분석 결과(8): 준로그함수 분석	93
표 3-48	주요 분석 결과(9): 프로빗 분석	93
표 3-49	주요 분석 결과(9): 프로빗 분석 - 한계효과	94

## 그림 목차

그림 1-1	S&P 500 기업의 유형자산 vs 무형자산(1975~2018)	3
그림 1-2	무형자산의 보험가능성 수준	4
그림 1-3	전 세계 산업재산권 출원 활동 추이	5
그림 1-4	하나의 상품과 연계된 다양한 권리(모식도)	6
그림 2-1	지식재산권 제도: 보호대상에 따른 분류	12
그림 3-1	Technology-life-cycle에 따른 기술적 자산과 브랜드 자산의 전략적 기능	54
그림 3-2	전 세계 산업재산권 출원 활동 추이(1995~2018)	56
그림 3-3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출원 활동 추이(1995~2018)	58
그림 3-4	기관유형별 출원비중(2018년 기준)	59
그림 3-5	연구개발 및 혁신 성과물 보호 전략	77

혁신·경제 - 기업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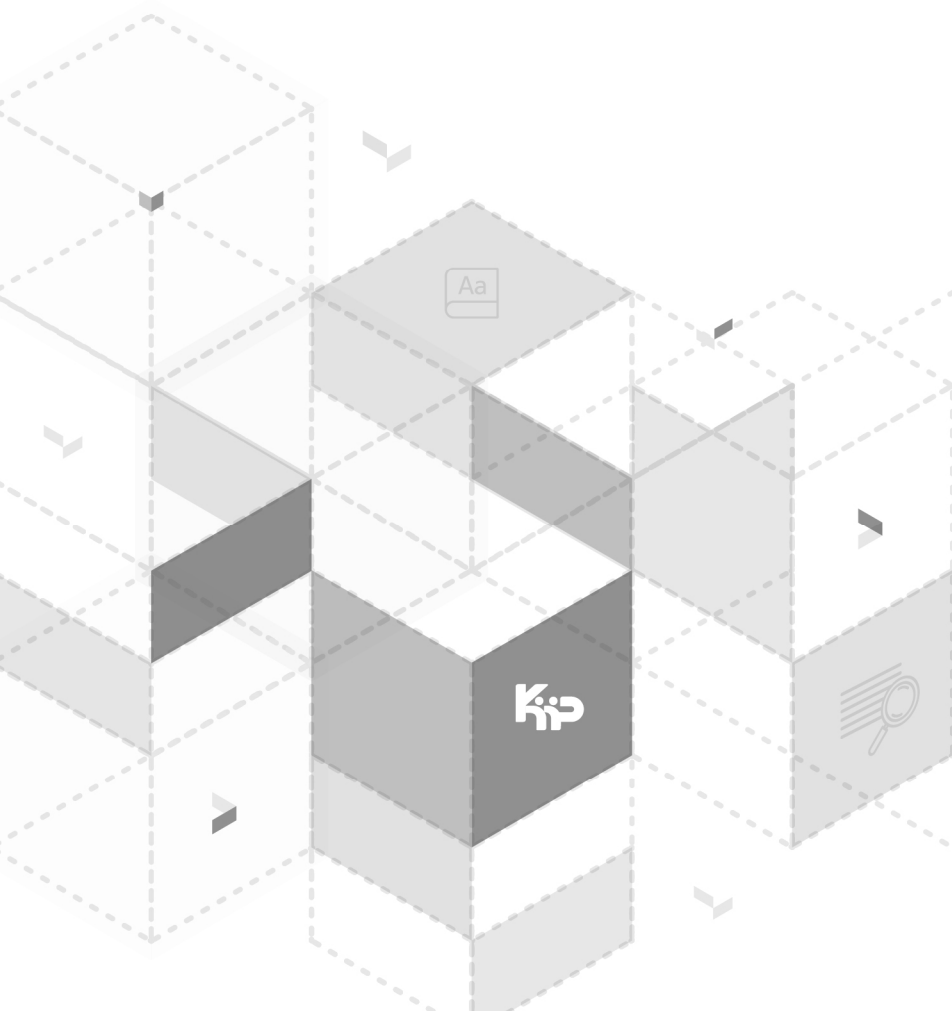
지식재산 경영과 기업 성과: 복합적 권리 활용을 중심으로

#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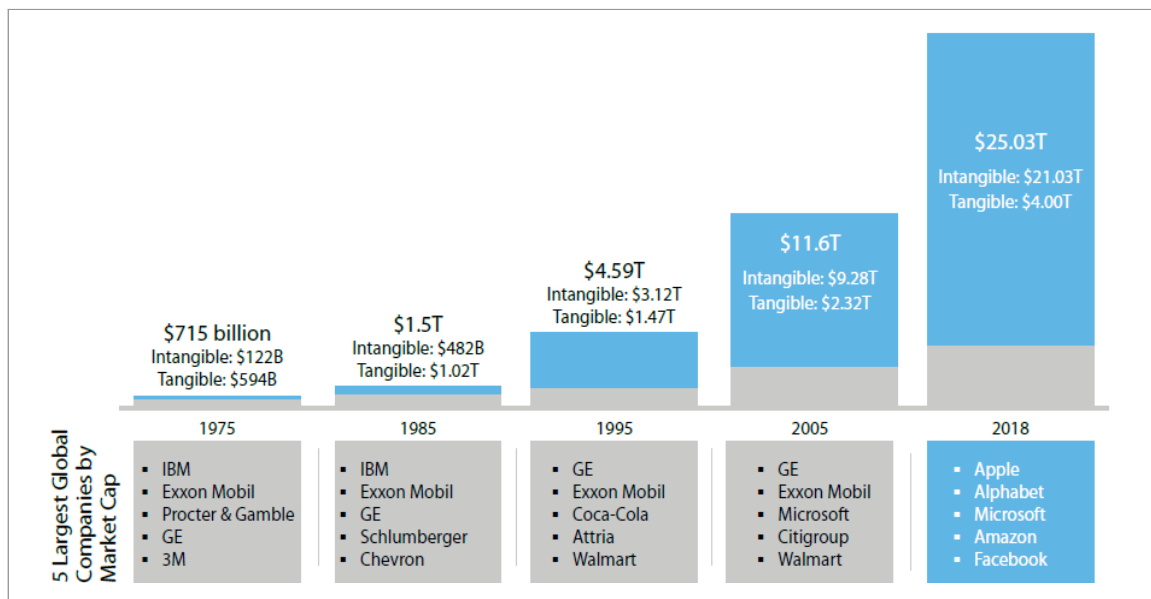
## 제1절

### ● ●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기업의 가치는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AON과 미국 연구기관이 S&P 500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자산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는 기업의 가치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가치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5년에는 17%에 불과하였던 것에 반하여, 2018년에는 무려 84%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AON·Ponemon Institute, 2019). 또한 1975년에는 IBM, GE, 3M 등 제조 관련 기업들이 상위기관에 포진된 반면, 2018년에는 Apple, Amazon, Facebook, Microsoft, 구글의 Alphabet 등 정보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AON·Ponemon Institute, 2019).

▼ 그림 1-1 | S&P 500 기업의 유형자산 vs 무형자산(1975~2018)



출처: AON·Ponemon Institute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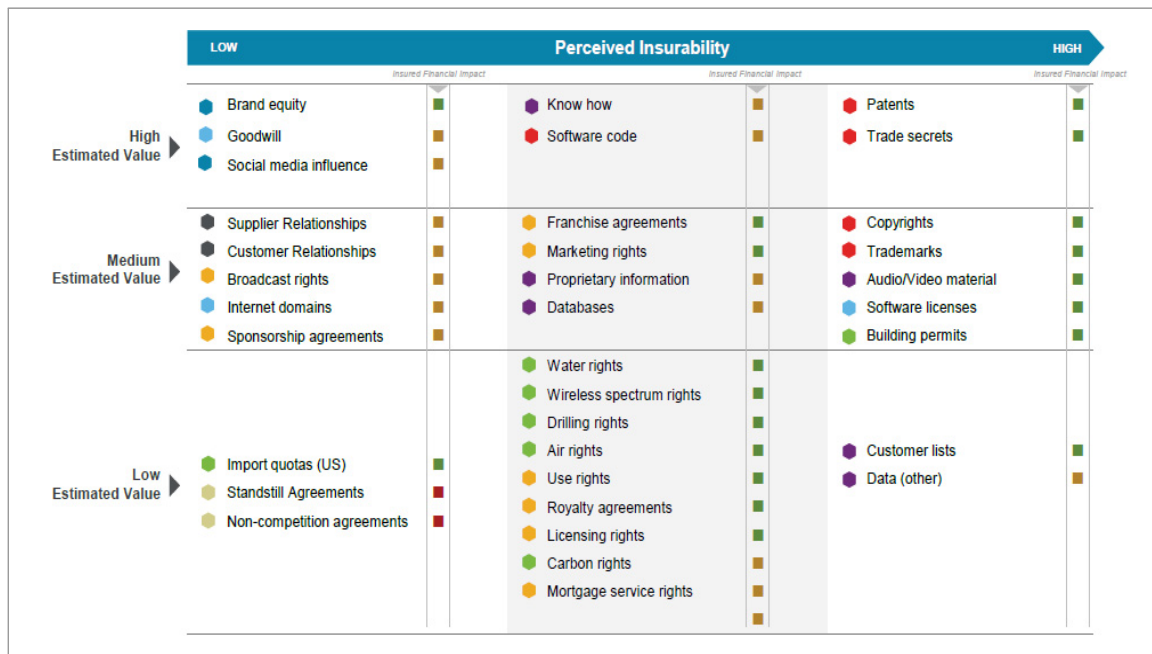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은 무형자산을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 자산<sup>1)</sup>’으로 정의하고, 세계지식자본기구(WICI, The world

1) an identifiable non-monetary asset without physical substance(IFRS homepage).

intellectual capital initiative)에서는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단독으로 혹은 다른 물질적 자원이나 비물질적 자원과 결합하여 회사의 장단기 가치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2)’이라고 정의하였다(IFRS homepage, WICI, 201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는 “기계, 구조물 등과 같은 물리적 형태를 갖지 않는 자산”을 무형자산 또는 지식기반자본(knowledge-based capital)이라 정의하고, 컴퓨터화된 정보(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computerised information), 혁신적인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innovative property), 경제적 역량(브랜드자산, 인적자본, 조직의 노하우, 네트워크 등 economic competencies) 등으로 분류한 바 있다(OECD, 2013).

기업 가치에서 무형자산의 역할이 증시되고 있으나, 무형자산은 가치측정의 어려움, 내재적 위험과 보호의 문제 등 근본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는데, 가치손상적인 요인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자산이 지식재산권이다. AON은 무형자산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특허권, 영업비밀,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험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AON·Ponemon Institute, 2019).

▼ 그림 1-2 | 무형자산의 보험가능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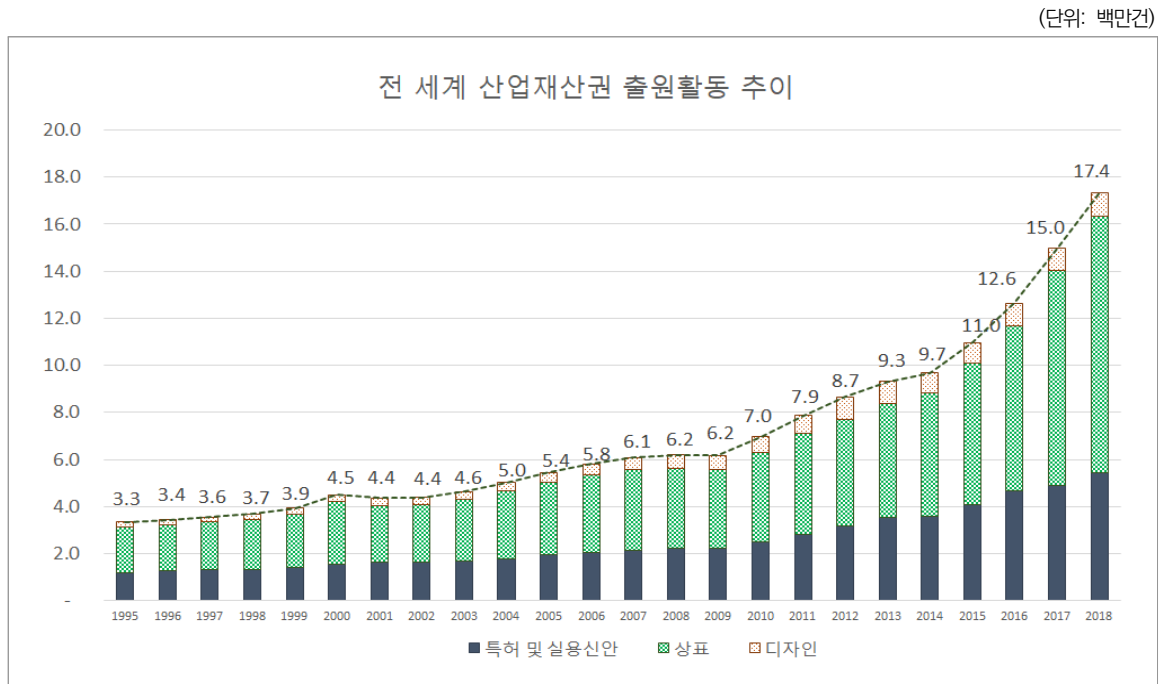


출처: AON·Ponemon Institute(2019)

2) non-physical resources which, either alone or in conjunction with other tangible or intangibles resources, can generate a positive or a negative effect on the value of the organization in the short, medium and long term(WICI, 2016).

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의해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로 출원, 등록 등의 절차를 통해 발명, 기술개발,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법적 권리의 근거를 갖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무형자산 중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술간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사업모델이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전 세계에서 지식재산권 확보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그림 1-3 | 전 세계 산업재산권 출원 활동 추이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2020. 5. 수집) 자료를 토대로 작성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에 300만 건 규모이던 산업재산권은 2018년 약 5배 수준인 1,520만 건 규모로 성장하였다. 특이할 만한 것은 특허 출원 규모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상표와 디자인의 출원 규모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의 융복합화와 함께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수요자가 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수요자 중심의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급격한 환경변화 하에서 특허를 활용한 혁신적인 제품생산과 더불어 브랜드, 디자인에 의한 차별화가 더욱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추진되는 혁신활동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권리를 복합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는 전략적 활동이 필요하다.

▼ 그림 1-4 | 하나의 상품과 연계된 다양한 권리(모식도)



지식재산과 기업경영과 관련된 연구는 '특허권'과 관련된 접근이 주를 이루어왔다. 기업의 R&D 투자와 특허, 기업의 특허보유에 따른 효과, 기업의 특허활용 전략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온 반면,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효과에 대한 연구, 다양한 권리를 활용한 복합적인 지식재산 경영활동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상표와 기업 성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활용(IPR bundle)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기업이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복합적 권리 활용이 기업 성과에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제2절

●●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기업이 혁신활동을 자산으로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하고 있는 현황과 그 효과를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특허권’ 뿐만 아니라 ‘상표권’, ‘디자인권’ 등 다양한 권리 유형이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권리를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과에 특징이 있는지 분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범위에 대해 살펴보고, 복합적 권리활용의 사례를 조사하도록 하겠다. 제3장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과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앞서 진행되어온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고,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유 및 활용현황을 파악한 뒤,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 지식재산권 제도 개괄 및 복합적 권리 활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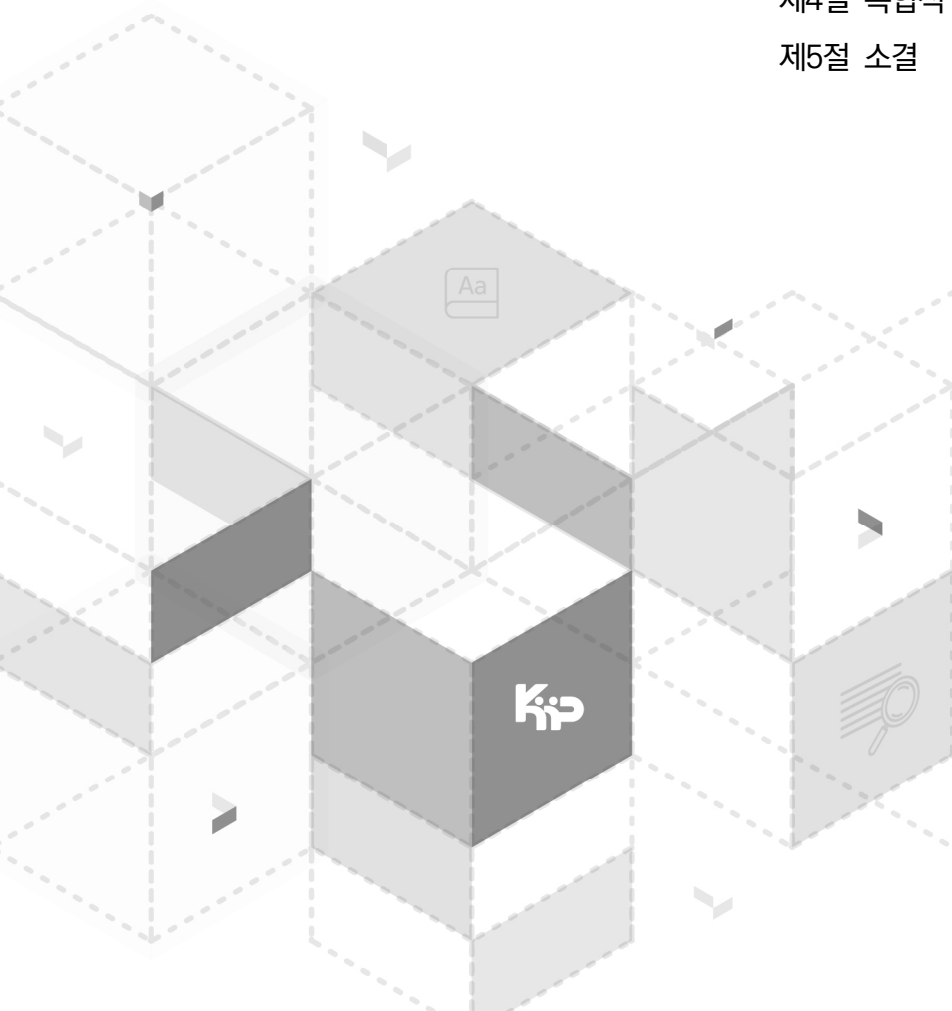
제1절 서설

제2절 지식재산권 제도 개관

제3절 복합적 권리 활용 관련 판례 분석

제4절 복합적 권리 활용 관련 사례조사

제5절 소결





## 제1절 ●● 서설

지식재산권은 강학상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인간의 지식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창작물에 대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독점권’<sup>3)</sup>,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sup>4)</sup>,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와 표지(標識)’<sup>5)</sup> 등으로 정의된다(손승우, 2019; 송영식 외, 2015; 윤선희, 2015). 또한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로, 지식자산을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현상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 법적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부여된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협의(狹義)의 지식재산권은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 성문법에 의해서 지식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같이 성문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 외에도 계약, 불법행위 법리 등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도 광의(廣義)의 지식재산권에 포함된다. 본 장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은 산업에 이용되는 발명과 디자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에 관한 권리를 ‘산업재산권’으로, 문학과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에 관한 권리는 ‘저작권’으로 분류되어 왔지만, 현대에는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이분법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영역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전통적 분류 방식의 의미가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을 지식재산권법이라 총칭하는데, 대체로의 국가들은 발명과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발명과 창작의 성과물에 대한 이용 활성화를 통해 산업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지식재산권법을 두고 있다. 지식재산권법은 아이디어나 정보를 생산한 자에게 일정한 범위의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아이디어나 정보의 생산을 유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하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sup>6)</sup>하

3) 손승우, 「지식재산권법의 이해」(제3판), 동방문화사, 2019, 3면.

4) 윤선희, 「지식재산권법」(제16정판), 세창출판사, 2015, 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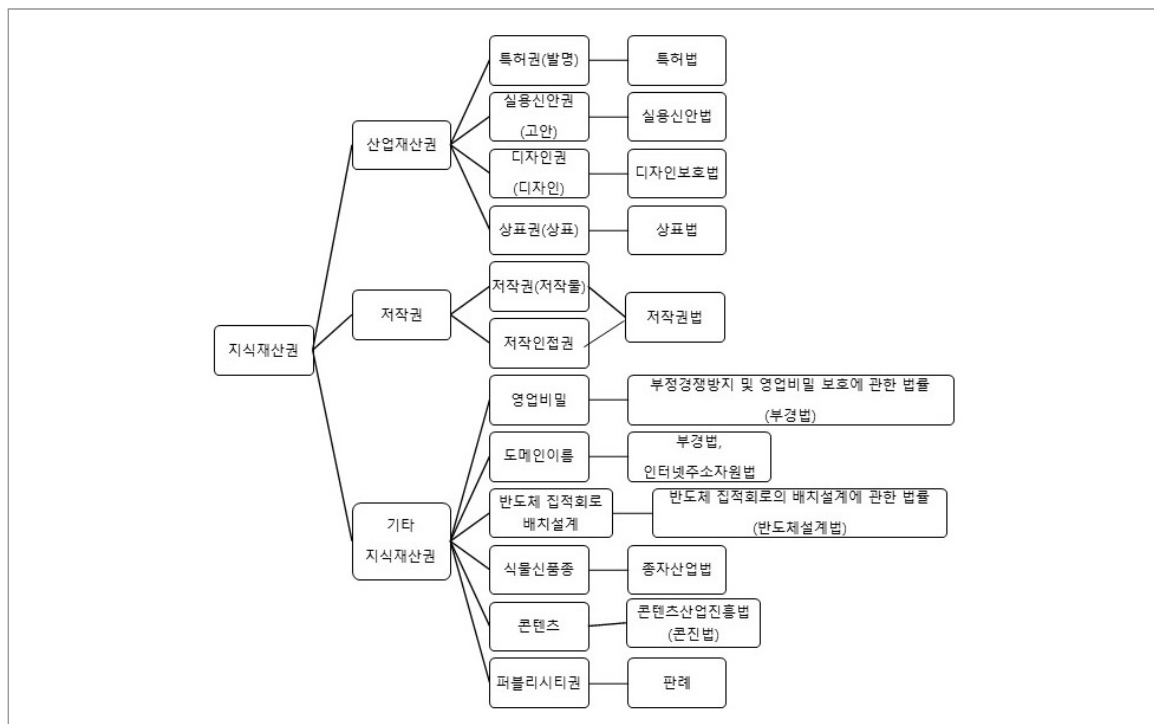
5) 송영식·이상정·김병일, 「지적재산법」(제4정판), 세창출판사, 2015, 4면.

고 있다(정상조·박준석, 2019).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그 국가가 처한 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각 국가의 지식재산권 체계는 WTO/TRIPS와 같은 다자간 협상과 FTA와 같은 양자 간 협상의 영향으로 큰 틀에서 유사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는 헌법 제 22조 제2항에 근거하여 특허법, 저작권법 등을 제정하고, 발명, 저작물 등의 지식재산을 개별법에 의해 규율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 조성을 통해 지식재산의 가치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통일적이고 일관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은 보호대상에 따른 개별법의 분류를 도식화한 것이다.

현행 지식재산권법에 따르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산업재산권법은 특허청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각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는 출원과 심사 과정을 거쳐 등록이 된 때에 권리가 발생된다. 반면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저작물은 창작된 때 즉시 권리가 발생되고, 별도의 출원, 심사, 등록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존의 산업재산권법 또는 저작권법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새로운 영역의 지식재산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이하, ‘부경법’)이며, 이 법은 특허청이 관장한다.

▼ 그림 2-1 | 지식재산권 제도: 보호대상에 따른 분류



6) 정상조·박준석, 「지식재산권법」(제4판), 홍문사, 2019, 5면.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에 관한 개별법은 각 법의 목적에 따라 보호대상, 보호를 위한 등록(보호) 요건을 달리하고 있고, 그에 따른 권리 효력 및 존속기간 등이 상이하다. 이는 다양한 기술, 상표, 디자인적 요소가 결합된 하나의 제품은 각 개별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의 지식재산권을 통해 보호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각 개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판례분석, 인터뷰 및 문헌조사를 통해 하나의 제품(서비스)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지식재산권이 복합적으로 활용된 사례를 검토하고, 실제 사례에서 지식재산권 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 표 2-1 | 주요 지식재산권법 비교

	특허법 /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경법
법의 목적	발명/실용적 고안의 보호·장려와 그 이용 도모를 통한 기술 발전 촉진과 산업발전에 기여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기여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기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 행위와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
보호대상	발명, 고안(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성이 있으면 발명, 없으면 고안)	디자인(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 있을 것)	상표(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저작물(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부정경쟁행위로부터의 보호, 영업비밀
등록 (보호) 요건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사용의사, 식별력	창작성	비밀성, 경제성, 관리성(영업비밀의 경우에 해당)
권리 효력	독점적 실시	독점적 실시	독점적 사용	복제 등에 관한 배타적 권리 및 인격권	금지청구
존속기간	(특허)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 출원일 후 20년 (실용신안)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10년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 가능)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저작인접권은 실연을 한 때, 음반에 음이 고정된 때, 또는 방송을 한 때로부터 발생하여 그 다음 해부터 70년)	-

출처: 개별법 규정의 관련 내용을 정리

## 제2절

## 지식재산권 제도 개관

## I 특허법

## 1. 목적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특허법 제1조). 즉, ‘발명의 보호·장려’와 ‘발명의 이용 도모’의 궁극적인 목표는 산업발전이다. 이때 ‘발명의 보호’란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 업(業)으로서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하는 권리, 즉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발명의 이용’은 발명자에 의한 발명의 공개와 발명의 실시를 통해 공중에게 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sup>7)</sup>한다(윤선희, 2019).

## 2. 보호대상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발명이다.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특허법 제2조). ‘자연법칙’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원리원칙을 의미하며, 자연법칙 그 자체나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단순한 정신활동은 발명이 될 수 없다. 또한 ‘기술’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합리적 수단으로서 기술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반복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발견은 ‘창작’이 될 수 없다. ‘고도한 것’이란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명(自明)하지 않은 것으로 창작 수준이 높을 것을 의미한다.

7) 윤선희, 「특허법」(제6판), 법문사, 2019, 4면.

### 3. 등록요건

우리 특허법 제29조에서는 특허요건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하고 새로운 것으로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을 명시하고 있다(특허법 제29조). 즉, 특허요건으로써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요한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산업과정에서 반복·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장래 실시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고, 경제성이나 인·허가의 문제와는 무관하다. 이때의 실시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또는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행위(물건발명),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방법발명), 실시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행위(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를 뜻한다(특허법 제2조 제3호).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더라도,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신규성’이 인정될 수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진보성’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공용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실무상 진보성은 등록거절, 정정,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발명을 둘러싼 거의 모든 유형의 쟁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sup>8)</sup>이 되고 있다(조영선, 2018).

### 4.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특허 출원 및 심사 절차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특허법 제88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 업(業)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때 ‘업으로서’는 광의의 경제활동의 하나로서 실시하는 것을 뜻하며, 단순히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특허권자는 스스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실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자는 타인이 허락 없이 동일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특허권의 소극적 효력)도 가진다.

8) 조영선, 「특허법 2.0」(제6판), 박영사, 2018, 124면.

## II 실용신안법

### 1. 목적

실용신안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실용신안법 제1조).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등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혁신적인 발명(특허법상의 발명) 외에 소발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법과 별도로 실용신안권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2. 보호대상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은 고안이다. 실용신안법에서는 고안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하고 있다(실용신안법 제2조). 특허법상의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한 것’일 것을 요하나, 실용신안법의 고안은 고도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요컨대 실용신안법과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지지만, 발명 수준에 차이가 있다.

### 3. 등록요건

우리 실용신안법 제4조는 실용신안등록을 위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 고안일 것을 요한다.

실용신안 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고안,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은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허법상의 발명과 유사점이 있다(실용신안법 제4조).

다만, 실용신안에서의 진보성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허법상의 진보성보다 낮은 정도의 진보성을 요한다.

#### 4. 실용신안권의 효력

실용신안은 출원 및 심사 절차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실용신안권자는 업(業)으로서 등록 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Ⅲ 디자인보호법

#### 1. 목적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디자인보호법 제1조). 즉 디자인보호법은 특별한 기술적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외형의 미감을 시각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여한 것<sup>9)</sup>이다(윤선희, 2015).

#### 2. 보호대상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은 디자인이며,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뜻한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본조에 따르면 본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물품’일 것(물품성),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일 것(형태성), ‘시각을 통한 것’일 것(시각성), ‘미감을 일으키는 것’일 것(심미성)을 요한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이때의 ‘물품’이란 유체적인 동산이며, 정형성과 시각성이 있어야 하고,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sup>10)</sup>한다(대법원 2001.4.27.선고, 98후2900 판결). 즉 ‘유체물일 것, 동산일 것, 정형성을 가질 것,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것, 2차적 형태가 아닐 것, 양산성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때에 디자인의 물품성이 인정된다.

9) 윤선희, 「지식재산권법」(제16정판), 세창출판사, 2015, 203면.

10) 대법원 2001.4.27.선고, 98후2900 판결.

### 3. 등록요건

디자인보호법은 제33조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신규성이 있고 창작이 용이하지 않을 것(창작비용이성)을 등록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판례와 통설에 따르면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공업적 생산과정을 거쳐 동일 형태와 모양의 물품을 반복 생산, 즉 양산할 수 있는 개연성을 의미하는데, 특허법상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양산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 간에 차이<sup>11)</sup>가 있다(정상조·박준석, 2019).

특허법, 실용신안법과 마찬가지로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은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특허법, 실용신안법이 진보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디자인보호법은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고 있다. ‘창작비용이성’이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공지디자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디자인의 속성상 대체로 선행디자인과 비교할 때 진보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부분을 쉽게 찾기 어렵다는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지배적인 입장은 유사의 폭을 넘어서는 정보의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sup>12)</sup>하고 있다(정상조·박준석, 2019).

### 4.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은 출원 및 심사 절차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디자인보호법 제91조). 디자인권자는 “업(業)으로서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까지 권리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과 차이가 있으며,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이 디자인권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11) 정상조·박준석, 「지식재산권법」(제4판), 홍문사, 2019, 5면.

12) 정상조·박준석, 「지식재산권법」(제4판), 홍문사, 2019, 237면.

## IV 상표법

### 1. 목적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상표법 제1조).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이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물을 보호하는 것인데 반해 상표법은 상품의 식별표지인 상표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다른 산업재산권법과는 다른 특색이 있다. 또한 상표법의 목적 조항에서는 권리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상표법은 상표권자의 신용과 함께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존재 의의를 두고 있다.

### 2. 보호대상

상표법의 보호대상은 상품의 식별표지인 상표이다. 상표법상의 상표는 사회통념상 사용되는 상표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상표법에서는 상표를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시 표장을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자타상품을 식별하고 기호, 문자 등을 통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시만이 상표법상 보호되는 상표의 개념에 해당한다. 이때의 ‘상품’은 유체물일 것, 운반 가능한 것일 것, 반복거래가 가능한 것일 것, 식별 가치가 있을 것을 요한다.

### 3. 등록요건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상표법상의 상표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표 사용의사’와 ‘식별력’이 있으며, 상표법이 정하고 있는 부등록사유(상표법 제34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상표법 제3조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가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상표 사용의사가 필수적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불사용상표에 대하여 강력한 보호는 상표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출원 시에는 상

표 사용사실이 없더라도 장래에는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표 사용사실은 등록요건이 아니므로, 출원 시 사용사실이 없더라도 상표로 등록될 수는 있으나 3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식별력’은 자기의 상품이 타인의 상품과 구별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식별력 유무에 대한 판단은 상표 자체의 관념, 상품과의 관계, 사용 및 광고 현황, 수요자 및 거래계의 인식 등에 의해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상표법 제33조에서는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① 보통명칭 상표, ② 관용상표, ③ 성질표시적 명칭 상표(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⑤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⑦ 기타 수요자에 의해 식별 불가능한 상표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상표라 하더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상표법 제34조에서는 공익 또는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등록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상표 사용의사와 식별력이 있는 상표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표 2-2 | 상표법 제34조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 ① 국기, 국장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 ② 국가 등과 관계된 것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 또는 모욕하는 상표
- ③ 국가, 공공단체 또는 이들 기관과 공인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 ④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 ⑤ 박람회 상패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 ⑥ 저명한 타인의 성명, 상호, 약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
- ⑦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 ⑧ 주지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 ⑨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거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 ⑩ 상품 품질 오인 및 수요자 기만 염려가 있는 상표
- ⑪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 ⑫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
- ⑬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
- ⑭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
- ⑮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 ⑯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 ⑰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 등을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 출원한 상표
- ⑱ 외국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 등에 있는 자가 등록 출원한 상표

## 4.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은 출원 및 심사 절차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상표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고,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또한, 제3자가 동일·유사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상표 사용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V

## 저작권법

### 1. 목적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저작권법 제1조). 즉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도모한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이용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저작권을 적정 수준에서 보호하면서 저작물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핵심이다.

### 2. 보호대상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저작물이다.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에서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9가지 저작물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① 창작성이 있을 것, ②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것일 것, ③ 표현일 것을 요한다. ‘창작성’은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 또는 저작물의 작성이 개인적인 정신적 활동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며, 사상·감정 자체는 독창성이 없어도 표현의 형식 또는 방법에 독창성이 있는 것으로 족하다. 또한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성과가 아닌 자연계의 현상 또는 사실이나,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아이디어인 ‘사상’ 그 자체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표현’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머릿속에서 구상된 것을 어떤 방법이나 형태로 외부에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그 형태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3. 저작권의 효력

출원, 심사 과정을 통해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특허권, 상표권 등과 달리,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저작권법에도 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저작권법 제53조),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의 효력 발생과는 무관한 규정이다.

저작권법 제10조에서는 저작권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포괄하는 개념임을 명시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인정된다(저작권법 제11조~제13조).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 인정되고 있다(저작권법 제16조~제22조). 법문의 표현만으로는 그 성격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들 저작재산권이 저작권자가 전유(專有)하는 배타적 지배권이라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이론이 없다<sup>13)</sup>(이해완, 2019). 저작재산권은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 또는 묶음이기 때문에 복제권, 공연권 등 저작재산권의 각 지분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저작인접권도 보호하고 있다. 저작인접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저작자의 권리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 표 2-3 | 저작인접권의 내용

저작인접권자	권리의 내용	
실연자	실연자인격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인접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청구권(채권)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에 대한 보상
음반제작자	저작인접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13)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9, 455면.

저작인접권자	권리의 내용	
	청구권(채권)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에 대한 보상
방송사업자	저작인접권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

저작권의 존속기간의 산업재산권의 존속기간에 비해 훨씬 긴 편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인신에 전속하나 저작자 사망 후에도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의 저작인격권 침해행위는 금지된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고, 저작인접권은 실연을 한때, 음반에 음이 고정된 때, 또는 방송한 때로부터 발생하여 그다음 해부터 70년간 존속한다.

## VI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

### 1. 목적

부경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부경법 제1조). 즉, 부정경쟁행위 금지와 영업비밀 보호는 부경법의 궁극적 목적인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이다. 한편, 특허법 등이 객체에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부경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해 지식재산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2. 부정경쟁행위 금지

부경법은 제2조 제1호에서 10가지 유형을 부정경쟁행위로 열거하고, 이에 포섭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보충적 일반조항을 도입하였다. 10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금지된다.

▼ 표 2-4 | 부정경쟁행위 10가지 유형(부경법 제2조 제1호)

- ① 상품주체의 혼동야기행위
- ② 영업주체의 혼동야기행위
- ③ 유명상표의 식별력·명성손상행위
- ④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 ⑤ 상품출처지의 오인야기행위
- ⑥ 상품의 품질·내용·수량의 오인야기행위
- ⑦ 상표권자의 동의 없는 대리인의 상표사용행위
- ⑧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의 도엔 이름 선점행위
- ⑨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사용행위
- ⑩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부경법상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의 민사적 조치와 함께 시정권고, 과태료 등의 행정적 조치 및 형사적 조치가 가능하다.

### 3. 영업비밀 보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부경법 제2조 제2호). 즉, 비밀성, 경제성, 관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때의 ‘비밀성’은 비밀로 관리하는 노력을 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객관적 비밀성을 요한다.<sup>14)</sup> 영업비밀 보유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에 의해서 개발된 정보라거나 그 보유자의 영업에서 핵심적 요소를 이루는 경우에 그 정보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경제성’이 인정<sup>15)</sup>된다(정상조·박준석, 2019). 마지막으로 ‘관리성’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데, 합리적인 노력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sup>16)</sup>를 의미한다. 기술상 노하우, 비공개된 생산방법, 고객명부 등은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다.

14) 대법원 2004.9.23.선고, 2002다60610 판결.

15) 정상조·박준석, 「지식재산권법」(제4판), 홍문사, 2019, 679면.

16) 대법원 2008.7.10.선고, 2008도3435 판결.

## ▼ 표 2-5 |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부경법 제2조 제3호)

- ① 부정취득·사용·공개행위
- ② 부정취득자로부터 악의취득
- ③ 사후적 관여행위
- ④ 신의성실의 위반(비밀유지 위반) 행위
- ⑤ 부정공개자로부터 취득한 행위
- ⑥ 부정공개행위에 관한 사후적 관여행위

부경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위의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비밀유지명령 등의 민사적 조치 및 형사적 조치를 인정하고 있다.

#### 4. 권리 존속기간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은 권리의 존속기간 내지는 보호기간의 개념이 있을 수 없다. 영업비밀은 그 자체가 비밀로서 유지되고 있는 한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VII 기타

###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약칭: 인터넷주소법)

인터넷주소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인터넷주소법 제1조). 이 법의 보호대상은 도메인이름으로,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인터넷주소법 제2조 제1호).

도메인이름은 인터넷주소법뿐만 아니라 부경법을 통해서도 규율하고 있는데, 타인의 성명, 성명, 상호, 상표 등을 자신의 도메인이름으로 등록·사용하여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 2.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약칭: 반도체설계법)

반도체설계법은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반도체설계법 제1조). 본 법의 보호대상은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sup>17)</sup>이다. 반도체 집적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개발 비용 및 시간이 증대하여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반도체 집적기술의 성질상 특허법상의 신규성, 진보성의 요건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별법이 제정된 것이다.

## 3. 식물신품종 보호법 (약칭: 식물신품종법)

식물신품종법은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식물신품종법 제1조). 본 법은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에 대하여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식물신품종은 식물의 특성상 특허요건이 충족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모든 식물이지만, 품종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품종명칭을 갖출 것을 요한다(식물신품종법 제16조).

## 4. 콘텐츠산업 진흥법 (약칭: 콘텐츠산업법)

콘텐츠산업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콘텐츠산업법 제1조). 이 법의 보호대상은 콘텐츠로,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콘텐츠산업법 제2조 제1호). 콘텐츠산업법은 콘텐츠산업의 체계적·종합적 육성, 콘텐츠의 제작·유통·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부정경쟁 방지를 통한 콘텐츠제작자 투자 유도 등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저작권법이 포섭하지 못하는 법의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

17) 반도체설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 집적회로”란 반도체 재료 또는 절연(絶緣) 재료의 표면이나 반도체 재료의 내부에 한 개 이상의 능동소자(能動素子)를 포함한 회로소자(回路素子)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導線)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동시에 형성되어 전자회로의 기능을 가지도록 제조된 중간 및 최종 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2. “배치설계”란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

## 제3절

## 복합적 권리 활용 관련 판례 분석

## I 조사 개요

## 1. 조사방법

본 절에서는 판례를 통하여 하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복수의 지식재산권이 활용된 사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일방의 당사자가 두 개 유형 이상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하였거나 두 개 이상의 지식재산권 관련법 위반이 문제된 판례를 조사하였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범위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권리<sup>18)</sup>로 한정하고, 식물신품종, 콘텐츠 등의 지식재산권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판례 수집을 위하여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을 키워드로 선정한 후,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glaw.scourt.go.kr)’에서 두 가지 이상의 키워드에 ‘침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판례를 검색하였다.<sup>19)</sup> 별도로 기간의 범위를 제한하지는 않았다.

## 2. 조사결과

2020년 3월 27일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위 조건을 충족하는 판례는 총 697건으로 검색된다(중복 사건 제외하지 않음).

18)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전형적인 지식재산권은 적극적 독점권이지만, 이와 달리 부경법상 부여되는 권리는 소극적 보호에 불과하다. 부경법의 보호대상은 크게 동법 제2조 제1호가 열거한 여러 가지 유형의 ‘일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호와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로 구분할 수 있다(박준석, “빅 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차원의 보호가능성”, 「산업재산권」 제58호, 2019, 110-114면 참고).

19) (예시) 특허&상표&침해, 특허&디자인&침해 등.

▼ 표 2-6 | 두 개 이상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판례 건수

키워드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총 건수
특허	상표	33	24	54	111
특허	디자인	11	16	21	48
특허	부정경쟁	8	22	30	60
특허	저작권	11	10	16	37
상표	디자인	24	20	28	72
상표	부정경쟁	76	31	58	165
상표	저작권	22	15	18	55
디자인	부정경쟁	13	14	17	44
디자인	저작권	15	16	19	50
부정경쟁	저작권	17	19	19	55
총 합 계					697

검색된 697건의 판례 중 실제로 두 개 이상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내지는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은 53건이다.

조사대상으로 삼은 권리를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부경법상 보호되는 권리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으로 구분하였을 때, 53건의 판례 중 이종(異種)의 산업재산권이 관련된 건수는 7건(이종의 산업재산권 외에 기타 지식재산권도 쟁점이 된 판례 포함), 1개의 산업재산권과 기타 지식재산권이 관련된 건수는 19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관련된 건수는 7건, 산업재산권, 기타 지식재산권, 저작권이 관련된 건수는 7건, 저작권과 기타 지식재산권이 관련된 건수는 13건으로 파악된다.

▼ 표 2-7 | 두 개 이상의 지식재산권이 쟁점이 된 판례 건수

키워드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총 건수
이종의 산재권	3	0	4	7
산재권(중 1개 권리)+기타 지식재산권	9	2	8	19
산재권+저작권	5	0	2	7
산재권+기타 지식재산권+저작권	4	0	3	7
저작권+기타 지식재산권	6	6	1	13
총 합 계				53

## II 조사결과 분석

하나의 사건에서 권리자가 특허권과 상표권, 특허권과 디자인권 등 이종의 산업재산권을 함께 주장한 사례보다는 산재권 중 하나의 권리와 함께 부경법 위반을 주장한 사례의 비중이 더 높았다. 이는 부경법이 다른 지식재산 법령에 대한 보충적 관계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sup>20)</sup> 또한 53건의 판례 중 27건은 산업재산권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과 함께 저작권이 쟁점이 된 사건으로, 본 판례의 조사 범위를 산업재산권으로만 한정할 경우, 실제의 사건에서 권리자가 2개 이상의 산업재산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많지 않았다. 주요 판결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들이 서로 저촉되지 않는 한 각각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 III 구체적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1. 대법원 2015.12.10.선고, 2015도11550 판결

#### 1) 사안의 개요

일본 유한회사 甲은 ‘르 슈크레(le sucre)’라는 이름의 토끼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과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회사 乙은 甲 회사와의 상품화 계약에 따라 인형을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표권자 甲이 인형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인형을 수입·판매함으로써 甲의 상표권 및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乙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 부경법 위반,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20) 부경법 제15조 제1항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저작권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 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경법과 위 지식재산권법률의 상호 간의 저촉, 충돌이 있을 경우 그 지식재산 관련 법률이 우선하며, 지식재산권법률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식재산권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부경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정상조(편자),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박영사, 2020, 231-234면 참고.



## 2) 법원의 판단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법 위반, 상표법 위반 및 각 위반죄의 죄수관계에 대하여 판단하였는데, 이하에서는 죄수에 관한 쟁점은 별론으로 하고, 각 지식재산권법 위반에 관한 쟁점만을 살핀다.<sup>21)</sup>

먼저, 저작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캐릭터는 2004년경 일본에서 만화, 영화 등 대중매체에 표현되기 전에 상품에 사용되면서 공표되는 이른바 오리지널 캐릭터의 일종으로 개발된 도안으로서 물품에 표시되는 이외에도 2008년경 일본에서 공표된 동화책들에서 물품에 부착되지 않은 형태로 게재되는 등 이 사건 캐릭터 자체만의 형태로도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캐릭터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도안 그 자체로 일반적인 미술저작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이 사건 캐릭터는 흔히 볼 수 있는 실제 토끼의 모습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형상으로서 창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의 창작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판사와 같이 이 사건 캐릭터의 단순한 입체적 형상으로서 그 복제물 또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토끼인형을 무단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이 사건 캐릭터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부정경쟁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 사건 캐릭터의 창작시기, 국내에서의 이 사건 캐릭터 상품에 관한 수입, 제조, 판매 관련 활동내역 및 이 사건 토끼인형 등 이 사건 캐릭터 관련 상품의 판매현황과 언론매체에 알려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캐릭터 및 그 입체적 형상인 이 사건

21) 대법원은 본 판결에서 “저작권법 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상사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표법 위반죄는 나머지 죄들과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토끼인형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끼인형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토끼인형을 수입·판매하여 상품주체 혼동행위를 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상표법 위반과 관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그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여기서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sup>22)</sup>고 전제한 후,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인 사용상표 사이의 표장의 근사성과 위 상표들이 사용된 상품의 거래 실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 상표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에 있어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서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 ① 이 사건 등록상표는 토끼 얼굴 도형 부분과 ‘le sucre’라는 프랑스어 문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중 토끼 얼굴 도형 부분이 그 크기와 위치 및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특징적 부분이라고 보아, 피고인 사용상표 1에 나타나 있는 토끼도형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토끼 얼굴 도형과 사실상 동일한 얼굴 모양을 하고 있다는 점, ② 두 상표의 문자부분이 동일하지는 않아도 공통점이 있다는 점, ③ 이 사건 등록상표와 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은 모두 토끼인형으로서 그 형상 또한 동일·유사하다는 점, ④ 피고인이 수입·판매한 토끼인형에는 피고인 사용상표가 태그(tag)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 정품을 원하는 고객들이 토끼인형에 달린 상표를 근거로 정품을 확인하고 구입하였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 3) 시사점

대상판결은 타인의 저작물인 이 사건 캐릭터 모양의 인형에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수입·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및 상표권 침해와 함께 부경법 위반을 인정한 사안이다.

먼저, 상표권과 저작권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표법 제92조에서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상태에 따라 그 상표등록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그 상표등록 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22) 대법원 2015.10.15.선고, 2014다216522 판결 참조.

규정하고 있다. 본 판례를 통하여 미술적 도안의 성격을 가진 도형상표의 경우, 상표의 도안도 창작성이 있는 한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음<sup>23)</sup>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캐릭터(상표의 도안)는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8년 12월 29일 자로 출원되어 2013년 1월 3일에 상표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상표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였고, 캐릭터 도안이 그 자체로 일반적인 미술저작물로서 창작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도 가능하였다.

한편, 부경법 제15조 제1항은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저작권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 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법 등 다른 지식재산권법과 부경법이 충돌하지 않거나, 다른 지식재산권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부경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부경법이 적용될 수 있다. 부경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상품주체 혼동행위<sup>24)</sup>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끼인형의 수입·판매 행위는 ① 상품표지에 주지성이 있고, ② 주지된 상품표지와 동일·유사하며, ③ 이로 인하여 상품주체의 혼동이 야기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표법 등과 별개로 부경법 위반이 인정된 것이다. 이때의 ‘상품표지’란 특정의 상품을 표창함으로써 그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동시에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시키는 식별력을 갖춘 표시를 의미하는데, 상품표지의 이러한 의미는 출처표시 및 식별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상표의 의미와 유사하다.<sup>25)</sup> 다만, 상표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등록되어야 하지만 부경법상으로는 등록되지 않은 상표 등도 보호받으며, 상표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상표가 주지성이 없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부경법상 보호받기 위해서는 주지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up>26)</sup>

요컨대,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들은 서로 저촉되지 않는 한 각각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창작성 있는 도안을 상표로 등록하는 경우, 저작권법과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그 도안이 상표로 등록되고 주지성까지 획득하였다면 부경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 도안이 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도안이 창작성이 있고 주지성을 획득하였다면 저작권법과 부경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은 당연하다.

23)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9, 455면.

24)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25) 정상조(편저),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박영사, 2020, 20면.

26) 상계서, 21면.

## 2. 대법원 2014.8.28.선고, 2013도10713 판결

### 1) 사안의 개요

피해자는 ‘○○○○’(이 사건 표지)을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자연성 화장품을 제조·판매하여왔고, 이후 피고인은 ‘○○○○’에 합류하여 이사 겸 사업본부장의 직함으로 피해자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 ‘○○○○’을 관리·운영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자연성 화장품의 제조·판매 사업을 경영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중재원에 조합재산의 분배에 관한 중재를 신청하면서 ‘○○○○’을 단독으로 운영하려고 하자, ‘주식회사 ○○○○’을 설립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여, 부경법 위반, 특허법 위반,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 2) 법원의 판단

본 판결에서 부경법 위반은 부정되고, 특허법 및 상표법 위반은 인정되었다.

부경법 위반의 경우, 대법원은 “‘○○○○’은 피해자가 이를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 후 피고인이 ‘주식회사 ○○○○’을 설립할 무렵까지 자연성 화장품에 관하여 약 15년 동안 사용되어 온 점, 그 매출액이 1996년경 약 7,400만 원에서 2003년경 약 14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08년 경에는 약 25억 원, 2009년경에는 약 21억 원에 달한 점, 여러 차례에 걸친 피해자의 자연성 화장품에 관한 강연, 신문기사나 방송 등에서 이 사건 표지가 소개되기도 한 점을 알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표지가 ‘자연성 화장품’에 관한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특허법 및 상표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권리관계를 먼저 검토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동사업을 위한 조합재산으로써 ‘○○○○’에 관한 권리를 합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한국중재원에 조합재산의 분배에 관한 중재를 신청하면서 피고인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을 운영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부득이 ‘주식회사 ○○○○’을 설립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조합관계가 묵시적 합의 또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산되어 조합재산인 상표권 등이 공유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자연성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피고인이 그 사업에 합류하여 담당할 업무와 역할, 이 사건 특허와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이 피해자 단독 명의인 점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특허권 및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였다.

### 3) 시사점

우리 법원은 부정법상 주지성의 판단 근거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그 외에도 표지의 강도, 상품의 종류와 성질, 상품의 거래수량과 판매액, 광고의 유무·방법·빈도·기간, 영업의 규모, 점포의 수와 분포지역, 상품이나 영업에 관한 제3자의 평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sup>27)</sup> 실무상 주지성은 해당 표지의 사용기간, 해당 표지를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 해당 표지에 대한 광고비용 등을 근거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표지를 사용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표지를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나 해당 표지에 대한 광고비용 등이 크지 않다면 주지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sup>28)</sup> 실제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표지가 약 15년 동안 사용되어왔고,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20억 원을 상회하고, 수차례 자연성 화장품에 관한 강연, 신문기사나 방송 등에서 이 사건 표지가 소개되기도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주지성을 부정하여 부정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sup>29)</sup>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하나, 이 사건 특허 및 상표는 피해자 단독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동업관계의 해산에 관한 법리에 따라 공동사업을 위한 조합재산으로써 ‘○○○○’에 관한 권리는 잔존 조합원인 피해자의 단독소유가 될 뿐이어서, 해산으로 인하여 조합재산인 상표권 등을 피의자와 공유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은 ‘○○○○’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을 설립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한 것은 피해자의 특허권 및 상표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 3. 대법원 2013.3.14.선고, 2010도15512 판결

### 1) 사안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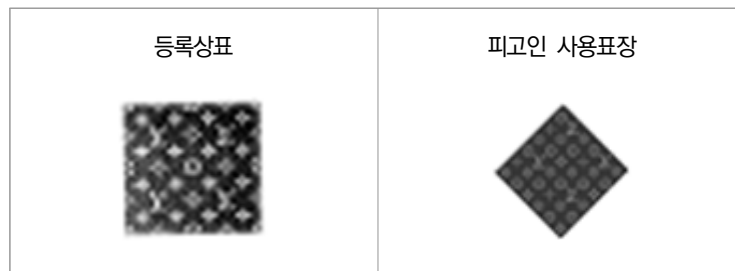
피고인은 피해자 甲이 등록 출원한 도형상표와 유사한 문양의 표장이 부착된 가방과 지갑을

27) 정상조(편저),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박영사, 2020, 27-28면.

28) 채영호, “판례해설 - 동업에서 탈퇴한 자를 상대로 유사한 제호의 경쟁잡지를 발행하지 말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법률신문, 2014. 4. 18.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99912>>.

29) 대법원 2006.3.9.선고, 2004다49693, 49709판결 참조.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처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사용표장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하였고, 피고인 사용표장을 구성하는 개별 도형들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상표등록을 받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甲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甲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甲의 등록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 2) 법원의 판단

먼저 대법원은 상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용표장을 구성하는 각 도형은 피해자의 이 사건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각 도형들과 유사한 도형들을 모티브(motive)로 하고 있고, 그 도형들의 전체적 구성, 배열 형태 및 표현방법 등이 매우 유사하여, 피고인 사용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유사하다”고 인정하였다.<sup>30)</sup>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피고인 사용표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가 디자인등록을 하였다는 사실, 피고인 사용표장을 구성하는 개별 도형들에 대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상표등록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에 장애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디자인의 등록 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설령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디자인보호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

30)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12.26.선고, 98도2743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대법원 2007.2.26.자 2006마805 결정 참조).

할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3) 시사점

대상판결은 디자인권과 상표권 저촉 규정에 의하여 양 권리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함과 아울러 새로이 디자인권 남용의 법리를 실시함으로써 디자인권과 부정경쟁행위 사이의 충돌 문제도 해결하고 있으며, 나아가 전체 표장을 구성하는 개별 도형들에 대한 상표권은 전체 표장의 사용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실시하였다.<sup>31)</sup>

---

31) 박태일, “전체 표장에 대한 디자인권 및 이를 구성하는 개별 도형들에 대한 상표권과 전체 표장의 사용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사이의 충돌에 관한 연구 -대상판결: 대법원 2013.3.14.선고, 2010도15512 판결-”, 「IT와 법 연구」 제8집,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2014. 2., 76면.

## 제4절

## 복합적 권리 활용 관련 사례조사

본 절에서는 하나의 상품에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활용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I 전기전자 분야

## 1. S 전자 사례

120여 개 부품으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에는 특허(70,000여 건), 디자인(2,000여 건),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성장 정체기를 맞이한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폰 등 차세대 폼팩터 제품외양의 확대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S 전자는 플렉서블 OLED 디스플레이의 양산성(규모 경제), 기술성(내구성, 수율) 우위를 바탕으로<sup>32)</sup>, 폴더블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1년부터 약 7년 동안 애플과 스마트폰 특허 전쟁을 겪었던 S 전자는 한국 특허청(KI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유럽 특허청(E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에 폴더블폰 구현 기술과 관련하여 ‘폴더블 디바이스 및 그 제어 방법(Foldable device and method of controlling the same)’<sup>33)</sup>, ‘전자 장치 및 이의 제스처 처리 방법(Electronic device and method for processing gesture thereof)’<sup>34)</sup>, ‘확장 가능한 디스플레이 영역을 가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전자기기(Electronic device including flexible display with expandable display area)’<sup>35)</sup> 등의 특허와 ‘휴대용 정보 단말기’<sup>36)</sup> 등의 명칭으로 다수의 디자인을 출원·등록한 상태이다.

32) 박강호, “스마트폰”, 장기전망 시리즈 10, 대신증권, 2019. 5., 8면.

33) 특허 등록번호: 1017131670000 (2017.02.28.) ; 특허 등록번호: 1019429500000 (2019.01.22.) ; 특허 출원번호: 1020150031966 (2015.03.06.).

34) 특허 출원번호: 1020150150344 (2015.1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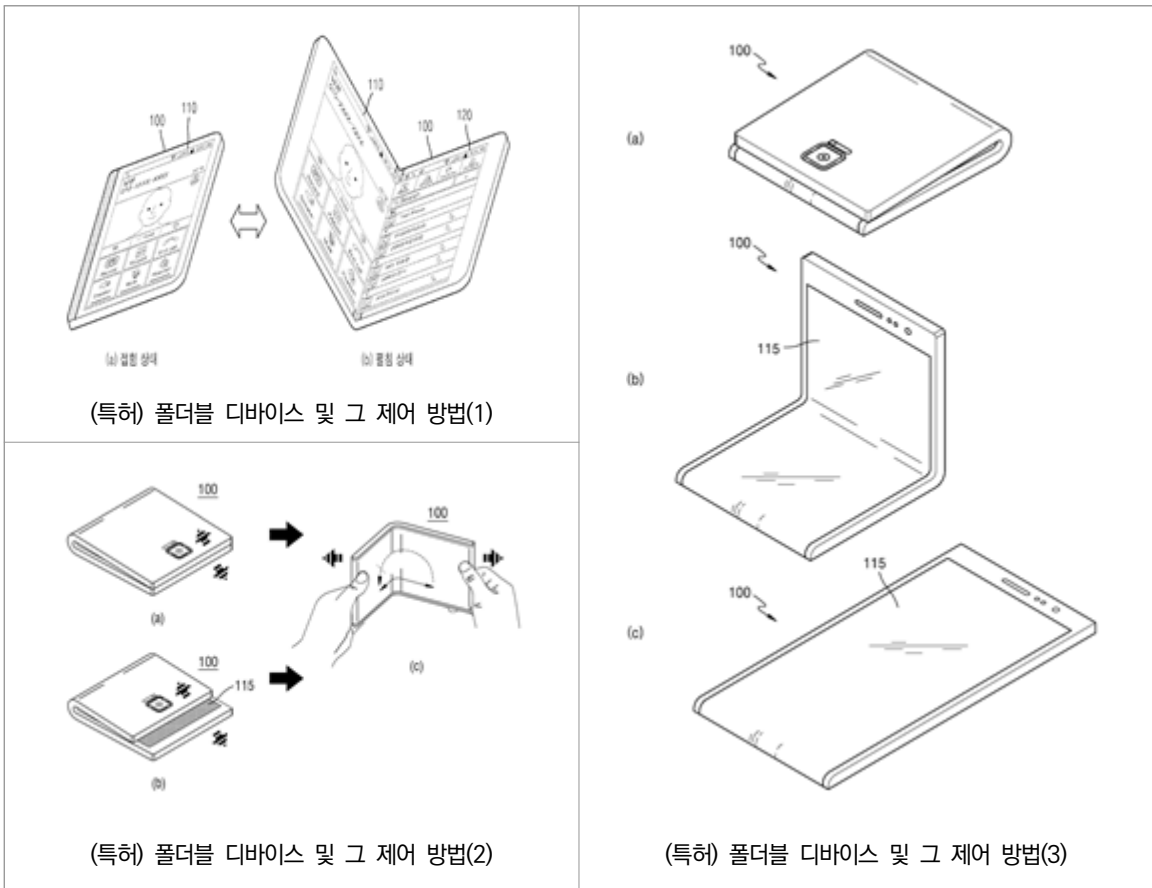
35) 특허 출원번호: 1020170161471 (2017.11.29.).

36) 디자인 등록번호: 3009137540000 (2017.07.03.) ; 디자인 등록번호: 3008765590000 (2016.10.07.).



S 전자의 특허, 디자인 출원 내용으로 추정된 향후 폴더블폰의 랜더링 이미지

출처: 레츠고디지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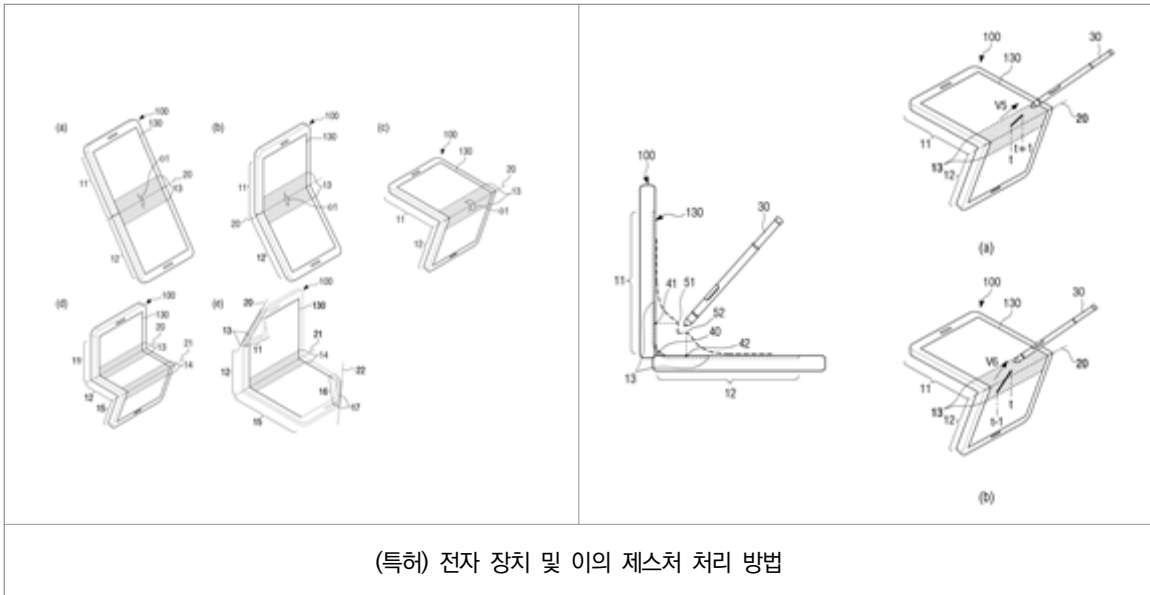


(특허) 폴더블 디바이스 및 그 제어 방법(1)

(특허) 폴더블 디바이스 및 그 제어 방법(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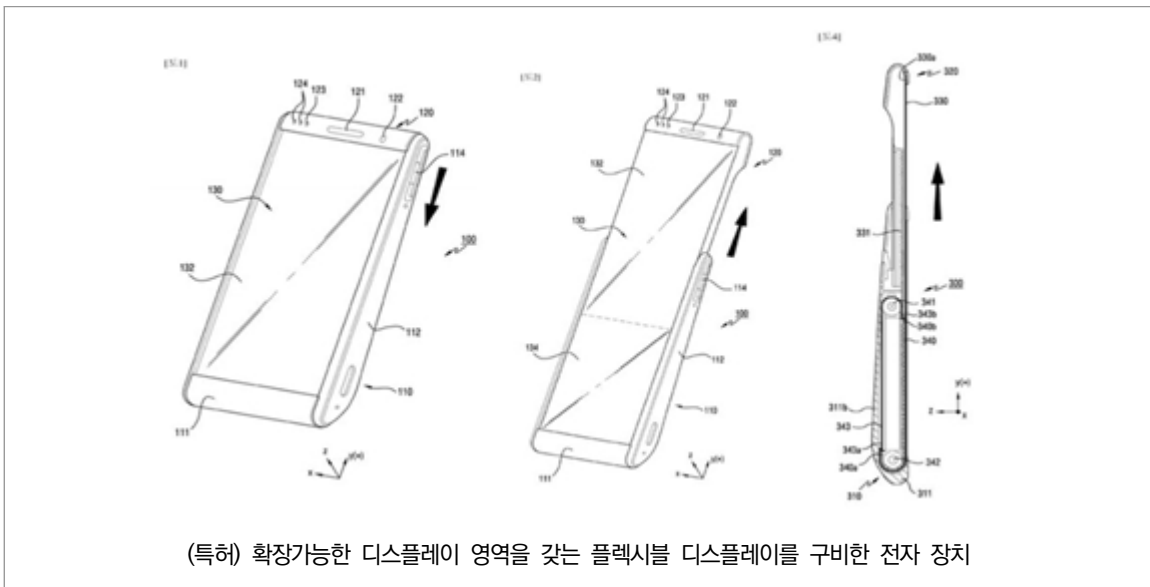
(특허) 폴더블 디바이스 및 그 제어 방법(3)

출처: 키프리스



(특허) 전자 장치 및 이의 케이스 처리 방법

출처: 키프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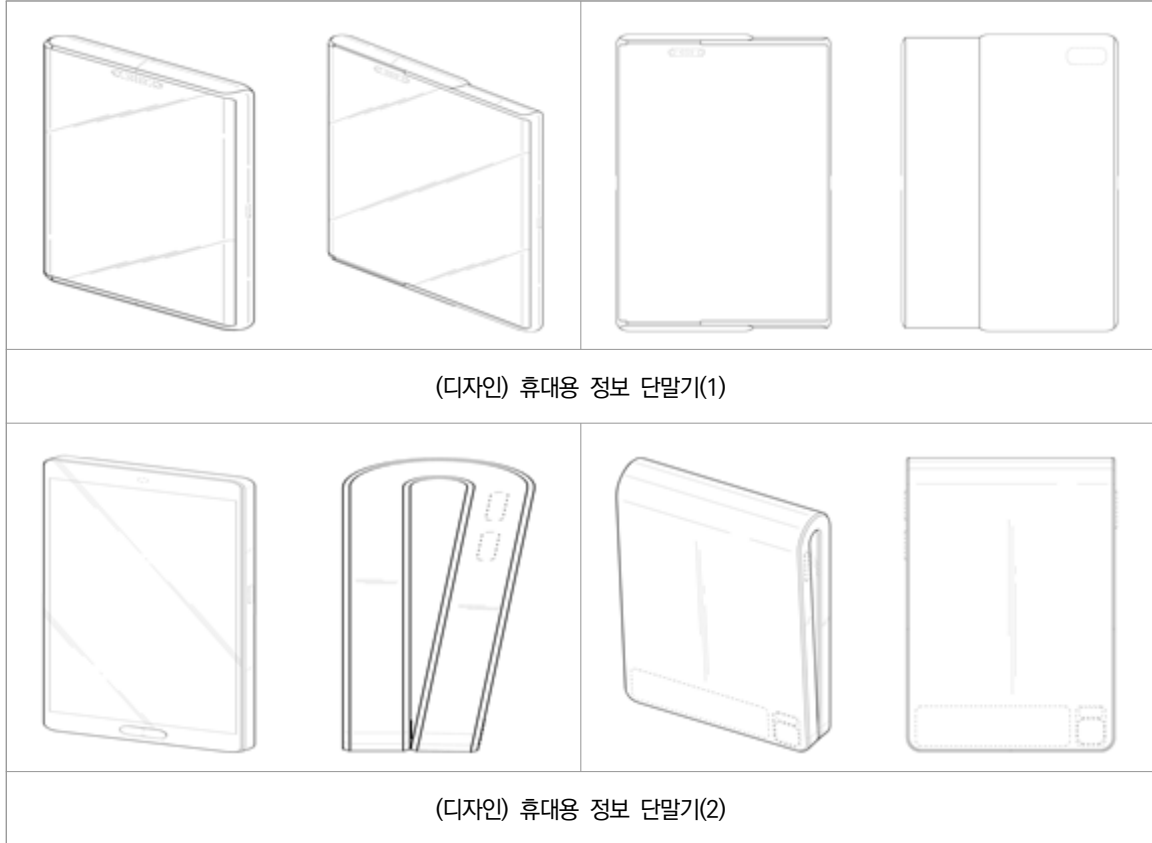


(특허) 확장가능한 디스플레이 영역을 갖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전자 장치

출처: 키프리스

또한, S 전자는 폴더블폰에 대한 브랜드 보호를 위하여 국내외에 적극적인 상표출원 활동을 하고 있다. S 전자의 두 번째 폴더블폰인 ‘00 갤럭시 Z Flip’은 2020년 2월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00 갤럭시 언팩 2020’에서 처음 공개되었으나, 해당 제품에 대한 상표 출원은 그보다 앞선 2020년 2월 7일에 이루어졌다. WIPO Global Brand Database에 따르면 KIPO<sup>37)</sup>, USPTO<sup>38)</sup>, 유럽 지식재산청(EUIPO)<sup>39)</sup> 등에 ‘00 갤럭시 Z Flip’에 대한 상표가 출원되어,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2020. 4. 20. 기준). 이처럼 S 전자가 ‘00 갤럭시 Z Flip’ 출시 전 상표출원을 진행한 것은 기업들의 일반적인 상표권 확보 전략으로, 기업들은 브랜드 정

체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 신제품 출시 전 상표출원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키프리스

▼ 표 2-8 , '00 갤럭시 Z Flip' 상표출원 현황

	Brand	Source	Status	Origin	App. Date	Nice Cl.	Image
1	SAMSUNG GALAXY Z FLIP	US TM	Pending	US	2020-02-07	9	Samsung Galaxy Z Flip
2	Z FLIP	KR TM	Pending	KR	2020-02-27	9	<b>Z FLIP</b>
3	Samsung Z Flip	EM TM	Pending	EM	2020-02-07	9	<b>Samsung Z Flip</b>
4	Samsung Galaxy Z Flip	KR TM	Pending	KR	2020-02-07	9	Samsung Galaxy Z Flip
5	Samsung Galaxy Z Flip	AU TM	Pending	AU	2020-02-07	9	Samsung Galaxy Z Flip

출처: WIPO Global Brand Database 수정 인용

37) 상표 출원번호: 4020200020399 (2020.02.07.); 상표 출원번호: 4020200033032 (2020.02.27.)

38) Trademark Application number: 88788952 (2020.1.3.).

39) Trademark Application number: 018193621 (2020.02.27.).

뿐만 아니라, S 전자는 폴더블폰 자체에 대한 상표출원과 별개로 주요 부품에 대해서도 상표를 출원하고 있다. S 전자는 2019년 12월 KIPO<sup>40)</sup>, USPTO<sup>41)</sup>, EUIPO<sup>42)</sup>에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힌지(hinge)인 ‘Hideaway Hinge’에 대한 상표를 출원하였다(2020. 4. 24. 기준).

▼ 표 2-9 | ‘Hideaway Hinge’ 상표출원 현황

	Brand	Source	Status	Origin	App. Date	Nice Cl.	Image
1	Hideaway Hinge	KR TM	Pending	KR	2019-12-03	9	Hideaway Hinge
2	HIDEAWAY HINGE	US TM	Pending	US	2019-12-03	9	Hideaway Hinge
3	Hideaway Hinge	EM TM	Pending	EM	2019-12-02	9	Hideaway Hinge

출처: WIPO Global Brand Database 수정 인용

또한, 2020년 3월에는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인 ‘Samsung PIFF’에 대한 상표를 USPTO<sup>43)</sup>에 출원하였다. 네덜란드 IT전문 매체인 레츠고디지털(LetsGoDigital)은 “Samsung PIFF가 어떤 유형의 디스플레이와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출원 서류에 ‘OLED’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비추어보면 완전히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상표일 것이며, 2020년 하반기에 출시될 스마트폰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였다.<sup>44)</sup>

한편, ‘갤럭시(Galaxy)’는 S 전자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S 전자의 첫 스마트폰의 제품명에는 ‘갤럭시’라는 단어가 없다. 애플 ‘아이폰’에 대항하기 위하여 2008년에 출시되었던 S 전자의 첫 스마트폰 ‘옵니아(OMNIA)’는 끊이지 않은 악평으로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이후 S 전자는 ‘옵니아’라는 이름을 버리고, 윈도우 대신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갤럭시 S’를 새로운 브랜드로 런칭하였다. S 전자는 2010년 ‘갤럭시 S’ 출시 후, ‘갤럭시 S2’, ‘갤럭시 S3’의 성공을 바탕으로, ‘갤럭시 S 시리즈’ 외에도 ‘갤럭시 노트’, ‘갤럭시 A’, ‘갤럭시 J’, ‘갤럭시 Z’ 등의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다.

그런데 2020년 2월, S 전자가 EUIPO에 ‘갤럭시(Galaxy)’라는 단어를 제외한 ‘Samsung Z Flip’으로 상표를 출원한 것이 알려지면서, S 전자가 모바일 부문에서 새로운 라인업 출발을 예고하는 것이라거나<sup>45)</sup> 또는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브랜드 전략을 기존 갤럭시 시리즈와 별개의

40) 상표 출원번호: 4020190187157 (2019.12.3.).

41) Trademark Application number: 88713183 (2019.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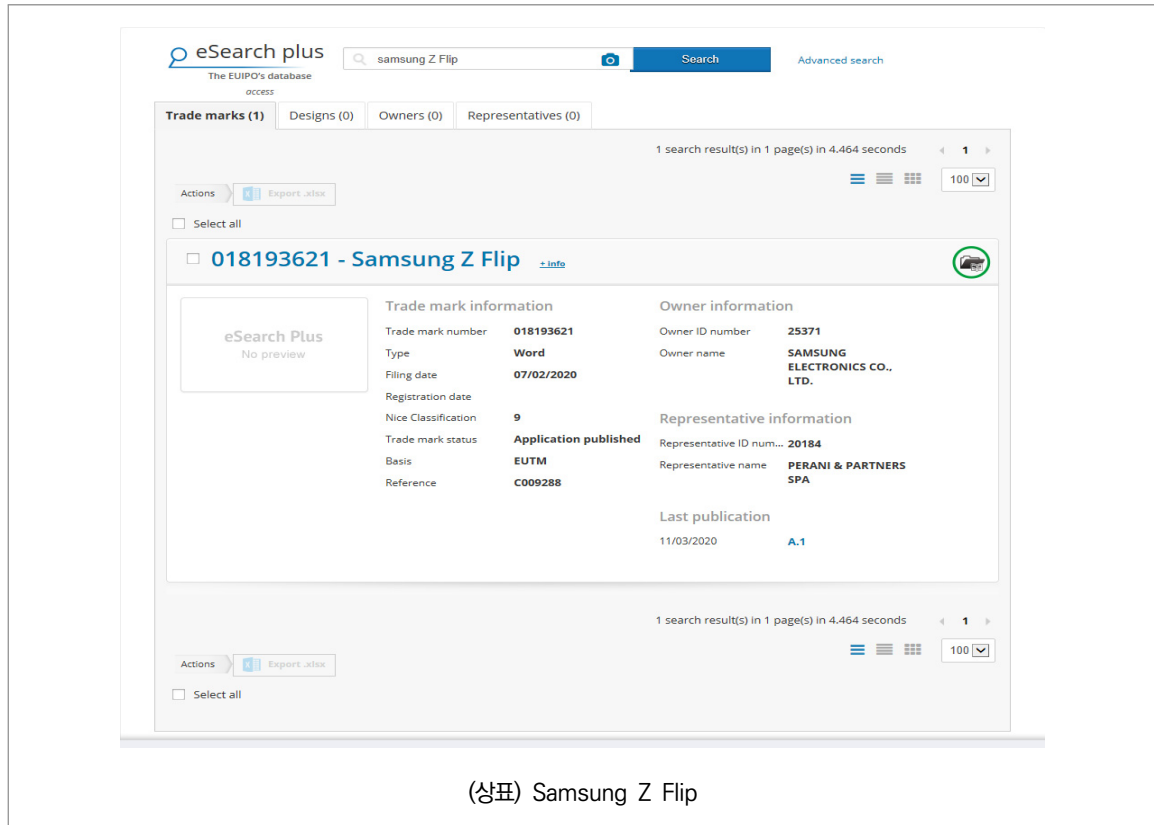
42) Trademark Application number: 4020190187157 (2019.12.2.).

43) Trademark Application number: 88823992 (2020.3.6.).

44) Ilse Jurrien, “Samsung PIFF smartphone display voor nieuwe Galaxy modellen”, LETSGO DIGITAL, 2020. 3. 12., <<https://nl.letsgodigital.org/smartphones/samsung-smartphone-display-2020/>>.

45) 백성원, “삼성 Z 플립, 갤럭시서 독립한 새로운 라인업의 출발?”, 한국경제, 2020. 2. 11.,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021167123>>.

브랜드로 가져가려는 행보<sup>46)</sup> 등으로 추정하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며, 상표출원의 변화가 브랜드 전략 변화로 이어질지에 대하여 관심을 받았다.



(상표) Samsung Z Flip

출처: EUIPO

결과적으로, S 전자는 KIPO, USPTO 등에 ‘갤럭시(galaxy)’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상표출원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추정은 힘을 잃었지만, 이러한 사례는 상표출원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강화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기업의 향후 브랜드 전략에 대한 예측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키프리스

46) 임민철, “삼성, 폴더블폰 브랜드 따로 만드나...‘갤럭시’ 뺀 상표 등록 신청”, UPI뉴스, 2020. 2. 11., <<https://m.upinews.kr/newsView/upi202002110111>>.

## 2. C사의 치과용 방사선 영상장치

C사는 치과용 방사선 영상장치를 개발·제조하여 판매하는 기업이다. C사의 'OOOOOOO'은 치아의 X-Ray 이미지를 촬영하여 PC로 전송하고 획득한 이미지의 영상처리 및 치아 상태 진단, 처치 등에 활용하는 제품으로, C사는 이 제품과 관련하여 '영상판 반송장치 및 이를 이용한 영상판 스캐너' 등 2건의 특허권과 1건의 디자인권, 1건의 상표권을 확보하고 있다. C사 관계자에 따르면 C사의 'OOOOOOO'에 대한 복합적 권리 활용은 타사 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한 영업 및 마케팅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며, 연구개발을 위한 외부 자금 유치를 위한 기업 신뢰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 3. S사의 CCTV 방범 시스템

S사의 주력제품인 폭력행위인지 CCTV 방범 시스템에는 '움직이는 객체의 영상정보에 기반한 폭행상황 검출방법' 등 3건의 특허권과 1건의 디자인권이 적용되었다. S사 관계자는 S사가 확보한 지식재산권이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심사 및 제품의 신뢰성 부각을 통한 영업활동 증진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 4. A사의 음향신호 전송 시스템

A사는 사운드 네트워크 전송 시스템을 개발·제조하여 관공서를 중심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A사의 제품인 'OOO'은 표준 이더넷 네트워크를 통하여 여러 채널의 음향신호를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사운드 네트워크 전송시스템' 등 2건의 특허권과 1건의 상표권을 확보하고 있다. A사는 특허권 등록 후, 영업활동 및 각종 전시회 참가에 따른 회사와 제품 소개 시에 수요자에게 어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해당 제품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추진하였다. A사 관계자는 'OOO'에 대한 특허권과 함께 상표권을 확보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신뢰성 및 인지도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보았다.

## II 의약품 분야

### 1. C사의 락토픽

C사는 2016년 기존의 캡슐 형태와 달리 섭취 편의성을 고려한 분말 스틱포 제형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인 ‘락토픽’을 출시하였다. 이후, 유산균 생존율과 장내 점착성을 높인 코어 강화 특허 기술 ‘프롤린 공법’을 적용한 ‘락토픽 생유산균 코어’를 출시하는 한편, 다양한 연령층을 공략하기 위하여 ‘뷰티’, ‘베베’, ‘키즈’, ‘골드’ 등의 제품라인을 개발하며, ‘락토픽’ 제품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C사는 ‘유산균의 생존율, 저장안정성, 내산성 또는 내담즙성을 증가시키는 방법’<sup>47)</sup>에 관한 특허권과 함께 ‘락토픽’ 제품에 대하여 다수의 상표를 출원하였으며, 포장용 용기와 관련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등 다각적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자사 제품을 보호하고 있다.



47) 특허등록번호: KR 1605516 B1 (2016.03.16.).

## 2. P사의 비아그라

P사의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은 물질특허로서 보호되어 왔고, P사는 물질특허 이후에도 용도특허를 등록 받아서 신약 기술에 대한 보호의 확장과 연장을 시도하였다. 또한, P사는 비아그라 제품을 구성하는 마름모꼴로 된 알약의 형상에 대하여 1999년에 디자인등록을 받아, 해당 제품에 관한 특허권 만료 이후에도 경쟁업체들이 비아그라 복제약을 동일,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조, 판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실제로 P사는 우리나라에서 H사(팔팔정)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물질특허 및 용도특허,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편, 비아그라 제품이 판매되는 ‘푸른빛의 다이아몬드 형상’이 주지저명하게 되어 특정인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게 되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P사의 출처표시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sup>48)</sup>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결국 P사의 상표권 및 디자인권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 전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 하겠다.



48) 다만, 화이자의 비아그라 물질특허는 2012년 5월에 만료되었으며, 용도특허는 2015년 4월에 대법원에서 무효가 확정되었고, 디자인등록은 2012년 12월에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2013년 6월에 그 등록이 무효되었다.

### III 음식료품 분야

#### 1. O사의 음료파우더

O사는 국내 농산물을 위주로 식음료 파우더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카페인 제거된 녹차분말의 제조방법 및 그 방법에 의해 제조된 녹차분말’, ‘대추파우더 및 이의 제조방법’ 등의 특허권과 함께 제품포장재 관련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O사의 대표브랜드인 ‘OOOOOO’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에도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마켓의 명칭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O사 관계자에 따르면 직접 개발한 제품에 대한 특허권, 상표권 등을 확보한 것은 국내외 구매자들의 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출 및 온라인 마케팅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2. D사의 죽순 가공식품

D사는 담양의 특산품인 죽순을 가공한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죽순과 녹차잎이 함유된 면의 제조 방법’, ‘죽순과 죽엽을 이용한 숙취 해소용 조성물 및 간 기능 개선용 조성물’ 등 다수의 특허권과 함께 포장용 파우치에 대한 디자인권, ‘OOO’, ‘OOOOO’ 등의 상표권을 확보하고 있다. ‘OOO’은 D사의 온라인마켓의 명칭으로 활용되는 한편, 포장재에 부착되어 대표브랜드로 성장하였다. D사의 관계자는 특허권을 바탕으로 개발된 상품이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통해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통일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 식품뿐만 아니라 비누, 향초 등에 대한 특허와 상표출원을 이어가고 있다.

## 제5절

### ●●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에 관한 개별법은 제도의 취지(목적), 보호대상, 보호요건, 권리 효력 및 존속기간 등을 달리하고 있으며, 하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다양한 지식재산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때, 각 개별법은 서로 저촉되지 않는 한 각각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제품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첩적 보호도 가능하다. 또한, 다른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보충적 관계에 있는 부경법의 경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른 법들과 상호 저촉,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식재산 관련 법률이 우선하지만, 그 지식재산법률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지식재산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 일지라도 부경법이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창작성 있는 도안은 상표등록을 통해 저작권법과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그 도안이 상표로 등록되고 주지성까지 획득하였다면 부경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특허권과 디자인권으로 보호되는 제품의 경우, 그 제품에 대한 특허권이 무효 또는 보호기간 만료로 소멸되거나 특허권 침해가 부정되는 경우라도, 디자인권 주장을 통한 보호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요컨대, 이는 기업이 하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했을 때 보호 영역이 넓어지고 보호 수단이 다양해져, 실제 지식재산권 분쟁 상황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연구개발(R&D) 중심의 기업은 특허권을, 의류, 화장품 등 패션소비재 분야의 기업들은 마케팅과 브랜딩을, 캐릭터 등을 개발하는 일부 콘텐츠 기업들은 저작권과 디자인을 중시하여, 기업의 특성과 업종에 따라 지식재산권 중 일부에만 집중하여 지식재산권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물론,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 비용, 노력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지식재산권 활용을 최대한으로 추구할지, 아니면 핵심 지식재산권에 집중하여 최소한의 권리만을 확보할지는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활용을 ‘특허권 중심의 권리행사’에서 벗어나 ‘제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수익 창출 및 기업 가치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개별 지식재산권 제도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사 제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시장에서의 기업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 전략을 세심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지식재산권 복합적 활용과 효과

제1절 지식재산권 효과 관련 선행연구

제2절 산업재산권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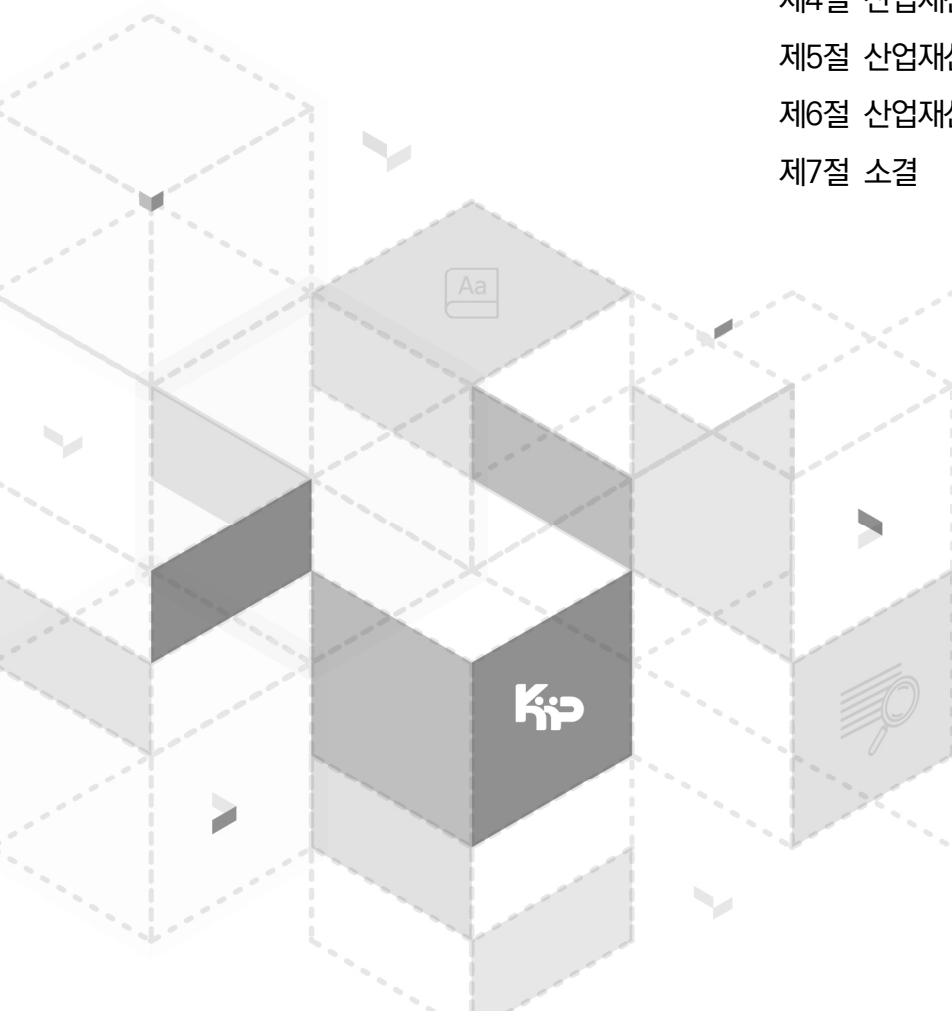
제3절 산업재산권 복합적 보유와 기업 성장

제4절 산업재산권 복합적 권리 활용 현황

제5절 산업재산권 복합적 권리 활용의 특징

제6절 산업재산권 복합적 권리 활용의 효과

제7절 소결





## 제1절

## 지식재산권 효과 관련 선행연구

본 절에서는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보유의 효과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I 특허 보유의 효과

지식재산권은 기업이 혁신활동으로부터 얻는 이득의 전유성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특허는 발명자로 하여금 그 기술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경쟁자들로 하여금 기술을 모방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게 함으로써 혁신기업이 그 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Arundel et al.(1995)은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특허 출원의 주요 동기가 모방을 막고 소송을 회피하며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함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프랑스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Duguet and Kabla(1998)의 연구에서도 모방방지, 기술협상에서 다른 기업보다 유리한 위치에 도달하는 것 등을 특허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Cohen et al.(2000)은 미국 제조업 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특허 출원은 모방 금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경쟁자로 하여금 유사한 발명에 대한 특허획득을 방지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등의 목적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Blind et al.(2006)은 독일 기업의 특허 출원 동기를 발명의 보호, 경쟁업체 진입방지, 명성, 거래, 인센티브 등으로 보았으며, 특히 명성을 얻기 위한 동기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de Rassenfosse(2012)는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출원의 동기를 살펴보았는데, 여러 동기 중 경쟁자의 모방 방지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해당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에서 특허가 다른 기업의 모방을 막고 경쟁자의 진입을 지연하며(기술적 우위에 대한) 명성을 높여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에 활용되는 것으로 보았다(Grandstrand, 1999; Thumm, 2004; Holgersson, 2013).

특허보유가 기업의 성과와 혁신활동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Bloom and Reenen(2002)의 연구에서는 영국 주요 165개 기업에 대한 1,900건의 관측치를 이용하여 특허보유 규모가 기업의 생산성과 시장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Hagedoorn and Cloodts(2003)의 연구에서는 고기술 분야(항공, 컴퓨터, 의약품, 통신기기) 1,194개 기업 데이터 분석결과 특허 등록 건수와 신제품 출시 간에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Yamauchi and Onishi(2018)의 일본 소프트웨어 기업 대상 분석에서는 기업의 특허 출원 활동이 매출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ll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9,524개 기업에 대한 로짓 분석에서 기업의 제품혁신, 공정혁신, 신제품 출시 활동과 특허 보유 사이에 양의 관계를 보였고, 특허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고용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BER의 연구에 따르면, 창업기업이 출원한 특허가 등록되는 경우, 이후 기업성장에 영향을 미쳐 5년 후에는 매출 증가율과 종업원 증가율이 각각 79.5%p, 54.5%p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arre-Mensa et al., 2017). 또한 초기 혁신에 성공한 창업기업은 등록된 특허에만 만족하지 않고, 후속 혁신활동도 활발히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arre-Mensa et al., 2017).

또한 특허는 기업의 기술우위, 혁신성에 대한 기업의 평판, 이미지에 영향을 미쳐 벤처캐피탈 등 외부 자금 유치에 성공할 확률을 높이고, 기업의 시장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Hsu and Ziedonis(2008)의 연구에서는 반도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자가 기업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특허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Haeussler et al.(2012)은 독일과 영국의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평균 76% 빠르게 VC 투자를 받고, 보다 많이 인용된 특허를 보유할수록 VC 유치가 더 빠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Hoenen et al.(2014)이 미국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VC 투자 초기 라운드에서 출원 중인 특허가 한 건 늘어나면 VC 투자 조달규모가 11.2%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Farre-Mensa et al.(2017)의 연구에서 창업 기업의 출원 특허가 등록되는 경우, VC 투자를 유치할 확률을 높이는데, 특히 IT기업에서 향후 3년 동안 투자유치 가능성을 6.3%p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VC 외에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8.6%p 높고, IPO 확률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II 상표 보유의 효과

상표 보유와 기업의 성과에 대한 연구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기업이 상표를 출원하는 주요 동기는 시장에서의 식별력을 얻고 평판을 누리기 위해서이다. 상표 출원은 기업이 강력한 시장자산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도 일컫는다(Athreye and Fassio, 2019; Llerena and Millot, 2020).

기업의 상표활동을 기업의 “혁신” 활동의 하나로 보고, 특허활동 뿐만 아니라 상표활동을 혁신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EC 2015; OECD 2015). 특히 low-tech 분야, 조직혁신, 서비스 혁신 등 비기술적 혁신의 결과물로서 상표활동을 다루고 있다(Millot, 2009; Llerena and Millot, 2020). 최근 연구에서는 한국과 같은 후발주자의 기술발전을 보여주는 지표로 상표권을 주목하며 특히 암묵지와 내수시장이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 상표의 역할이 중요함을 파악한 바 있다(Kang et al., 2020).

상표와 시장가치에 대한 분석연구는 2000년대에 주로 이루어졌다. Greenhalgh and Rogers(2007)는 영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표활동이 기업의 주식시장 가치와 생산성 수준에 기여함을 밝혀낸 바 있으며, Kransnikov et al.(2009)의 분석에서는 기업의 상표집약도와 기업 현금흐름 간의 양의 관계를 파악한 바 있다(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또한 Guzman and Stern(2015)은 특허와 상표활동이 모두 실리콘 창업기업의 성장에 양의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였다.

### III 산업재산권 보유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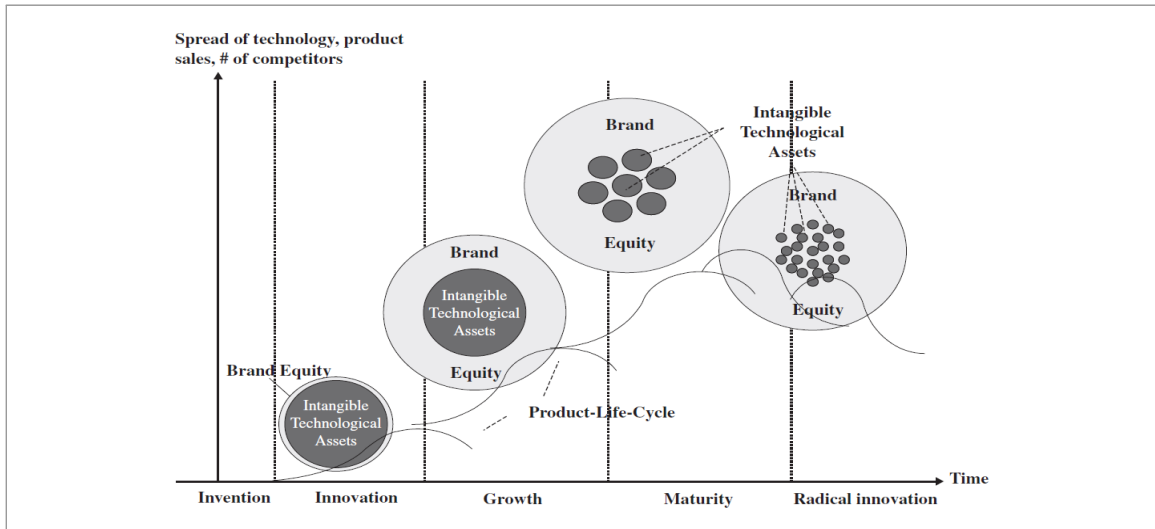
특허권, 상표권과 같이 개별 권리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산업재산권 보유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OHIM에서는 유럽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에 따른 기업 성과를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산업재산권의 보유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임을 확인하는 한편, 특히 중소기업에서 권리 보유가 기업의 수익과 양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OHIM, 2015; 강경남, 2019). 강경남(2019)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규모가 매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강경남, 2019). EUIPO(2019)의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산업재산권을 출원한 경우, 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Kang 외(2020)의 연구에서는 1962년부터 2009년까지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출원 활동 분석을 통해 산업재산권 출원 활동이 후발주자의 경제적, 기술적 발전을 설명한다고 제시하였다. 특허를 포함하여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산업재산권 보유가 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접근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IV 권리의 복합적 활용

최근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이란, 기업이 혁신 성과를 무형의 자산으로 보호하기 위해 서로 다른 권리 유형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이용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OECD, 유럽 OHIM의 연구에서는 'IP bundle'이라는 용어로 이와 같은 활용방식을 명명하고 있으며(OHIM, 2015; OECD, 2015), 일본에서는 '지적재산권 믹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지적재산연구소, 2012). 다양한 권리를 포함하는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hybrid license'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Gattari et al., 2017).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실증연구는 2000년대에 주로 이루어졌다. Parchomovsky and Siegelman(2002)은 특허권과 상표권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통해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높인다고 보았고, Somaya and Graham(2006)은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고 관련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일수록 한 종류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고, 서로 다른 유형의 지식재산권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강경남, 2019). Jennewein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하이테크 산업에서, 특허권과 상표권은 가위의 양날처럼 기술기반의 자산과 시장기반의 자산으로 기능하며 보완적이고 상호 의존적으로 작용한다고 파악하였다(강경남, 2019). 특히 '아스피린'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브랜드 자산과 기술 자산이 기술과 제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Jennewein et al., 2010).

▼ 그림 3-1 | Technology-life-cycle에 따른 기술적 자산과 브랜드 자산의 전략적 기능



출처: Jennewein(2005)를 Jennewein et al.(2010)에서 재인용

아스피린 사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63년 독일에서 설립된 바이엘사는 해열, 진통, 소염기능을 갖고 있는 salicylic acid를 고순도로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그 성과를 미국에서는 특허권으로, 그 외의 지역에서는 제조 노하우로 보호하였다. 상품화 초기에 몇몇 약사들이 파우더 형태의 아스피린을 밀가루 등 다른 가루로 희석하여 판매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제품의 희석이 불가능하도록 납작한 알약 형태에 'Bayer'라는 상표를 찍어서 판매하였다. 태블릿 형태의 알약은 순수 ASA(acetyl salicylic acid)를 정제할 역량이 있는 기업이 바이엘사뿐이라는 인식과 함께 다른 경쟁기업들의 시장진입을 막는 기능을 하였으며, 알약에 새겨진 상표는 최종 소비자들에게 바이엘사의 상표를 친숙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기술적 혁신에 대한 보호인 노하우와 특허, 기업의 브랜드가 보유한 혁신 이미지가 바이엘사의 시장지배력을 높여주었고, ASA를 생산하는 다른 경쟁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독점 상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 초기 기업의 무형자산에서 기술적 자산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후 상표권을 통해 얻어진 기업의 브랜드 자산이 시장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게 하였으며, 바이엘사가 보유한 아스피린 특허가 1917년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을 상징하는 대표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였다.

Helmets and Schautschick(2013)의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 묶음(IPR bundle) 활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화학, 의약품, 통신 등 강한 지식재산권 전략을 구사하는 산업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의 보완적 활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일본 지적재산연구소에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일부 분석에서 특허심사 기간이 짧고 기술 분야와 밀접한 경우 디자인 출원이 많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지적재산연구소, 2012; 강경남, 2019).

OECD(2015)의 연구에서는 전 세계 최상위 R&D 활동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업들이 특허와 상표를 보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화학, 의약품, 컴퓨터 및 전자 분야 등 제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두 가지 유형의 권리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빈도가 높고, IT 서비스, 금융서비스 등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은 상표를 통한 보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제조업 중 식품제조, 의약품 등 특허규모가 크지 않은 분야에서는 상표출원이 보다 활발하여 산업 분야별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ernis et al., 2015).

EUIPO(2019)는 지식재산권을 복합적으로 보유한 경우, 기업의 성장가능성이 높아지는지 분석하였는데, 상표, 특허, 디자인으로 구성된 'IP bundle'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추후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연구는 최근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다. 실증분석, 사례연구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지식재산권, 특히 산업재산권의 복합적 활용 현황 및 그 효과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산업재산권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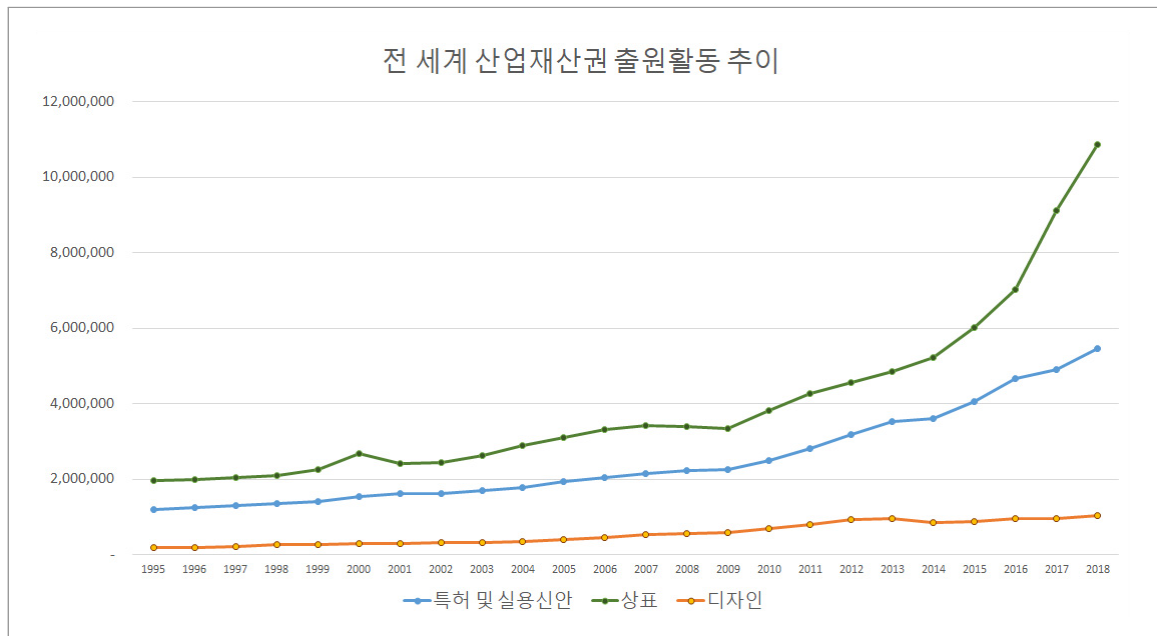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산업재산권 활동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들의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I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

앞서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WIPO 통계를 활용하여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관련 출원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 그림 3-2 | 전 세계 산업재산권 출원 활동 추이(1995~2018)

(단위: 건)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2020. 5. 수집) 자료를 토대로 작성

▼ 표 3-1 | 전 세계 산업재산권 출원통계(1995~2018)

(단위: 건)

구분	특허 및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1995	1,201,600	1,951,300	187,200
1996	1,257,500	1,986,400	197,400
1997	1,309,200	2,043,400	206,900
1998	1,343,700	2,090,500	254,718
1999	1,405,000	2,259,700	268,582
2000	1,532,920	2,667,600	292,280
2001	1,625,790	2,424,300	302,663
2002	1,625,990	2,441,800	324,491
2003	1,683,600	2,625,400	329,310
2004	1,774,590	2,895,700	344,449
2005	1,940,760	3,094,700	406,464
2006	2,048,210	3,320,700	450,641
2007	2,138,010	3,423,500	524,850
2008	2,233,920	3,388,000	567,829
2009	2,245,880	3,338,700	593,506
2010	2,483,780	3,812,000	676,582
2011	2,816,110	4,276,900	783,207
2012	3,168,960	4,550,700	934,689
2013	3,517,600	4,853,500	950,782
2014	3,604,010	5,229,500	854,128
2015	4,065,890	6,027,000	872,625
2016	4,653,650	7,030,900	963,121
2017	4,906,300	9,125,300	945,580
2018	5,453,750	10,874,500	1,024,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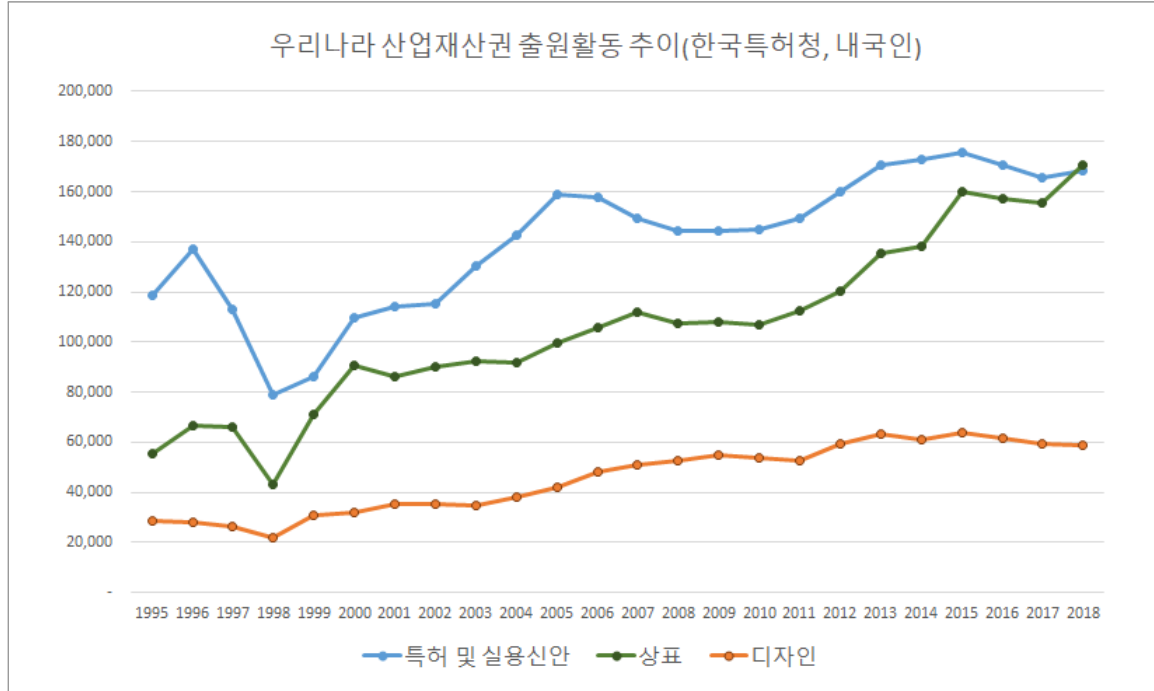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2020. 5. 수집) 자료를 토대로 작성

산업재산권 출원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출원증가율은 특허 및 실용신안 10.9%, 상표 20.1%, 디자인 4.6%로 상표와 특허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 내국인이 출원한 건수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3-3]과 같은데, 그동안의 창출 활동이 특허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상표출원이 증가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내국인의 상표 출원이 특허 출원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다.

▼ 그림 3-3 |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출원 활동 추이(1995~2018)

(단위: 건)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2020. 5. 수집) 자료를 토대로 작성

▼ 표 3-2 | 우리나라 내국인의 산업재산권 출원통계(1995~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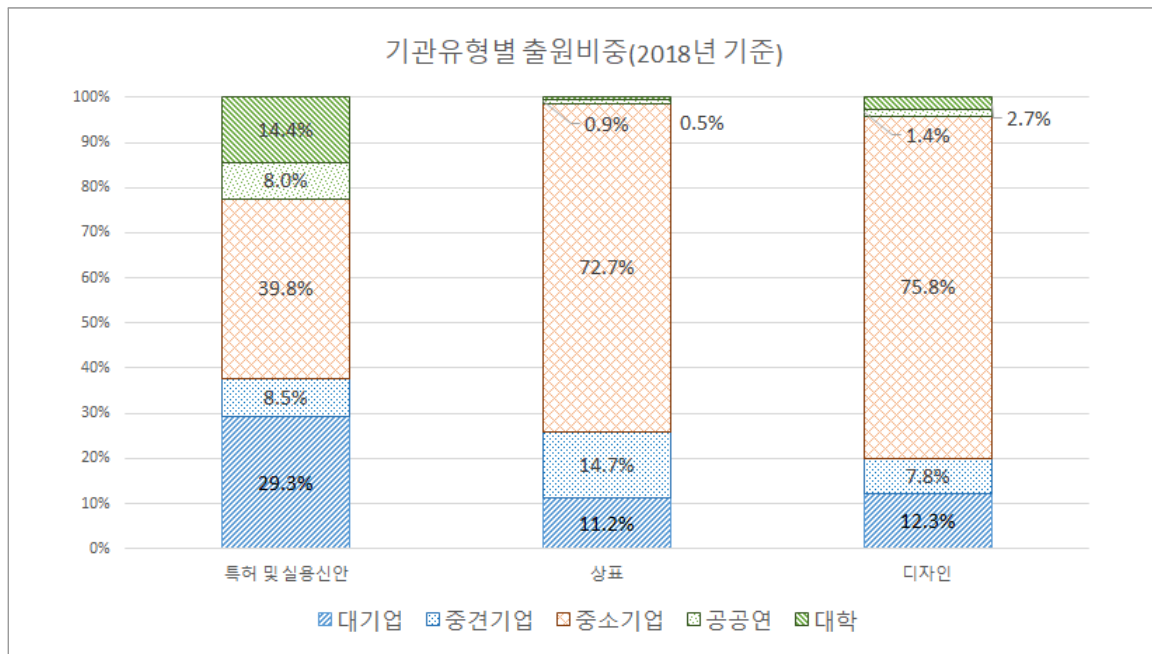
(단위: 건)

구분	특허 및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1995	118,590	55,218	28,382
1996	136,867	66,441	28,091
1997	112,809	66,222	26,675
1998	79,200	42,901	22,144
1999	86,314	71,262	30,871
2000	109,648	90,596	32,110
2001	114,103	86,408	35,074
2002	115,232	90,014	35,399
2003	130,487	92,368	34,994
2004	142,417	91,936	38,041
2005	158,722	99,436	41,918
2006	157,669	105,544	48,018
2007	149,333	112,157	50,868
2008	144,085	107,488	52,786
2009	144,117	108,170	54,934
2010	144,998	106,896	53,601
2011	149,496	112,578	52,812

구분	특허 및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2012	160,035	120,341	59,487
2013	170,441	135,233	63,102
2014	172,827	138,046	60,798
2015	175,569	160,026	64,084
2016	170,819	157,113	61,501
2017	165,535	155,665	59,104
2018	168,329	170,541	58,752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2020. 5. 수집) 자료를 토대로 작성

▼ 그림 3-4 | 기관유형별 출원비중(2018년 기준)



출처: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2019) 자료를 토대로 작성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의 기관유형별 출원 비중을 살펴보면,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건수 중 대기업 29.3%, 중견기업 8.5%, 중소기업 3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표 출원 중 대기업 11.2%, 중견기업 14.7%, 중소기업 72.7%의 비중을 보였고, 디자인 출원 중 대기업 12.3%, 중견기업 7.8%, 중소기업 75.8%로 파악되어,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II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을 파악하였다. 기업 활동조사는 기업이 속한 산업 분야, R&D 비용,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의 포괄적 파악을 목적으로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통계청, 2016). 조사기준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법인 중 상용근로자 50인 이상,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는데,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은 상용근로자 50인 미만이라도 자본금 10억 이상인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조사를 수행한다(통계청, 2016).

주요 항목에 누락이 있는 기업들을 제외하고 12,789개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46.9%, 상표권 보유기업은 46.8%, 디자인권 보유기업은 22.3%로 파악되었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중 어느 하나라도 보유한 기업은 63.6%로 조사되었다. 산업분류별로 산업재산권 보유비율을 살펴보면, 제조업 분야에서 77.0%로 가장 높은 보유율을 보였고, 정보서비스업 분야가 75.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분야가 71.6%로 그 뒤를 이었다. 권리 유형별 보유비율을 살펴보면, 특허 및 실용신안권 보유비율의 경우 제조업 분야가 68.4%로 가장 높았으며, 상표권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 분야는 정보서비스업(68.3%), 디자인권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 분야는 제조업(34.9%)으로 나타났다.

▼ 표 3-3 | 산업별(대분류 기준)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비중(2018년 기준)

산업별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비중	산업재산권	특허 및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b>전체</b>	<b>63.6%</b>	<b>46.9%</b>	<b>46.8%</b>	<b>22.3%</b>
농업, 임업 및 어업	44.0%	24.0%	40.0%	4.0%
광업	66.7%	66.7%	33.3%	0.0%
제조업	77.0%	68.4%	51.6%	34.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0.9%	41.5%	41.5%	24.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66.9%	63.0%	22.0%	9.4%
건설업	64.5%	46.6%	43.4%	16.3%
도매 및 소매업	47.9%	19.2%	43.7%	14.3%
운수 및 창고업	16.6%	4.8%	14.2%	2.2%
숙박 및 음식점업	48.5%	7.9%	46.8%	8.2%
정보서비스업	75.0%	48.3%	68.3%	14.8%
금융 및 보험업	55.2%	22.7%	54.1%	9.9%
부동산업	40.4%	6.9%	38.4%	3.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1.6%	60.4%	35.7%	12.3%
기타	37.5%	10.5%	34.9%	5.2%

출처: 2018년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

권리의 복합적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30.5%,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같이 보유한 경우가 19.8%,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같이 보유한 기업이 17.9%로 파악되었으며, 특허 및 실용신안권,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모두 보유한 기업은 15.9%로 파악되었다. 산업별로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을 같이 보유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제조업(43.4%), 정보서비스업(41.7%)이었으며,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같이 보유한 비율이 높은 산업 분야는 제조업(32.4%),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같이 보유한 비율이 높은 산업 분야 역시 제조업(27.5%)으로 파악되었다.

▼ 표 3-4 | 산업별(대분류 기준)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비중(2018년 기준)

산업별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비중	특허·실용신안 & 상표권	특허·실용신안 & 디자인권	상표권 & 디자인권	특허·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권
<b>전체</b>	<b>30.5%</b>	<b>19.8%</b>	<b>17.9%</b>	<b>15.9%</b>
농업, 임업 및 어업	20.0%	0.0%	4.0%	0.0%
광업	33.3%	0.0%	0.0%	0.0%
제조업	43.4%	32.4%	27.5%	25.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2.1%	24.5%	22.6%	22.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18.1%	9.4%	7.1%	7.1%
건설업	26.3%	14.3%	11.1%	9.8%
도매 및 소매업	15.4%	9.4%	13.3%	8.8%
운수 및 창고업	2.9%	1.2%	1.2%	0.8%
숙박 및 음식점업	6.8%	5.0%	7.6%	5.0%
정보서비스업	41.7%	12.8%	14.3%	12.3%
금융 및 보험업	21.5%	8.1%	9.9%	8.1%
부동산업	4.9%	1.6%	3.3%	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8%	10.5%	7.3%	5.9%
기타	8.2%	3.6%	4.3%	3.1%

출처: 2018년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

제조업 분야에 대해 중분류 단위에서 산업재산권 보유 비중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화학 분야, 금속·비금속 분야, 전기전자 분야, 기계 및 운송장비 등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료품, 음료 등 식품제조, 의약품 관련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상표권 보유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OECD(2015)의 분석과 유사한 양상으로 판단된다.

▼ 표 3-5 | 제조업 분야별(중분류 기준)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비중(2018년 기준)

산업별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비중	산업재산권	특허 및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b>전체</b>	<b>77.0%</b>	<b>68.4%</b>	<b>51.6%</b>	<b>34.9%</b>
식료품 제조업	77.4%	53.4%	70.8%	31.3%
음료 제조업	89.3%	57.1%	71.4%	46.4%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67.7%	46.4%	52.1%	20.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83.3%	23.2%	82.6%	37.7%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68.4%	42.1%	55.3%	28.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90.0%	80.0%	70.0%	70.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66.9%	58.5%	43.1%	33.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76.7%	58.3%	50.0%	31.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76.9%	61.5%	76.9%	46.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80.0%	73.3%	63.6%	26.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7.8%	79.3%	83.5%	30.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8.6%	71.0%	46.1%	39.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74.9%	64.5%	53.6%	33.3%
1차 금속 제조업	66.8%	55.7%	38.6%	24.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69.4%	65.8%	38.4%	34.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82.9%	80.1%	54.6%	37.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4.7%	82.8%	66.4%	52.2%
전기장비 제조업	81.3%	78.4%	57.1%	46.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80.7%	76.9%	49.0%	38.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0.7%	67.0%	28.9%	28.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67.3%	63.6%	32.7%	32.7%
가구 제조업	83.9%	74.2%	77.4%	74.2%
기타 제품 제조업	92.6%	81.5%	77.8%	72.2%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50.0%	50.0%	20.0%	0.0%

출처: 2018년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

▼ 표 3-6 | 제조업 분야별(중분류 기준)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비중(2018년 기준)

산업별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비중	특허·실용신안 & 상표권	특허·실용신안 & 디자인권	상표권 & 디자인권	특허·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권
<b>전체</b>	<b>43.4%</b>	<b>32.4%</b>	<b>27.5%</b>	<b>25.5%</b>
식품 제조업	47.1%	24.9%	30.6%	24.5%
음료 제조업	39.3%	35.7%	42.9%	32.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32.3%	15.6%	16.1%	13.0%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2.5%	18.1%	37.7%	18.1%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8.9%	21.1%	28.9%	21.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60.0%	70.0%	50.0%	50.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5.4%	30.0%	23.1%	20.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5.0%	21.7%	21.7%	15.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1.5%	46.2%	46.2%	46.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56.9%	24.0%	24.9%	22.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75.0%	28.2%	30.3%	28.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0.1%	36.1%	28.7%	26.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3.2%	30.1%	25.1%	21.9%
1차 금속 제조업	28.5%	22.0%	16.8%	15.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5.8%	32.2%	26.3%	25.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2.0%	37.2%	29.8%	29.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64.6%	51.5%	46.3%	45.5%
전기장비 제조업	54.5%	45.5%	37.6%	36.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5.3%	37.8%	28.3%	28.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5.6%	27.6%	15.4%	15.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9.9%	31.8%	20.6%	20.6%
가구 제조업	67.7%	71.0%	67.7%	64.5%
기타 제품 제조업	66.7%	64.8%	64.8%	57.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0.0%	0.0%	0.0%	0.0%

출처: 2018년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

## 제3절

●●  
산업재산권 복합적 보유와 기업 성장

## I 연구 개요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은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 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Pisano 2006), 상표권은 ‘시장’ 자산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Athreye and Fassio, 2019)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특허권과 상표권이 ‘혁신’과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개별 권리의 역할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권리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Statman와 Tyebjee(1981)의 연구에서는 의약품 관련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해당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기업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특허의 가치를 상표의 가치로 전환하여 특허만료의 효과가 미비하게 만든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Jennewein 외(2010)의 연구에서는 바이엘 아스피린의 사례를 통해 특허권과 상표권의 상호보완 작용을 설명하였다. 사례연구들은 다양한 지식재산권 활용이 ‘기술’적 측면과 ‘시장’적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기업의 성과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Helmerts and Schautschick, 2013). 사례연구에 비해 정량적 실증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로, Llerena and Millot(2020)은 슈퍼모듈러티(supermodularity) 분석을 통해 특허와 상표 간의 상호보완성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EUIPO(2019)에서는 복합적 권리 활용과 기업의 성과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중 EUIPO(2019)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권리 유형의 산업재산권을 출원한 기업이 이후에 “양의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EUIPO, 2019).

본 연구에서는 유럽 EUIPO의 연구와 유사하게, 산업재산권의 복합적 보유가 기업의 성장과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 II 데이터 및 주요 변수

분석을 위해 통계청에서 수행한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산권 보유비율이 높은 제조업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개년도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제한된 기업 식별정보를 활용하여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t$ 기의 데이터와  $t+3$ 기의 매출정보를 통해 기업이 3년 뒤에 매출액이 증가/감소하였는지를 파악하여 종속변수를 생성하였다<sup>49)</sup>. 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에 따른 3년 뒤 성과를 분석하므로, 데이터셋은 기업의 2013년~2015년의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보유 및 R&D 등 관련 정보와 2016년~2018년 매출정보를 연계하여 마련하였다.

이때 기업의 매출액 증가수준이 산업평균 보다 높아야 기업이 성장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2014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3년 단위 평균 매출액증가율 중 가장 큰 값이 4.9%임을 감안하여(3년 단위 평균 매출액증가율: 2014년~2016년 -1.6%, 2015년~2017년 2.2%, 2016년~2018년 4.9%) 매출액증가율이 5% 이상이면 기업이 성장한 것으로 보고, 5% 미만이면 성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복합적으로 보유한 경우, 즉 특허 및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모두 보유한 경우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복합적 보유’ 여부를 주요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때 다양한 권리의 묶음을 활용하는 것이 기업 성장에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한 가지 권리 유형만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 권리 유형을 활용하는 경우, 세 가지 권리 유형을 묶음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변수를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의 양적 규모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종업원 수 대비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보유 건수를 포함하였으며, 기업의 혁신활동을 위한 인적 투입요소로 종업원 수, 물적 투입요소로 R&D 비용을 사용하였다.

▼ 표 3-7 | 주요 변수

구분	변수	내용
기업성장	매출성장	$t$ 기 대비 $t+3$ 기 기업 성장 여부 기업이 3년 전에 비해 매출 규모가 5% 이상 증가한 경우 1, 아니면 0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보유	단일 권리 유형 보유	한 가지 유형의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특허·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중 한가지 유형만 보유시 1, 아니면 0
	두 가지 권리 유형 보유	두 가지 유형의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특허·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중 2가지 보유시 1, 아니면 0

49) 적정 time lag를 도출하기 위해 모형 선호 기준통계량인 Log Likelihood 및 AIC를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Log Likelihood 값이 크고, AIC 값이 작을수록 선호 모형으로 판단한다.

구분	변수	내용
	세 가지 권리 유형 보유	세 가지 유형의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특허·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모두 보유시 1, 아니면 0
통제변수	지식재산권 규모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규모 종업원 수 대비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연구개발비용	기업의 R&D 비용을 로그변환
	종업원 규모	기업이 보유한 종업원 수를 로그변환

### III 분석모형

종속변수가 0 또는 1의 값을 갖게 되므로, 분석을 위하여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였다. 프로빗의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다.

$$y_i = x_i' \beta + e_i, e_i \sim N(0, \sigma^2)$$

단,  $y_i = 0$  또는  $1$ , 모든  $i$ 에 대해서  $i = 1, 2, \dots, N$

$x_i$ 는 설명변수

설명변수와 종속변수를 연결하는 비관측변수 latent variable을  $y^*$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설정될 수 있다(김창진·김도완, 2009).

$$y^* = x_i' \beta + e_i$$

$$\Pr(y_i = 1 | x_i) = \Pr(y^* \geq 0) = \Pr(x_i' \beta + e_i \geq 0) = \Pr(e_i \geq -x_i' \beta)$$

$$= \Pr(e_i / \sigma \geq -x_i' \beta / \sigma) = \Pr(u_i \geq -x_i' \alpha) = \Phi(-x_i' \alpha) = \Phi(-x_i' \alpha)$$

단,  $u_i = e_i / \sigma$ ,  $\alpha = \beta / \sigma$ ,  $u_i \sim N(0, 1)$

$\Phi(\ )$ 는 표준누적정규분포(standardized cumulative normal distribution)

프로빗 모형은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or)을 이용하여 추정된다. 최우추정법에 의해 추정된 값은 관찰된 표본이 나올 가능성을 최대로 만드는 계수의 값이며, 최우추정량은 표본의 크기가 무한히 커짐에 따라 추정량의 분포가 모수의 값(parameters)에 집중되는 일치성(consistency)을 가진다. 또한 최우추정량의 분포는 표본의 수가 많을수록 정규분포에 접근하며, 추정량의 분산이 다른 어느 추정량의 분산보다 작다(Ben-Akiva and Lerman, 1985).

## IV 분석결과

주요 변수에 대한 값의 누락이 있는 경우 listwise deletion 방식으로 제외하고 총 14,184개의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각 연도별 데이터 비중은 2013년 36.6%, 2014년 28.0%, 2015년 35.4%로 파악되었다.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모든 기업이 제조업 분야에 속한 기업으로, 중분류 단위에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 속한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13.7%), 전기전자 분야 11.7%, 음식료품 분야 7.1%, 석유정제품 분야 6.9%, 의약품 분야 6.6% 등의 분포를 보였다(표 3-8 참조).

주요 변수와 관련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t$ 기에 비해  $t+3$ 기에 매출 규모가 증가하는 성장을 이룬 기업은 35.3%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보유 관련, 하나의 권리 유형만 보유한 기업이 26.6%, 2가지 권리 유형을 보유한 기업이 29.3%, 3가지 권리 유형을 보유한 기업은 26.4%로 나타났다. 기업의 종업원 수 대비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보유 규모는 0.21건/명으로 파악되었으며, 평균 연구개발비는 77억 9,345만 원, 평균 종업원 수는 342.4명으로 나타났다(표 3-9 참조).

▼ 표 3-8 | 데이터셋 구성(n=14,184)

구분	전체	2013	2014	2015
샘플수(건)	14,184	5,193 (36.6%)	3,973 (28.0%)	5,018 (35.4%)
10_식료품 제조업	6.7%	6.8%	6.3%	6.9%
11_음료 제조업	0.5%	0.4%	0.5%	0.5%
13_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3.2%	3.4%	2.9%	3.3%
14_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5%	2.8%	2.0%	2.6%
15_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7%	0.7%	0.6%	0.7%
16_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0.2%	0.3%	0.2%	0.2%
17_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1%	2.3%	1.6%	2.2%
18_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9%	1.1%	0.7%	0.9%
19_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1%	0.2%	0.1%	0.2%
20_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6.9%	6.6%	7.2%	7.0%
21_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4%	3.1%	3.8%	3.3%
22_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6%	6.6%	6.6%	6.7%
23_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8%	3.0%	2.7%	2.8%
24_1차 금속 제조업	5.8%	6.1%	4.9%	6.1%
25_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6.0%	6.1%	5.8%	6.1%
26_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1.7%	11.7%	12.4%	11.1%
27_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4.0%	3.6%	4.5%	4.1%

구분	전체	2013	2014	2015
28_전기장비 제조업	6.0%	5.9%	6.5%	5.8%
29_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5%	12.2%	13.2%	12.3%
30_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3.7%	13.6%	13.6%	14.0%
31_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0%	2.1%	2.1%	1.8%
32_가구 제조업	0.7%	0.6%	0.8%	0.7%
33_기타 제품 제조업	1.0%	1.0%	0.9%	1.0%

▼ 표 3-9 | 주요 변수 관련 기초통계량(n=14,184)

변수	평균	표준편차	Min	Max
기업 성장(5% 이상)	0.353	0.478	0.000	1.000
단일 권리 유형 보유	0.266	0.442	0.000	1.000
두 가지 권리 유형 보유	0.293	0.455	0.000	1.000
세 가지 권리 유형 보유	0.264	0.441	0.000	1.000
지식재산권 규모(건/명)	0.210	0.524	0.000	14.283
연구개발비용(백만 원)	7,793.447	203,785.600	0.000	13,800,000.0
종업원 수(명)	342.444	2,127.492	50	97,971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다음 <표 3-10>과 같다.

▼ 표 3-10 | 변수 간 상관관계(n=14,184)

	1	2	3	4	5	6
1. 기업 성장	1.000					
2. 단일 권리 유형 보유	-0.030***	1.000				
3. 두 가지 권리 유형 보유	0.023***	-0.387***	1.000			
4. 세 가지 권리 유형 보유	0.028***	-0.361***	-0.385***	1.000		
5. 지식재산권 규모	0.034***	-0.158***	-0.011	0.331***	1.000	
6. 연구개발비용	0.039***	-0.103***	0.142***	0.277***	0.130***	1.000
7. 종업원 규모	-0.047***	-0.120***	0.015*	0.254***	0.025***	0.401***

\* p<0.1, \*\* p<0.05, \*\*\* p<0.01 수준에서 유의미

먼저 지식재산권의 규모에 따른 기업성장 효과를 분석한 결과, 종업원 수 대비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보유 규모가 클수록 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한계효과: 0.116, p<0.01). 연구개발투자 또한 기업성장과 양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1, 표 3-12 참조).

▼ 표 3-11 | 주요 분석 결과(1): 제조업(프로빗 분석)

종속변수: 기업성장	Coef.	Std. Err.	P > z
지식재산권 규모	0.116***	0.044	0.009
연구개발비용	0.037***	0.008	0.000
종업원 규모	-0.223***	0.030	0.000
Number of obs		14,184	
Log likelihood		-8,200.593	
Wald chi2(3)		70.76***	

\*  $p < 0.1$ , \*\*  $p < 0.05$ , \*\*\*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

▼ 표 3-12 | 주요 분석 결과(1): 제조업(프로빗 분석) - 한계효과

종속변수: 기업성장	dy/dx	Std. Err.	P > z
지식재산권 규모	0.116***	0.044	0.009
연구개발비용	0.037***	0.008	0.000
종업원 규모	-0.223***	0.030	0.000

\*  $p < 0.1$ , \*\*  $p < 0.05$ , \*\*\*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

연구모형에 지식재산권 권리 유형 보유의 복합성에 대한 변수를 추가한 결과, 단일 권리 유형을 보유한 경우는 기업의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반면, 두 가지 권리 유형을 보유한 경우와 세 가지 권리 유형을 보유한 경우,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두 가지 권리 유형을 보유한 경우 기업 성장에 미치는 한계효과 0.151, 세 가지 권리 유형을 보유한 경우 기업 성장에 미치는 한계효과 0.209로 분석되어 권리의 복합적 보유가 기업 성장과 양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권리 보유의 복합성이 추가된 연구모형에서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보유 규모에 대한 계수는 양의 값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투자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기업 성장과 양의 관계를 보였다(표 3-13, 표 3-14 참조).

▼ 표 3-13 | 주요 분석 결과(2): 제조업(프로빗 분석)

종속변수: 기업성장	Coef.	Std. Err.	P > z
단일 권리 유형 보유	-0.009	0.066	0.891
두 가지 권리 유형 보유	0.151**	0.069	0.029
세 가지 권리 유형 보유	0.209***	0.077	0.007
지식재산권 규모	0.065	0.047	0.170
연구개발비용	0.030***	0.008	0.000
종업원 규모	-0.241***	0.031	0.000
Number of obs		14,184	
Log likelihood		-8,193.567	
Wald chi2(3)		83.82***	

\*  $p < 0.1$ , \*\*  $p < 0.05$ , \*\*\*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

▼ 표 3-14 | 주요 분석 결과(2): 제조업(프로빗 분석) - 한계효과

종속변수: 기업성장	dy/dx	Std. Err.	P>z
단일 권리 유형 보유	-0.009	0.066	0.891
두 가지 권리 유형 보유	0.151**	0.069	0.029
세 가지 권리 유형 보유	0.209***	0.077	0.007
지식재산권 규모	0.065	0.047	0.170
연구개발비용	0.030***	0.008	0.000
종업원 규모	-0.241***	0.031	0.000

\*  $p < 0.1$ , \*\*  $p < 0.05$ , \*\*\*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

이 중 종업원 수 300인 미만의 기업을 추려서 복합적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보유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중소기업 관련 샘플의 주요 변수와 관련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t$ 기에 비해  $t+3$ 기에 매출 규모가 증가하는 성장을 이룬 기업은 36.1%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보유 관련, 하나의 권리 유형만 보유한 기업이 28.7%, 두 가지 권리 유형을 보유한 기업이 28.8%, 세 가지 권리 유형을 보유한 기업은 22.5%로 나타났다. 기업의 종업원 수 대비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보유 규모는 0.20건/명으로 파악되었으며, 평균 연구개발비는 8억 5,748만 원, 평균 종업원 수는 127.2명으로 나타났다.

▼ 표 3-15 | 주요 변수 기초통계량(종업원 수 300인 미만 기업)

변수	평균	표준편차	Min	Max
기업 성장(5% 이상)	0.361	0.480	0.000	1.000
단일 권리 유형 보유	0.287	0.452	0.000	1.000
두 가지 권리 유형 보유	0.288	0.453	0.000	1.000
세 가지 권리 유형 보유	0.225	0.417	0.000	1.000
지식재산권 규모(건/명)	0.205	0.542	0.000	14.283
연구개발비용(백만 원)	857.479	2,412.282	0.000	120,832.00
종업원 수(명)	127.222	61.124	50	299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다음 <표 3-16>과 같다.

▼ 표 3-16 | 변수 간 상관관계( $n=11,726$ )

	1	2	3	4	5	6
1. 기업 성장	1.000					
2. 단일 권리 유형 보유	-0.040***	1.000				
3. 두 가지 권리 유형 보유	0.027***	-0.404***	1.000			
4. 세 가지 권리 유형 보유	0.045***	-0.342***	-0.343***	1.000		

	1	2	3	4	5	6
5. 지식재산권 규모	0.033***	-0.152***	0.014	0.331***	1.000	
6. 연구개발비용	0.051***	-0.057***	0.178***	0.221***	0.126***	1.000
7. 종업원 규모	-0.025***	-0.034***	0.047***	0.109***	-0.025***	0.221***

\*\*\*  $p(0.01)$  수준에서 유의미

먼저 지식재산권의 규모에 따른 기업성장 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에서도 종업원 수 대비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보유 규모가 클수록 한계효과 0.099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3-17, 표 3-18 참조).

▼ 표 3-17 | 주요 분석 결과(3): 제조업 중소기업(프로빗 분석)

종속변수: 기업성장	Coef.	Std. Err.	P > z
지식재산권 규모	0.099*	0.046	0.032
연구개발비용	0.032***	0.008	0.000
종업원 규모	-0.276***	0.053	0.000
Number of obs		11,726	
Log likelihood		-6,894.046	
Wald chi2(3)		43.01***	

\*  $p(0.1)$ , \*\*  $p(0.05)$ , \*\*\*  $p(0.01)$  수준에서 유의미

▼ 표 3-18 | 주요 분석 결과(3): 제조업 중소기업(프로빗 분석) - 한계효과

종속변수: 기업성장	dy/dx	Std. Err.	P > z
지식재산권 규모	0.099*	0.046	0.032
연구개발비용	0.032***	0.008	0.000
종업원 규모	-0.276***	0.053	0.000

\*  $p(0.1)$ , \*\*  $p(0.05)$ , \*\*\*  $p(0.01)$  수준에서 유의미

지식재산권 권리 유형 보유의 복합성에 대한 변수를 추가한 연구모형에서, 전체 결과와 마찬가지로 단일 권리 유형을 보유한 경우는 기업의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반면, 두 가지 권리 유형을 보유한 경우와 세 가지 권리 유형을 보유한 경우, 기업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두 가지 권리 유형을 보유한 경우 기업성장에 미치는 한계효과 0.193, 세 가지 권리 유형을 보유한 경우 기업 성장에 미치는 한계효과 0.270으로 분석되어 권리의 복합적 보유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한계효과가 중소기업에서 더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3-19, 표 3-20 참조).

▼ 표 3-19 | 주요 분석 결과(4): 제조업 중소기업(프로빗 분석)

종속변수: 기업성장	Coef.	Std. Err.	P > z
단일 권리 유형 보유	0.006	0.068	0.934
두 가지 권리 유형 보유	0.193***	0.073	0.008
세 가지 권리 유형 보유	0.270***	0.082	0.001
지식재산권 규모	0.035	0.050	0.483
연구개발비용	0.022*	0.009	0.012
종업원 규모	-0.299***	0.054	0.000
Number of obs		11,726	
Log likelihood		-6,884.622	
Wald chi2(3)		60.73***	

\*  $p(0.1)$ , \*\*  $p(0.05)$ , \*\*\*  $p(0.01)$  수준에서 유의미

▼ 표 3-20 | 주요 분석 결과(4): 제조업 중소기업(프로빗 분석) - 한계효과

종속변수: 기업성장	dy/dx	Std. Err.	P > z
단일 권리 유형 보유	0.006	0.068	0.934
두 가지 권리 유형 보유	0.193***	0.073	0.008
세 가지 권리 유형 보유	0.270***	0.082	0.001
지식재산권 규모	0.035	0.050	0.483
연구개발비용	0.022*	0.009	0.012
종업원 규모	-0.299***	0.054	0.000

\*  $p(0.1)$ , \*\*  $p(0.05)$ , \*\*\*  $p(0.01)$  수준에서 유의미

EU IPO에서는 2000년부터 2002년 동안 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 활동과 2002년부터 2005년 기간의 기업 성과(성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IP bundle(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창출 활동이 후속 기업 성장에 긍정적임을 확인한 바 있다(EUIPO, 2019). 기업의 복합적 권리보유와 기업성장이 서로 (+) 관계를 보인 본 연구의 결과는 EUIPO(2019)가 유럽 중소기업의 복합적 산업재산권 출원 활동과 기업 성장에 대해 살펴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 데이터를 활용함에 따라(식별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기업 업력, 주요 자산성 지출,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 등 주요 변수를 함께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다양한 권리 유형의 지식재산권 보유가 하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다양한 권리를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권리 보유의 효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합적 권리 활용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다양한 권리를 하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복합적 권리 활용의 특징, 기업 성과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 현황과 그 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 제4절

## 산업재산권 복합적 권리 활용 현황

## I 권리의 복합적 활용 조사 개요

기업의 복합적 권리 활용 현황과 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권리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권리 유형별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 대표적인 산업 분야에 속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3-21 | 설문내용의 구성

구분	주요 조사항목(안)
기업 특성	• 업력, 주요 업종, 비즈니스 모델(BtoB, BtoC)
관련 투입	• 근로자 수, R&D 비용, 광고선전비 등
지식재산 보유 및 전략	•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 특허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 지식재산 보호의 방향과 전략 - 지식재산 보호(연구 성과물의 전유) 전략 및 활용도
	• 다른 유형의 권리를 통한 활용 전략 구사 여부 - 특허-상표, 특허-디자인, 상표-디자인 등

제조업 중 상표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식음료/의약품 분야와 특허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전자제품 분야, 서비스업 중 산업재산권 보유비율이 높은 정보서비스 분야에 속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일반현황 및 지식재산 보유 및 경영전략, 기업의 성과에 대해 조사하되,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 B to B 위주인지, B to C 위주인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가치사슬상 위치에 따른 차별성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산업분류에 속한 기업들 중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산업재산권 창출 활동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휴폐업, 중복추출 등이 확인된 기업을 제외하고 조사대상 3,599개 기업 중 516개 기업이 응답하여 14.3%의 응답률을 보였다.

▼ 표 3-22 | 설문대상 및 응답기업 구성

	산업분류				전체
	음식료품	의약품	전기전자	정보서비스	
표본집단	1,095	371	1,542	591	3,599
응답기업	177	83	180	76	516

## II 지식재산권 활동 현황

주요 변수에 대한 응답을 다수 누락한 4개 기업의 응답을 제외하고, 512개 기업의 주요 응답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12개 기업의 산업분포를 살펴보면, 음식료품 분야 176개사, 의약품 분야 81개사, 전기전자 분야 180개사, 정보서비스 분야 75개사로 구성되었다. 최근 3년간 수출활동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구성을 보면, 수출활동이 있는 기업이 290개사, 수출활동이 없는 기업이 222개사로 구성되었다. 응답기업의 최근 3년간 평균 근로자 수는 98.1명, 평균 매출액은 335.5억 원으로 파악되었다.

▼ 표 3-23 | 응답기업 평균 근로자 수

(단위: 개, %, 명)

		계	10인 미만	10인~ 30인 미만	30인~ 100인 미만	100인~ 300인 미만	300인 이상	평균
전체		512	26.4	26.6	25.8	14.5	6.8	98.1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37.5	22.7	25.6	10.2	4.0	88.3
	의약품	81	14.8	17.3	24.7	25.9	17.3	169.7
	전기전자	180	15.0	35.6	28.9	14.4	6.1	94.4
	정보서비스	75	40.0	24.0	20.0	12.0	4.0	53.0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17.9	23.4	28.3	19.3	11.0	146.1
	수출 없음	222	37.4	30.6	22.5	8.1	1.4	35.5

▼ 표 3-24 | 응답기업 평균 매출액

(단위: 개, %, 백만 원)

	계	10억 원 미만	10억 원~50억 원 미만	50억 원~100억 원 미만	100억 원~200억 원 미만	200억 원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08	24.0	26.6	10.4	12.8	26.2	33,547.7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30.7	26.7	10.8	13.1	18.8	27,064.0
	의약품	80	20.0	16.3	7.5	7.5	48.8	56,228.6
	전기전자	180	11.7	31.1	11.7	16.7	28.9	37,197.4
	정보서비스	72	43.1	26.4	9.7	8.3	12.5	15,071.3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15.5	24.1	10.3	12.1	37.9	50,801.0
	수출 없음	218	35.3	29.8	10.6	13.8	10.6	10,596.0

\* 응답자 Base: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508)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거래유형)은 매출액 중 B to B(business to business: 기업 간 거래), B to C(business to consumer: 기업과 소비자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조사하였다. 응답기업의 매출 중 B to B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76.9%, B to C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1.4%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 B to G(business to government: 기업과 정부의 거래) 등이 평균 1.7%를 차지했다. 산업 분야별로는 의약품, 전기전자 분야에서 B to B 거래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음식료품,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B to C 거래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표 3-25 | 매출액 중 각 비즈니스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 - B to B

(단위: 개, %)

	계	0%	25% 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06	7.7	6.1	5.3	10.9	70.0	76.9	
산업분류	음식료품	175	9.1	10.9	10.3	19.4	50.3	63.0
	의약품	80	1.3	6.3	1.3	5.0	86.3	89.4
	전기전자	178	5.1	0.0	3.4	5.1	86.5	89.0
	정보서비스	73	17.8	9.6	2.7	11.0	58.9	66.9
수출활동	수출 있음	286	4.2	6.3	6.3	10.1	73.1	79.4
	수출 없음	220	12.3	5.9	4.1	11.8	65.9	73.6

\* 응답자 Base: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506)

▼ 표 3-26 | 매출액 중 각 비즈니스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 - B to C

(단위: 개, %)

	계	0%	25% 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06	53.6	18.8	6.5	7.9	13.2	21.4	
산업분류	음식료품	175	21.7	29.1	12.6	17.1	19.4	36.1
	의약품	80	75.0	15.0	0.0	2.5	7.5	9.3
	전기전자	178	73.6	15.7	2.8	3.4	4.5	8.9
	정보서비스	73	57.5	5.5	8.2	2.7	26.0	29.9
수출활동	수출 있음	286	51.4	23.4	5.9	8.4	10.8	19.8
	수출 없음	220	56.4	12.7	7.3	7.3	16.4	23.5

\* 응답자 Base: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506)

▼ 표 3-27 | 매출액 중 각 비즈니스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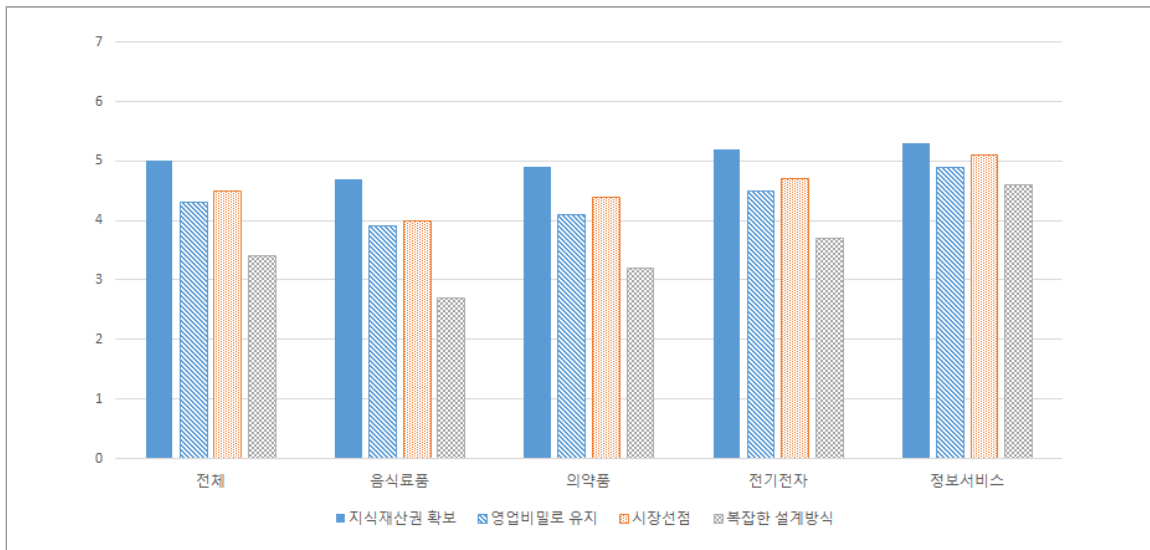
(단위: 개, %)

	계	0%	25% 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06	95.8	1.8	0.4	1.2	0.8	1.7	
산업분류	음식료품	175	97.7	1.1	0.0	0.6	0.6	0.9
	의약품	80	92.5	5.0	1.3	1.3	0.0	1.3
	전기전자	178	95.5	1.7	0.6	1.7	0.6	2.1
	정보서비스	73	95.9	0.0	0.0	1.4	2.7	3.2
수출활동	수출 있음	286	96.9	1.7	0.7	0.7	0.0	0.8
	수출 없음	220	94.5	1.8	0.0	1.8	1.8	2.9

\* 응답자 Base: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506)

[그림 3-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및 혁신 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 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전략의 활용도가 5.0점(7점 척도)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쟁사에 앞선 시장선점 전략이 4.5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유사조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한국기업혁신조사(2018)에 따르면, 기업의 혁신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으로 특허권(27.7%), 상표권(9.2%), 디자인권(9.0%) 창출을 꼽았으며, 경쟁기업에 앞선 시장선점(4.4%)이 그 뒤를 이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

▼ 그림 3-5 | 연구개발 및 혁신 성과물 보호 전략



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확보 선호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허 및 실용신안권 확보에 대한 선호도가 5.2점(7점 척도)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상표권 확보에 대한 선호도가 4.2점, 디자인권 2.8점, 영업비밀 2.3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전기전자 분야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확보에 대한 선호도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음식료품 분야의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상표권 확보에 대한 선호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영업비밀 확보 관련 선호도도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출활동 유무에 따른 지식재산 확보 선호도 또한 특허 및 실용신안 확보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표 3-28 | 혁신 성과물 보호 위한 지식재산 확보 선호도

(단위: 개, %, 점)

	계	특허 및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신지식 재산	영업비밀	
전체	512	5.2	4.2	2.8	1.8	1.6	2.3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4.8	4.8	3.4	2.4	2.2	3.0
	의약품	81	4.9	4.2	2.0	1.0	0.9	1.5
	전기전자	180	5.8	3.7	3.2	2.0	1.8	2.7
	정보서비스	75	4.8	4.1	1.5	1.0	0.6	0.6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5.5	4.6	3.4	2.1	1.9	2.7
	수출 없음	222	4.7	3.7	2.1	1.5	1.3	1.9

하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권리를 복합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을 복합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기

업이 51.4%,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복합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기업이 40.2%,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복합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기업이 40.4%로 나타났으며, 특허 및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복합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기업은 38.3%로 파악되었다.

▼ 표 3-29 | 권리를 복합적으로 보유하는 전략 활용 - 특허·실용신안권 & 상표권

(단위: 개, %, 점)

	계	활용 하지 않음	1	2	3	4	5	6	7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48.6	1.0	2.5	3.5	12.5	8.2	12.5	11.1	2.6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51.1	0.6	2.8	2.3	12.5	9.1	13.1	8.5	2.5
	의약품	81	37.0	0.0	2.5	4.9	19.8	6.2	16.0	13.6	3.2
	전기전자	180	42.8	2.2	2.8	5.0	10.6	11.1	13.3	12.2	2.9
	정보서비스	75	69.3	0.0	1.3	1.3	9.3	1.3	5.3	12.0	1.7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39.3	1.0	2.8	4.1	15.5	9.7	15.2	12.4	3.1
	수출 없음	222	60.8	0.9	2.3	2.7	8.6	6.3	9.0	9.5	2.0

▼ 표 3-30 | 권리를 복합적으로 보유하는 전략 활용 - 특허·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단위: 개, %, 점)

	계	활용 하지 않음	1	2	3	4	5	6	7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59.8	2.0	3.5	3.5	10.2	6.6	8.2	6.3	1.9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58.5	1.7	4.0	3.4	13.1	6.8	8.0	4.5	1.9
	의약품	81	63.0	4.9	2.5	2.5	8.6	6.2	8.6	3.7	1.6
	전기전자	180	50.6	1.7	4.4	4.4	9.4	8.9	10.6	10.0	2.4
	정보서비스	75	81.3	0.0	1.3	2.7	6.7	1.3	2.7	4.0	0.9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49.7	2.8	4.5	2.8	12.8	9.0	11.0	7.6	2.4
	수출 없음	222	73.0	0.9	2.3	4.5	6.8	3.6	4.5	4.5	1.2

▼ 표 3-31 | 권리를 복합적으로 보유하는 전략 활용 - 상표권 &amp; 디자인권

(단위: 개, %, 점)

	계	활용 하지 않음	1	2	3	4	5	6	7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59.6	2.9	2.9	3.7	10.9	7.4	7.4	5.1	1.8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55.7	2.8	1.1	4.0	13.1	10.2	8.0	5.1	2.0
	의약품	81	60.5	4.9	1.2	3.7	11.1	3.7	9.9	4.9	1.8
	전기전자	180	55.0	2.8	5.6	3.3	10.6	8.9	8.9	5.0	2.0
	정보서비스	75	78.7	1.3	2.7	4.0	6.7	1.3	0.0	5.3	.9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51.0	3.4	2.8	2.8	14.1	10.0	10.3	5.5	2.2
	수출 없음	222	70.7	2.3	3.2	5.0	6.8	4.1	3.6	4.5	1.2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표 3-32 | 권리를 복합적으로 보유하는 전략 활용 - 특허·실용신안권 &amp; 상표권 &amp; 디자인권

(단위: 개, %, 점)

	계	활용 하지 않음	1	2	3	4	5	6	7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61.7	2.5	2.5	3.3	10.4	6.6	7.2	5.7	1.8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59.1	1.7	3.4	4.0	14.2	4.5	6.8	6.3	1.8
	의약품	81	65.4	3.7	0.0	1.2	12.3	6.2	7.4	3.7	1.6
	전기전자	180	54.4	3.3	3.3	3.9	8.3	9.4	9.4	7.8	2.1
	정보서비스	75	81.3	1.3	1.3	2.7	4.0	5.3	2.7	1.3	0.8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53.4	3.1	2.8	3.4	12.4	9.7	8.6	6.6	2.1
	수출 없음	222	72.5	1.8	2.3	3.2	7.7	2.7	5.4	4.5	1.2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특허 및 실용신안권-상표권 조합을 많이 활용하는 산업 분야는 의약품 분야, 특허 및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조합을 많이 활용하는 산업 분야는 전기전자 분야, 특허 및 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조합을 많이 활용하는 산업 분야는 전기전자 분야로 나타났다. 복합적 권리를 활용하는 전략은 수출활동이 있는 기업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복합적 보유전략을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복합적 지식재산권 확보 필요성을 판단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시기로 '연구개발 기획단계'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44.6%), 29.3%는 주로 '연구개발 진행단계'에서, 16.4%는 '연구개발 완료단계'에서 포트폴리오 구축을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33 | 복합적 지식재산권 확보 필요성 판단, IP 포트폴리오 구축 설계 단계 - 1순위

(단위: 개, %)

	계	연구개발 기획 단계	연구개발 진행 단계	연구개발 완료 단계	후속연구 기획 단계	상품화 단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280	44.6	29.3	16.4	3.6	6.1	
산업분류	음식료품	92	51.1	25.0	16.3	2.2	5.4
	의약품	52	71.2	21.2	7.7	0.0	0.0
	전기전자	112	28.6	35.7	19.6	6.3	9.8
	정보서비스	24	37.5	33.3	20.8	4.2	4.2
수출활동	수출 있음	188	45.2	28.2	16.0	3.7	6.9
	수출 없음	92	43.5	31.5	17.4	3.3	4.3

\* 응답자 Base: 어떤 유형의 복합적 활용전략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280)

▼ 표 3-34 | 권리 복합적 활용 전략의 효과 판단

(단위: 개, 점)

	계	독점배타적 사용 상호보완	모방방지 분쟁대응 상호보완	피소대응 상호보완	홍보 마케팅 상호보완	기술이전 협상 상호보완	VC 등 자금조달 상호보완	
		전체	281	5.1	5.0	5.0	4.9	4.7
산업분류	음식료품	91	4.8	4.9	4.7	4.9	4.4	4.1
	의약품	52	4.9	4.9	4.9	4.6	4.7	4.1
	전기전자	114	5.2	5.1	5.1	4.9	4.7	4.6
	정보서비스	24	5.7	5.5	5.6	5.5	5.4	5.3
수출활동	수출 있음	189	5.1	5.1	5.0	4.8	4.6	4.3
	수출 없음	92	5.0	4.9	4.8	5.1	4.8	4.6

\* 응답자 Base: 어떤 유형의 복합적 활용전략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281)

권리의 복합적 보유전략 활용의 효과로 권리의 독점배타적 사용에서의 상호보완 효과를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5.1점/7점 척도), 경쟁업체의 모방방지 및 분쟁대응, 타 업체의 피소에 대한 대응시 상호보완 효과를 그 다음으로 꼽았고(5.0점), 홍보 및 마케팅 효과를 4.9점으로 평가하였다.

## 제5절

## 산업재산권 복합적 권리 활용의 특징

## I 연구 개요

OECD(2015), Lee 외(2020), Kang 외(2020) 등의 연구에서는 산업 분야별 권리 활용의 특징을 확인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 분야, 수출활동, 비즈니스 모델(거래유형) 등에 따라 기업의 복합적 활용전략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 II 데이터 및 주요 변수

기업의 복합적 활용전략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앞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하는 한편, 기업의 업력, 광고선전비 등 재무정보 파악을 위해 NICE평가정보의 기업 데이터, 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 활동 파악을 위해 특허청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복합적으로 권리의 확보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수준을 이용하였다. 전략의 활용도는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해당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값을 0으로 처리하였다.

기업이 속한 산업 분야, 비즈니스 모델(거래유형), 수출여부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산업 분야에 대한 더미변수를 사용하고 비즈니스 모델(거래유형)은 B to C 거래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변수로 이용하였다. 수출활동은 수출여부에 대한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이 외에 기업의 업력, 규모를 통제하였으며,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R&D 지출과 광고선전비 지출,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관련 변수 또한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 표 3-35 | 주요 변수

구분	변수	내용
복합적 보유전략 활용	복합적 보유전략 활용	하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권리의 복합적 보유전략의 활용수준 각 권리의 결합별로 복합적 활용전략 미활용시 0, 활용시 수준에 따라 1~7점
	산업 분야	기업이 속한 산업 분야에 대한 더미변수 음식료품, 의약품, 전기전자, 정보서비스에 대한 각각의 더미변수
기업특성	비즈니스 모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거래유형) 매출액 중 B to 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수출활동	기업의 수출활동 여부 최근 3년간 수출활동이 존재하는 경우 1, 아니면 0
	지식재산권 보유 규모(stock)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규모 종업원수 대비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통제변수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flow)	최근 3년간 기업의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출원 규모 종업원 수 대비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출원 건수
	연구개발비	최근 3년간 기업의 평균 R&D 비용을 로그변환
	광고선전비	최근 3년간 기업의 평균 광고선전비 지출을 로그변환
	종업원 규모	최근 3년간 기업이 보유한 평균 종업원 수를 로그변환
	업력	2019년 12월 기준 기업 업력

### III 분석모형

종속변수가 순차적으로  $J$ 개 존재하므로, 분석모형으로는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을 사용하였다.

$$y^* = \sum_{k=1}^K \beta_k x_k + \epsilon$$

위의 식에서  $y^*$ 는 관찰 불가능한 응답변수(response variable)이고, 응답자가 선택 가능한 응답( $y$ )이 순차적으로  $J$ 개 존재한다고 하면  $y^*$ 는 일정 범위 내에서  $j$ 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된다. 즉, 다음과 같은 식으로 범주화된 기준  $y^*$ 와 관찰 가능한 응답  $y$ 와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y &= 1, \text{ if } y^* \leq \mu_1 (=0) \\
&= 2, \text{ if } \mu_1 < y^* \leq \mu_2 \\
&= 3, \text{ if } \mu_2 < y^* \leq \mu_3 \\
&\vdots \\
&= J, \text{ if } \mu_{J-1} < y^*
\end{aligned}$$

여기에서  $\mu_1$ 에서  $\mu_{J-1}$ 은  $y^*$ 의 경계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총  $J$ 개의 관찰 가능한 응답들에 대해  $j$ 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들이 된다. 이때,  $y=j$ 를 선택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y = j, \text{ if } \mu_{j-1} < y^* \leq \mu_j$$

위의 식과 누적분포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확률값은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Pr(y=j) &= \Pr(\mu_{j-1} < y^* = \sum_{k=1}^K \beta_k x_k + \epsilon \leq \mu_j) \\
&= \Pr(\mu_{j-1} - \sum_{k=1}^K \beta_k x_k < \epsilon \leq \mu_j - \sum_{k=1}^K \beta_k x_k) \\
&= F(\mu_j - \sum_{k=1}^K \beta_k x_k) - F(\mu_{j-1} - \sum_{k=1}^K \beta_k x_k)
\end{aligned}$$

이를 축차적인(recursive) 방법에 의해  $y \leq j$ 인 경우에 대해 구하면 다음과 같은 누적확률분포함수를 사용한 식을 도출할 수 있다.

$$\Pr(y \leq j) = F(\mu_j - \sum_{k=1}^K \beta_k x_k)$$

위의 식을 누적로지스틱분포함수로 변환한 후 역함수를 취하면 최종적으로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의 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begin{aligned}
\Pr(y \leq j) &= F(\mu_j - \sum_{k=1}^K \beta_k x_k) \\
&= \frac{\exp(\mu_j - \sum_{k=1}^K \beta_k x_k)}{1 + \exp(\mu_j - \sum_{k=1}^K \beta_k x_k)}
\end{aligned}$$

$$\ln \left[ \frac{\Pr(y \leq j | x)}{1 - \Pr(y \leq j | x)} \right] = \mu_j - \sum_{k=1}^K \beta_k x_k$$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odds ratio로 정량화 할 수 있다. 이 경우, odds ratio는 다른 변수가 고정된 상태에서 특정 변수가 변화할 때의 한계효과가 된다.

## IV 분석결과

주요 변수에 대한 값의 누락이 있는 경우 listwise deletion 방식으로 제외하고 총 395개의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데이터셋은 산업 분야에 따라 음식료품 분야 39.7%, 의약품 분야 16.5%, 전기전자 분야 31.9%, 정보서비스 분야 11.9%로 구성되었으며, 수출활동에 따라 수출 활동이 있는 기업 60%, 수출활동이 없는 기업 40%로 구성되었다.

▼ 표 3-36 | 주요 변수 관련 기초통계량(n=395)

변수	평균	표준편차	Min	Max
B to C 비중	0.236	0.339	0.000	1.000
지식재산권 보유 규모(stock) (건/명)	1.072	1.605	0.013	17.400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flow) (건/명)	0.210	0.424	0.000	6.857
연구개발비(백만 원)	1,296.116	5,305.342	0.000	95,047.300
광고선전비(백만 원)	394.944	2038.094	0.000	27,667.000
종업원 규모(명)	97.700	314.899	1.000	4,775.000
업력(년)	15.747	13.488	1.000	90.000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다음 <표 3-37>과 같다.

▼ 표 3-37 | 변수 간 상관관계(n=395)

	1	2	3	4	5	6	7	8	9	10
1. 음식료품	1.000									
2. 의약품	-0.361***	1.000								
3. 전기전자	-0.556***	-0.304***	1.000							
4. B to C	0.332***	-0.193***	-0.257***	1.000						
5. 수출활동	0.030	0.084*	0.138***	-0.056	1.000					

	1	2	3	4	5	6	7	8	9	10
6. 지식재산권 보유 규모	0.117	0.011	-0.058	0.125**	0.036	1.000				
7.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	0.173***	-0.098*	-0.099*	0.168***	-0.122**	0.593***	1.000			
8. 연구개발비	-0.405***	0.241***	0.282***	-0.270***	0.268***	-0.135***	-0.252***	1.000		
9. 광고선전비	-0.041	0.351***	-0.173***	0.145***	0.308***	-0.104**	-0.148***	0.374***	1.000	
10. 종업원 규모	-0.186***	0.302***	0.026	-0.173***	0.305***	-0.392***	-0.429***	0.544***	0.608***	1.000
11. 업력	-0.093*	0.296***	-0.024	-0.025	0.278***	-0.149***	-0.211***	0.328***	0.418***	0.567***

\*  $p<0.1$ , \*\*  $p<0.05$ , \*\*\*  $p<0.01$  수준에서 유의미

▼ 표 3-38 | 주요 분석 결과(5):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

종속변수: 특허권-상표권 복합적 활용전략	Coef.	Std. Err.	P>z
음식료품	0.226	0.363	0.534
의약품	0.947**	0.421	0.024
전기전자	0.495	0.372	0.183
B to C	0.153	0.327	0.641
수출활동	0.529**	0.224	0.018
지식재산권 보유 규모	0.142	0.088	0.107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	-0.069	0.258	0.788
연구개발비	0.127**	0.063	0.044
광고선전비	0.060	0.064	0.351
종업원 규모	-0.203*	0.118	0.087
업력	-0.008	0.008	0.338
Number of obs	395		
Log likelihood	-634.8517		
LR chi2(11)	37.15***		

\*  $p<0.1$ , \*\*  $p<0.05$ , \*\*\*  $p<0.01$  수준에서 유의미

분석결과, 특허권 & 상표권의 복합적 활용전략은 의약품 분야에 속한 경우( $\beta=0.947$ , odds ratio: 2.578), 수출활동을 하는 경우( $\beta=0.529$ , odds ratio: 1.697)에 더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38, 표 3-39 참조). 해당 결과는 의약품 관련 특허권과 상표권이 상호보완적 효과를 갖는다고 파악한 사례 연구들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Jennewein et al., 2010; Statman and Tyebjee, 1981 등).

▼ 표 3-39 | 주요 분석 결과(5):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 - odds ratio

종속변수: 특허권-상표권 복합적 활용전략	odds Ratio	Std. Err.	P>z
음식료품	1.254	0.456	0.534
의약품	2.578**	1.084	0.024
전기전자	1.640	0.610	0.183
B to C	1.165	0.382	0.641
수출활동	1.697**	0.381	0.018
지식재산권 보유 규모	1.153	0.102	0.107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	0.933	0.241	0.788
연구개발비	1.135**	0.072	0.044
광고선전비	1.062	0.068	0.351
종업원 규모	0.817*	0.097	0.087
업력	0.992	0.008	0.338
Number of obs	395		
Log likelihood	-634.852		
LR chi2(11)	37.15***		

\*  $p < 0.1$ , \*\*  $p < 0.05$ , \*\*\*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

한편, 특허권 & 디자인권의 복합적 활용전략은 전기전자 분야에 속한 경우( $\beta=0.913$ , odds ratio: 2.491), 수출활동을 하는 경우( $\beta=0.781$ , odds ratio: 2.183)에 더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3-40, 표 3-41 참조), 상표권 & 디자인권의 복합적 활용전략은 전기전자 분야에 속한 경우( $\beta=0.747$ , odds ratio: 2.111), 수출활동을 하는 경우( $\beta=0.677$ , odds ratio: 1.967)에 더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42, 표 3-43 참조).

주요 분석결과를 산업 분야에 따른 권리 활용 특징과 더불어 내수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기업보다 수출기업에서 권리의 복합적 활용전략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표 3-40 | 주요 분석 결과(6):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

종속변수: 특허권-디자인권 복합적 활용전략	Coef.	Std. Err.	P>z
음식료품	0.447	0.402	0.266
의약품	0.502	0.469	0.284
전기전자	0.913**	0.411	0.027
B to C	0.434	0.347	0.210
수출활동	0.781***	0.241	0.001
지식재산권 보유 규모	0.122	0.077	0.114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	0.017	0.247	0.945
연구개발비	0.066	0.068	0.330
광고선전비	0.025	0.068	0.716
종업원 규모	-0.091	0.124	0.460
업력	-0.007	0.009	0.434
Number of obs		395	
Log likelihood		-565.820	
LR chi2(11)		36.02***	

\*  $p<0.1$ , \*\*  $p<0.05$ , \*\*\*  $p<0.01$  수준에서 유의미

▼ 표 3-41 | 주요 분석 결과(6):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 - odds ratio

종속변수: 특허권-디자인권 복합적 활용전략	odds Ratio	Std. Err.	P>z
음식료품	1.564	0.630	0.266
의약품	1.653	0.774	0.284
전기전자	2.491**	1.025	0.027
B to C	1.544	0.535	0.210
수출활동	2.183***	0.526	0.001
지식재산권 보유 규모	1.130	0.087	0.114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	1.017	0.251	0.945
연구개발비	1.068	0.072	0.330
광고선전비	1.025	0.070	0.716
종업원 규모	0.913	0.113	0.460
업력	0.993	0.009	0.434
Number of obs		395	
Log likelihood		-565.820	
LR chi2(11)		36.02***	

\*  $p<0.1$ , \*\*  $p<0.05$ , \*\*\*  $p<0.01$  수준에서 유의미

▼ 표 3-42 | 주요 분석 결과(7):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

종속변수: 상표권-디자인권 복합적 활용전략	Coef.	Std. Err.	P>z
음식료품	0.626	0.391	0.109
의약품	0.564	0.455	0.215
전기전자	0.747*	0.400	0.062
B to C	0.362	0.345	0.295
수출활동	0.677***	0.236	0.004
지식재산권 보유 규모	0.121*	0.072	0.092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	-0.011	0.242	0.963
연구개발비	0.058	0.067	0.387
광고선전비	0.063	0.068	0.352
종업원 규모	-0.066	0.125	0.596
업력	-0.007	0.009	0.473
Number of obs		395	
Log likelihood		-580.597	
LR chi2(11)		30.83***	

\*  $p < 0.1$ , \*\*  $p < 0.05$ , \*\*\*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

▼ 표 3-43 | 주요 분석 결과(7):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 - odds ratio

종속변수: 상표권-디자인권 복합적 활용전략	odds Ratio	Std. Err.	P>z
음식료품	1.870	0.730	0.109
의약품	1.758	0.800	0.215
전기전자	2.111*	0.844	0.062
B to C	1.436	0.496	0.295
수출활동	1.967***	0.464	0.004
지식재산권 보유 규모	1.129*	0.081	0.092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	0.989	0.239	0.963
연구개발비	1.060	0.071	0.387
광고선전비	1.065	0.072	0.352
종업원 규모	0.936	0.117	0.596
업력	0.993	0.009	0.473
Number of obs		395	
Log likelihood		-580.597	
LR chi2(11)		30.83***	

\*  $p < 0.1$ , \*\*  $p < 0.05$ , \*\*\*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

## 제6절

## 산업재산권 복합적 권리 활용의 효과

## I 연구 개요

제3절에서는 기업의 복합적 권리보유와 기업의 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실제로 하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다양한 권리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의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지는 못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한 추가 분석에서는 기업의 복합적 활용전략이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 데이터 및 주요 변수

본 분석에서는 기업의 복합적 권리 활용 전략을 주요 설명변수로 하였는데, 하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특허권 & 상표권, 특허권 & 디자인권, 상표권 & 디자인권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의 사용수준을 각각 0점부터 7점까지의 척도로 파악한 값을 합하여 생성하였다.

이외에 지식재산권 등 확보를 위한 투입으로 무형자산성 지출비용인 연구개발비와 광고선전비를 사용하였다.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규모와 관련해서는 특허 건수(Bloom and Van Reenen, 2002; Cheng et al., 2010; Coombs and Bierly, 2006; Helmers and Rogers, 2011; Kim et al., 2012; Lerner and Zhu, 2007을 강경남 외 2019에서 재인용),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OHIM, 2015), 종업원 1인당 지식재산권의 보유 규모(OHIM, 2015) 등이 사용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종업원 수 대비 지식재산권 보유 규모(stock)와 최근 3년간의 출원 건수(종업원 수 대비 출원 건수)를 사용하였다.

기업의 규모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종업원 수, 기업의 업력을 변수로 포함하였으며, 기업이 속한 산업 분야에 대한 더미변수와 수출활동 여부에 따른 더미변수, 비즈니스 모형(거래유형) 관련 변수를 추가하였다.

▼ 표 3-44 | 주요 변수

구분	변수	내용
기업성과	지식재산 관련 매출 규모	기업의 경제적 성과 기업의 매출 규모(최근 3년간 평균 매출 규모) 중 지식재산권 관련 비중을 도출하고 로그변환하여 사용
	외부자금조달	외부로부터 자금조달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은행대출, VC 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면 1, 아니면 0
복합적 보유전략 활용수준	복합적 보유전략 활용수준	하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권리의 복합적 보유전략의 활용수준 권리 유형 결합별(특허권 & 상표권, 특허권 & 디자인권, 상표권 & 디자인권)로 복합적 활용전략 미활용시 0, 활용시 수준에 따라 1~7점으로 측정하여 합산. 0점~21점
관련 투입	연구개발비	최근 3년간 기업의 평균 R&D 비용을 로그변환
	광고선전비	최근 3년간 기업의 평균 광고선전비 지출을 로그변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보유 규모(stock)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규모 종업원 수 대비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flow)	최근 3년간 기업의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출원 규모 종업원 수 대비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출원 건수
기업특성	종업원 규모	최근 3년간 기업이 보유한 평균 종업원 수를 로그변환
	업력	2019년 12월 기준 기업 업력
	산업 분야	기업이 속한 산업 분야에 대한 더미변수 음식료품, 의약품, 전기전자, 정보서비스에 대한 각각의 더미변수
	비즈니스 모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거래유형) 매출액 중 B to 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수출활동	기업의 수출활동 여부 최근 3년간 수출활동이 존재하는 경우 1, 아니면 0

기업의 성과로는 기업의 생존(Helmers and Rogers, 2011; Farre-Mensa et al., 2017), 기업의 시장가치(Greenhalgh and Rogers, 2007; Griliches, 1985; Hall et al, 2000, Pakes, 1985), 자금유치 여부(Haeussler et al., 2009; Mann and Sager, 2007; Sohn and Kang, 2015), 매출 규모(Comanor and Scherer, 1969; Bloom and Reenen, 2002) 등이 사용되어 왔다(강경남 외, 2019). 기업 매출 규모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규모보다 많은 성과가 측정되는 오류가 발생하는데,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의 매출액 중 지식재산권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여 해당 오류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지식재산권 관련 매출 규모를 로그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유치에 성공했는지 여부에 대한 변수를 기업 성과 변수의 하나로 사용하였다.

### III 분석모형

OHIM(2015) 및 강경남 외(2019)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로그선형변환을 한 함수를 사용한 바 있다. 종속변수로 지식재산 관련 매출 규모를 사용한 분석에서는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준로그함수를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종속변수에 log를 취하고, 독립변수는 선형을 사용하는 로그-선형모형의 경우,

$$\log(Y_{it}) = \alpha + \beta X_{it} + \epsilon_{it}$$

로 표현될 수 있고, 이때  $\beta$ 값은 독립변수의 절대적인 1 단위변화에 대한 종속변수의 상대적 변화(X 변수, 1 단위변화에 대한 Y 변수,  $\beta\%$  변화)를 의미하게 된다(강경남 외, 2019).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 성공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 종속변수가 0 또는 1의 값과 같은 이항(binary) 변수형태를 가지게 되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게 되므로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였다.

### IV 분석결과

분석에 사용한 최종 395개의 데이터셋의 주요 변수 관련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표 3-45>와 같다. 지식재산 관련 매출 규모는 평균 92.30억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은행대출, VC 투자유치 등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은 21.5%로 파악되었다. 복합적 보유전략 활용수준은 21점 척도에 평균 6.747점으로 나타났으며, 기업들은 연구개발비로 12.96억 원, 광고선전비로 평균 3.94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1인당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보유 규모는 평균 1.072건/명, 출원은 종업원 1인당 0.21건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기업의 평균 종업원 규모는 97.7명, 기업업력은 2019년 12월 기준 15.747년으로 나타났다.

▼ 표 3-45 | 주요 변수 관련 기초통계량(n=395)

변수	평균	표준편차	Min	Max
지식재산 관련 매출 규모(백만 원)	9,230.135	36,708.080	0.000	586,624.200
외부자금조달	0.215	0.411	0.000	1.000
복합적 보유전략 활용 수준	6.747	7.088	0.000	21.000
연구개발비(백만 원)	1,296.116	5,305.342	0.000	95,047.300
광고선전비(백만 원)	394.944	2038.094	0.000	27,667.000
지식재산권 보유 규모(stock)(건/명)	1.072	1.605	0.013	17.400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flow)(건/명)	0.210	0.424	0.000	6.857
종업원 규모(명)	97.700	314.899	1.000	4,775.000
업력(년)	15.747	13.488	1.000	90.000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다음 <표 3-46>과 같다.

▼ 표 3-46 | 변수 간 상관관계<sup>50)</sup>(n=395)

변수	1	2	3	4	5	6	7	8
1 ln(지식재산 관련 매출 규모)	1.000							
2 외부자금유치	-0.082	1.000						
3 복합적 보유전략 활용수준	0.121**	0.116**	1.000					
4 ln(연구개발비)	0.324***	-0.003	0.085*	1.000				
5 ln(광고선전비)	0.425***	-0.019	0.078	0.374***	1.000			
6 종업원 당 지식재산권 보유 규모	-0.134***	0.019	0.177***	-0.135***	-0.104*	1.000		
7 종업원 당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	-0.240***	-0.016	0.071	-0.252***	-0.148***	0.593***	1.000	
8 ln(종업원 규모)	0.540***	-0.100	-0.019	0.544***	0.608***	-0.392***	-0.429***	1.000
9 업력(년)	0.404***	-0.076	-0.001	0.328***	0.418***	-0.149***	-0.211***	0.567***
10 B to C	-0.074	0.029	0.028	-0.270***	0.145***	0.125**	0.168***	-0.173***
11 음식료품	0.010	-0.123**	-0.019	-0.405***	-0.041	0.117**	0.173***	-0.186***
12 의약품	0.141***	-0.083	0.052	0.241***	0.351***	0.011	-0.098*	0.302***
13 전기전자	0.119**	0.104**	0.077	0.282***	-0.173***	-0.058	-0.099*	0.026
14 수출활동	0.318***	0.025	0.212***	0.268***	0.308***	0.036	-0.122**	0.305***

\*  $p < 0.1$ , \*\*  $p < 0.05$ , \*\*\*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

50) 더미변수로 사용한 산업분류 변수 간 상관관계 표시는 생략.

▼ 표 3-47 | 주요 분석 결과(8): 준로그함수 분석

종속변수: ln (지식재산 관련 매출 규모)	Coef.	Std. Err.	P>t
복합적 보유전략 활용수준	0.032*	0.017	0.067
ln(연구개발비)	0.008	0.075	0.918
ln(광고선전비)	0.229***	0.080	0.005
종업원 당 지식재산권 보유 규모	0.096	0.097	0.327
종업원 당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	-0.548	0.363	0.132
ln(종업원 규모)	0.818***	0.150	0.000
업력(년)	0.023**	0.011	0.037
B to C	-0.150	0.407	0.712
음식료품	2.510***	0.417	0.000
의약품	1.594***	0.504	0.002
전기전자	2.634***	0.437	0.000
수출활동	0.079	0.281	0.778
Number of obs		395	
F(12, 382)		22.78	
R-squared		0.417	
Adj R-squared		0.399	

\*  $p<0.1$ , \*\*  $p<0.05$ , \*\*\*  $p<0.01$  수준에서 유의미

▼ 표 3-48 | 주요 분석 결과(9): 프로빗 분석

종속변수: 외부자금조달	Coef.	Std. Err.	P>z
복합적 보유전략 활용수준	0.023**	0.011	0.030
ln(연구개발비)	-0.008	0.047	0.869
ln(광고선전비)	0.074	0.051	0.147
종업원 당 지식재산권 보유 규모	0.013	0.057	0.816
종업원 당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	-0.505	0.426	0.236
ln(종업원 규모)	-0.238**	0.106	0.024
업력(년)	0.000	0.007	0.992
B to C	0.070	0.247	0.776
음식료품	-0.844***	0.249	0.001
의약품	-0.841***	0.314	0.007
전기전자	-0.346	0.254	0.172
수출활동	0.200	0.177	0.260
Number of obs		395	
Log likelihood		-190.277	
LR chi2(12)		30.84***	

\*  $p<0.1$ , \*\*  $p<0.05$ , \*\*\*  $p<0.01$  수준에서 유의미

▼ 표 3-49 | 주요 분석 결과(9): 프로빗 분석 - 한계효과

종속변수: 외부자금조달	dy/dx	Std. Err.	P>z
복합적 보유전략 활용수준	0.006**	0.003	0.028
ln(연구개발비)	-0.002	0.013	0.869
ln(광고선전비)	0.020	0.014	0.144
종업원 당 지식재산권 보유 규모	0.004	0.015	0.816
종업원 당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	-0.136	0.115	0.234
ln(종업원 규모)	-0.064**	0.028	0.022
업력(년)	0.000	0.002	0.992
B to C	0.019	0.067	0.776
음식료품	-0.228***	0.065	0.000
의약품	-0.227***	0.083	0.006
전기전자	-0.094	0.068	0.170
수출활동	0.054	0.048	0.259

\*  $p < 0.1$ , \*\*  $p < 0.05$ , \*\*\*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

분석결과, <표 3-47>과 같이 복합적 권리를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수준과 기업의 매출 규모 간에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0.032$ ,  $p < 0.10$ ), <표 3-48>과 <표 3-49>에서 보여주듯이 외부자금조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beta=0.023$ , 한계효과: 0.006).

지식재산권과 기업의 매출성과 간의 분석은 산업재산권 보유의 효과 관련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Farre-Mensa 외(2017)의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의 출원 특허가 등록되면 향후 매출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Farre-Mensa et al., 2017), OHIM(2015)의 연구에서는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종업원 1인당 매출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적 지식재산권 보유를 위한 ‘전략 활용’의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의 매출성과가 높게 분석되어, 지식재산 경영활동이 기업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부자금조달과 관련하여 특허의 효과가 연구된 바 있는데, Hsu and Ziedonis(2008)는 투자자가 기업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특허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고, Farre-Mensa 외(2017)의 연구에서 출원 특허가 등록되는 경우, VC 투자를 유치할 확률을 높이고, VC 외에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8.6%p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arre-Mensa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복합적 지식재산권 보유를 위한 ‘전략 활용’의 수준이 높을수록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VC 투자유치, 은행 담보대출 등 외부자금조달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전략적 지식재산 경영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EUIPO(2019)의 실증연구와 앞 절의 분석에서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가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는데, 다양한 권리가 하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위해 확보되었는지

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권리의 복합적 활용’의 효과라고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에 비해 본 분석은 기업의 무형자산을 다양한 지식재산권 유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전략의 활용수준을 측정하고, 해당 경영활동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권리의 복합적 활용’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의 성과를 ‘매출성과’, ‘외부자금조달’ 등 다각도로 측정하여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이 기업의 매출성과와 더불어 IP금융시장에서의 시그널링에 긍정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권리의 복합적 활용’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기업의 관련 투입(또는 지출), 지식재산권의 보유 현황, 기업특성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관련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으나, 이들 변수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투입과 그 결과물로서의 지식재산권 사이에, 보유권리의 복합적 보유전략의 활용과 기업이 속한 산업 분야와 수출활동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은 다중공선성을 야기한다.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측정하여 다중공선성이 크지 않음을 확인하고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변수들 간의 복잡한 상관관계로 인해 하나의 방정식을 통한 분석보다 연립방정식을 통한 구조적 분석이 적합할 것이라 판단된다. 보다 다각적인 분석을 위한 모형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제7절

### ●● 소결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가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한편, 기업의 무형자산을 다양한 지식재산권 유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전략의 활용수준을 측정하고, 해당 경영활동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권리의 복합적 활용’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산업재산권의 복합적 보유가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단일 권리 유형만 보유한 경우 기업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두 가지 권리 유형을 보유한 경우와 세 가지 권리 유형을 보유한 경우, 기업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두 가지 권리 유형을 보유한 경우 기업 성장에 미치는 한계효과 0.193, 세 가지 권리 유형을 보유한 경우 기업 성장에 미치는 한계효과 0.270으로 분석되어 전체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보다 높은 한계효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권리의 복합적 보유가 기업 성장에 미치는 한계효과가 중소기업에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재산권의 복합적 보유가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결과라 할 것이다.

산업재산권 활동 현황 및 복합적 권리 활용에 대한 분석 결과, 특허권 & 상표권의 복합적 활용전략은 의약품 분야에 속한 경우에 더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의약품 관련 특허권과 상표권이 상호보완적 효과를 갖는다고 파악한 사례 연구들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Jennewein et al., 2010; Statman and Tyebjee, 1981 등). 특허권 & 디자인권, 상표권 & 디자인권의 복합적 활용전략은 전기전자 분야에 속한 경우 더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합적 활용의 유형이 수출기업에서 더 많이 확인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산업 분야에 따른 권리 활용 특징과 더불어 내수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기업보다 수출기업에서 권리의 복합적 활용 전략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재산권의 복합적 활용이라는 경영활동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복합적 산업재산권 보유를 위한 ‘전략 활용’의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의 매출성과가 높고, 다른 한편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VC 투자유치, 은행 담보대출 등 외부자금조달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전략적 지식재산 경영활동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혁신·경제 - 기업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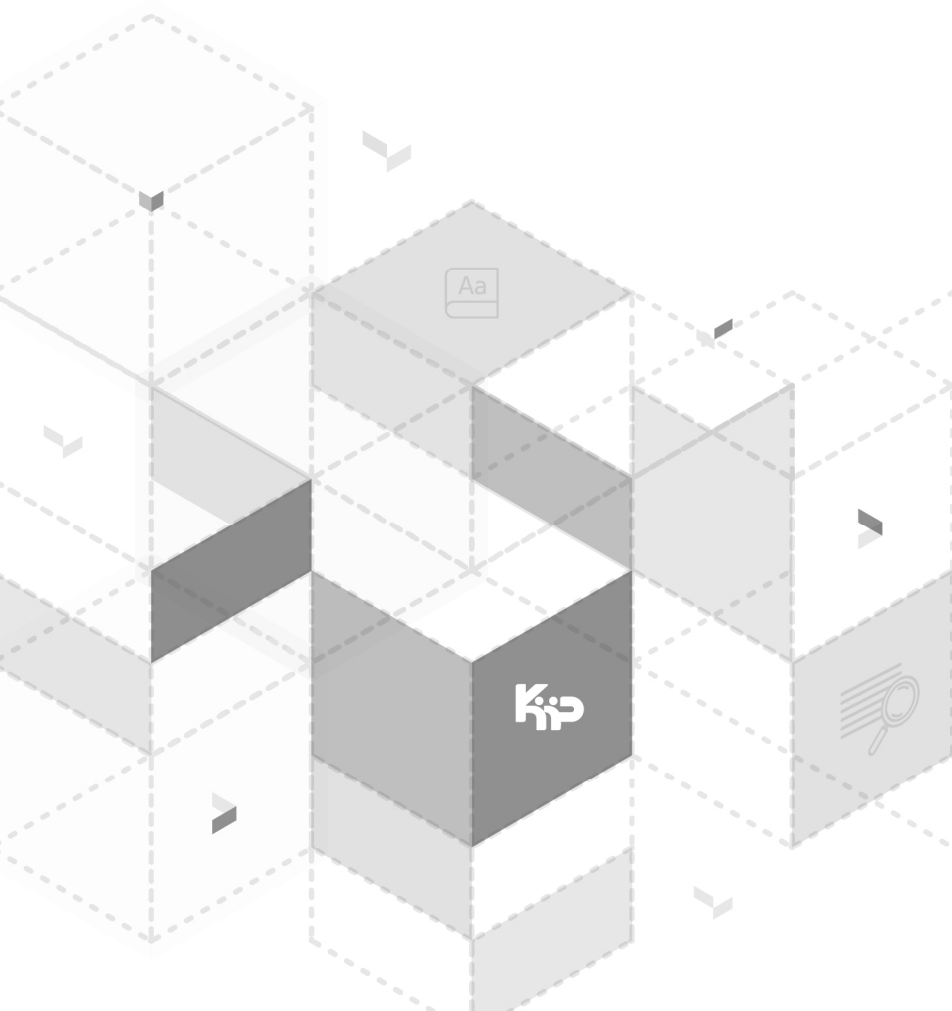
지식재산 경영과 기업 성과: 복합적 권리 활용을 중심으로

## 제4장

# 결론

제1절 주요 결과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 제1절

## 주요 결과요약 및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지식재산권, 특히 산업재산권의 복합적 보유 현황과 그 효과, 하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의 복합적 활용 현황 및 특징과 효과를 파악하고 관련 사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 사례조사를 실시하였고, 세 가지 연구모형에 따른 계량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면인터뷰 결과, 기업에서는 특허권을 바탕으로 상표권, 디자인권 등 이종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 및 자사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 상승, 통일적 마케팅, 외부 자금 유치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계량분석의 경우, 먼저 지식재산권 권리 유형 보유의 복합성과 기업 성장 간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단일 권리 유형을 보유한 경우는 기업의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반면, 두 가지 권리 유형을 보유한 경우와 세 가지 권리 유형을 보유한 경우,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두 가지 권리 유형을 보유한 경우 기업 성장에 미치는 한계효과 0.151, 세 가지 권리 유형을 보유한 경우 기업 성장에 미치는 한계효과 0.209로 분석되어 권리의 복합적 보유가 기업 성장과 양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계량분석은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전략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특허권 & 상표권의 복합적 활용전략은 의약품 분야에 속하는 경우, 특허권 & 디자인권의 복합적 활용전략과 상표권 & 디자인권의 복합적 활용전략은 전기전자 분야에 속한 경우 더 많이 활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권리결합 유형 전반에서 수출활동이 있는 기업이 내수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기업보다 복합적 권리 활용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계량분석은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전략과 기업의 성과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복합적 권리를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수준과 기업의 매출 규모 간에 양의 관계를 가지며, 외부자금조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업이 혁신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자산 중 무형자산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재 필요불가결한 전략이다. 혁신이 가져오는 기술 자산과 시장자산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리 확보 여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효과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의 융복합화와 함께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혁신 성과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일 유형의 산업재산권의 확보 보다 다양한 권리 유형의 확보가 더욱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런 환경변화 하에서, 권리의 복합적 활용의 효과에 대한 정량분석 결과가 제시하는 방향성은 '다양한 권리 활용'을 통한 '기업의 지속적 성장'이다.

## 제2절

●●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본 연구는 기업의 무형자산을 다양한 지식재산권 유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활동이 기업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성적, 정량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의미가 있다. 복합적 권리보유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분석들이 일부 진행되었으나 하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다양한 권리 유형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활동을 특정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함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의 복합적 활용 활동을 특정하여 그 효과를 확인한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산업재산권 보유와 기업 성장의 경우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분산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산업재산권의 복합적 활용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데이터의 한계로 패널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향후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 패널 분석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모형들은 변수들 간의 복잡한 상관관계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의 방정식을 통한 분석보다 연립방정식을 통한 구조적 분석이 보다 적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각적인 분석을 위한 추가 모형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재산권의 복합적 활용 특징과 그 효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 제조업 내 세부 산업 분야별로 특징과 효과가 서로 다를 수 있어,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추가연구를 통해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량분석을 통해 권리의 복합적 활용과 기업 성과 간의 양의 상관성은 확인하였으나, 여전히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해석적 결과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례분석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에 따른 효과를 구체화하는 한편, 산업 분야별 성공사례를 구축한다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 중 산업재산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영업비밀,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 보다 포괄적 의미의 지식재산권 활용과 그 효과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데이터 경제사회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면서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권리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의 축적과 분석, 사례연구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강경남, “기업 지식재산권 보유의 효과분석”, 『한국혁신학회지』 14(4), 2019.
- 강경남·고유흠·이성훈,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과 성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 손승우, 『지식재산권법의 이해』(제3판), 동방문화사, 2019.
- 송영식·이상정·김병일, 『지적재산법』(제4정판), 세창출판사, 2015.
- 윤선희, 『지식재산권법』(제16정판), 세창출판사, 2015.
- 윤선희, 『특허법』(제6판), 법문사, 2019.
-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9.
- 정상조(편저),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박영사, 2020.
- 정상조·박준석, 『지식재산권법』(제4판), 홍문사, 2019.
- 조영선, 『특허법 2.0』(제6판), 박영사, 2018.
- 박강호, “스마트폰”, 장기전망 시리즈 10, 대신증권, 2019. 5.
- 박준석, “빅 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차원의 보호가능성”, 『산업재산권』 제58호, 2019.
- 박태일, “전체 표장에 대한 디자인권 및 이를 구성하는 개별 도형들에 대한 상표권과 전체 표장의 사용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사이의 충돌에 관한 연구 - 대상판결: 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IT와 법 연구』 제8집,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2014. 2.
- 임민철, “삼성, 폴더블폰 브랜드 따로 만드나...‘갤럭시’ 뺀 상표 등록 신청”, UPI뉴스, 2020. 2. 11.
- 채영호, “판례해설 - 동업에서 탈퇴한 자를 상대로 유사한 제호의 경쟁잡지를 발행하지 말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법률신문, 2014. 4. 18.
-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2016.
-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 716-723.
- Arundel, A., van de Paal, G. and Soete, L. (1995) Innovation strategies of Europe's largest industrial firms. Results of the PACE survey for information sources, public research, protection of innovations and government programmes. Maastricht: MERIT.
- Athreye, S., and Fassio, C. (2019) Why Do Innovators Not Apply for Trademarks? the Role of Information Asymmetries and Collaborative Innovation. Papers in Innovation Studies No. 2019/2. Lund University.
- Blind, K., Edler, J., Frietsch, R. and Schmoch, U. (2006) Motives to patent: Empirical evidence from Germany. Research Policy, 35, 5, 655-672.
- Bloom, N., and Reenen, J. V. (2002) Patents, Real Options and Firm Performance, Economic Journal, 112, 97-114.

- Cohen, W.M., Nelson, R.R. and Walsh, J.P. (2000) Protecting their Intellectual Assets: Appropriability Conditions and Why U.S. Manufacturing Firms Patent (or not). Cambridge, MA: NBER Working Paper Series.
- de Rassenfosse, G. How SMEs exploit their intellectual property assets: evidence from survey data. *Small Bus Econ* 39, 437-452 (2012) <https://doi.org/10.1007/s11187-010-9313-4>.
- Dernis H., Dosso M., Hervás F., Millot V., Squicciarini M. and Vezzani A. (2015) World Corporate Top R&D Investors: Innovation and IP bundles. A JRC and OECD common report.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Duguet, E. and Kabla, I. (1998) Appropriation strategy and the motivations to use the patent system: An econometric analysis at the firm level in French manufacturing. *Annals of Economics and Statistics*, 289-327.
- EUIPO (2019), High-growth firm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UIPO·EPO.
- Farre-Mensa, J., Hegde, D., and Ljungqvist, A. (2017) What is a Patent Worth? Evidence from the U.S. Patent Lottery, NBER Working Paper No. 23268.
- Guzman, J. and Stern, S. (2015) Where Is Silicon Valley? *Science* 347(6222), 606-609.
- Hall, B., Helmers, C., Rogers, M., and Sena, V. (2012) The importance (or not) of patents to UK firms, Working paper.
- Haeussler, C., Harhoff, D. and Muller, E. (2012) To Be Financed or Not: The Role of Patents for Venture Capital Financing. Working Paper. Mannheim: ZEW-Centre for European Economic Research.
- Helmers C. and Schautschick P. (2013)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undles by Firms in the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Hoenen, S., Kolympiris, C., Schoenmakers, W. and Kalaitzandonakes, N. (2014) The Diminishing Signaling Value of Patents between Early Rounds of Venture Capital Financing. *Research Policy* 43(6), 956-989.
- Holgerson, M. (2011)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 and Innovation: Causes and Consequences for Firms and Nations. Licentiate Thesis.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 Hsu, D. H., and Ziedonis, R. H. (2008) Patents as Quality Signals for Entrepreneurial Ventures. *Academy of Management Proceedings* 2008 (1), 1-6.
- Ilse Jurrien, Samsung PIFF smartphone display voor nieuwe Galaxy modellen, LETSGO DIGITAL, 2020. 3. 12.
- Kang, R., Lee, K., Jung, T. (2020) Not Patents but Trademarks-based Path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Latecomers: Evidence from the Korean Data, *The Singapore Economic Review* (<https://doi.org/10.1142/S0217590820450022>).
- Kang, R., Jung, T., Lee, K. (2020)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Korean economic development: the roles of patents, utility models and trademarks, *Area Development and Policy* 5 (2), 189-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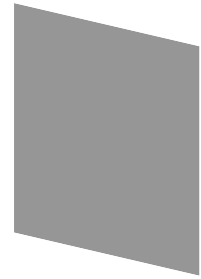
- Llerena P. and Millot V. (2020) Are two better than one? Modelling the complementarity between patents and trademarks across industries, *Industry and Innovation*, 27(1-2), 52-79.
- Millot, V. (2009) Trademarks as an Indicator of Product and Marketing Innovation.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Working Paper No. 2009/6. OECD publishing.
- Onishi, K, and Yamauchi I. (2018)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Software and Accessibility to Venture Capitalists, Discussion papers 18036,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RIETI).
- Thumm, N. (2004) Motives for patenting biotechnological inventions: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 Switzer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Policy and Management*, 4(3), 275-285.
- Somaya, D. and Graham, S. (2006) Vermeers and Rembrandts in the same Attic: Complementarity between Copyrights and Trade marks Leveraging Strategies in Software,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TIGER Working Paper.
- Somaya, D. and McDaniel, C. A. (2012) Tribunal specialization and institutional targeting in patent enforcement. *Organization Science* 23(3), 869-887.
- WICI (2016) WICI intangibles reporting framework, World Intellectual Capital/Assets Initiative.

- 대법원 2000.12.26.선고, 98도2743 판결.
- 대법원 2001.4.27.선고, 98후2900 판결.
- 대법원 2004.9.23.선고, 2002다60610 판결.
- 대법원 2006.3.9.선고, 2004다49693, 49709판결.
- 대법원 2007.2.26.자, 2006마805 결정.
- 대법원 2008.7.10.선고, 2008도3435 판결.
- 대법원 2013.3.14.선고, 2010도15512 판결.
- 대법원 2014.8.28.선고, 2013도10713 판결.
- 대법원 2015.10.15.선고, 2014다216522 판결.
- 대법원 2015.12.10.선고, 2015도11550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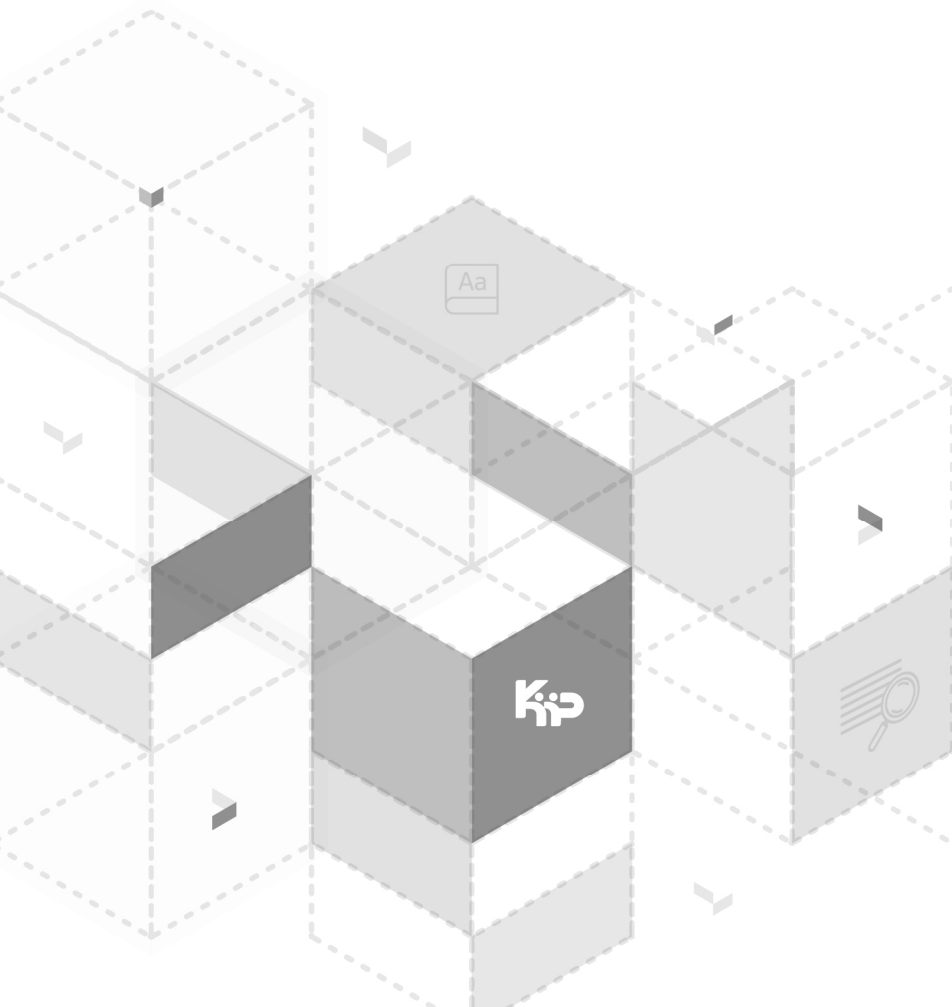
혁신·경제 - 기업경영

지식재산 경영과 기업 성과: 복합적 권리 활용을 중심으로



# 부 록

## 1. 기업 지식재산 경영활동 조사





## [부록 1] 기업 지식재산 경영활동 조사

## 기업 지식재산 경영활동 조사

## 〈조사개요〉

본 조사는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경영활동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IP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높은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관련 부분은 IP 담당 임원 혹은 실무 담당자께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호됩니다.

업체명		기업 설립일자	년	월
응답자 성명		부서 / 직위		
응답자 연락처		응답자 E-mail		

## 회사 일반사항(2017년~2019년) 및 지식재산 조직/인력

## 1. 근로자 수, 매출액, R&amp;D 인력 및 비용 등 (해당란에 숫자 기입, 2017년~2019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수 (임시·일용직 제외)	2017	명	총 매출액	2017	백만 원	
	2018	명		2018	백만 원	
	2019	명		2019	백만 원	
연구개발(R&D)인력 ※	2017	명	자산총계	2017	백만 원	
	2018	명		2018	백만 원	
	2019	명		2019	백만 원	
연구개발(R&D)비**	2017	백만 원	수출 활동 유무	2017	① 있음	② 없음
	2018	백만 원		2018	① 있음	② 없음
	2019	백만 원		2019	① 있음	② 없음

※ 연구개발 인력은 연구소 및 연구전담 부서 등에 소속되어 과학기술, 산업기술 등의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과 생산기술 인력을 의미하며, 디자인, 상표 관련 연구개발 인력 포함. 임시직이나 관리직 종사자들은 제외함.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총액

2. 귀사의 제품·서비스 매출액 중 각 비즈니스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 (합하여 100이 되도록 작성)

B to C	자사명의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최종소비자(개인)에 판매 (기업 대 소비자 간 거래)	%
B to B	자사명의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관련 회사에 판매 (기업 간 거래)	%
기타	기타(상세기재 )	%

- ※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의 산물을 총칭하는 용어로서,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영업비밀, 반도체 배치설계 등) 및 권리화되지 않은 아이디어, 노하우** 등을 모두 포함함
- ※ **특허권**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등록이 허용된 권리를 의미함
- ※ **실용신안권**이란 기존의 물품을 개량하여 실용성과 유용성을 높인 고안을 출원하여 부여받는 권리를 의미함
- ※ **디자인권**이란 산업적 물품 또는 제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 형상의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통하여 허용된 권리를 의미하며 기술과는 무관하게 물품의 미적외관을 시각적인 관점에서 파악되는 것을 의미함
- ※ **상표권**이란 생산자 또는 상인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를 의미함
- ※ **신지식재산권**이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의 2)으로,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범주로는 보호가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설계, 인터넷, 캐릭터산업 등과 관련된 권리를 의미함
-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함

※ **지식재산 담당조직 또는 인력**은 지식재산 전략 기획,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유지 관리, 지식재산권 동향 조사, 침해 관련 대응 및 소송업무, 지식재산권 판매 또는 라이선스 협상 및 유통, 기술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을 의미함

3.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 지식재산권 규모 (2019년 12월 기준 누적치, 숫자 기입)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영업비밀
권리보유 건수※(A+B)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국내 권리보유 건수(A)	건	건	건	건	건	건	건
해외 권리보유 건수(B)	건	건	건	건	건	건	건

- ※ 현재(응답시점)를 기준으로 등록되어(취소, 무효, 포기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권리가 살아있는 총 건수. 외부로 매각하여 소유권이 다른 주체로 이전된 권리 제외. 매입하여 소유권을 갖고 있는 권리 포함
- ※※ 반도체 배치설계, 식물신품종 등 신지식재산권 보유 건수

4. 귀사 지식재산 담당조직의 보유 여부 (2019년 12월 기준, 해당란에 V표시)

담당조직 보유			담당조직 없음	
독립 전담부서	법무조직/연구개발 조직 내	기타 조직 내	담당조직은 없으나, 담당인력 보유	담당조직 없으며, 담당인력도 없음
①	②	③	④	⑤

5. 귀사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각 권리에 대한 담당조직의 운영 방식 (해당란에 V표시)

담당조직 보유		담당조직 없음	
통합 운영 (동일조직에서 통합적으로 지식재산권 관리)	분산 운영 (서로 다른 조직에서 권리 유형별 별도 관리)	지식재산 담당인력이 통합적으로 관리	권리 유형별 다른 담당인력이 개별적으로 관리
①	②	③	④

6. 귀사 지식재산 담당인력 규모 (2019년 12월 기준)

지식재산 업무만 전담하는 인력	명
다른 업무와 지식재산 업무를 병행하는 인력	명

### ■ 지난 3년간(2017년~2019년) 귀사의 지식재산 경영전략

7. 귀사가 연구개발, 혁신 성과물(발명, SW, 디자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략 (해당란에 V표시)

	활용 하지 않음	활용도						
		매우 낮음	←	중간	→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영업비밀로 유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경쟁기업에 앞서 시장 선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복잡한 설계방식을 채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기타(상세 기재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확보 선호도 (해당란에 V표시)

	활용 하지 않음	지식재산 확보 선호수준						
		매우 낮음	←	중간	→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특허 및 실용신안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상표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디자인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저작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신지식재산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영업비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주요 요인 (해당란에 V표시)

	주요 이유						
	전혀 아니다	← 중간 →					매우 그렇다
(1) 권리의 독점적 사용을 위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상대방의 모방/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적극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침해소송 피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소극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기술판매, 라이선싱을 위한 권리확보를 위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홍보, 마케팅 등에 활용을 위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자금조달에 활용하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기타(상세 기재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보다 다각적인 혁신 성과 보호를 위하여 하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서로 다른 유형의 권리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 (해당란에 V표시)

	활용 하지 않음	활용도						
		매우 낮음	← 중간 →				매우 높음	
(1) 특허·실용신안권 & 상표권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특허·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상표권 & 디자인권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특허·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산업재산권※ & 저작권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산업재산권※ & 신지식재산권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산업재산권※ & 영업비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기타(상세 기재 )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산업재산권: 특허 및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중 하나 혹은 다수

☞ 어떤 유형의 복합적 활용전략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문14로 이동

11. 귀사가 연구개발, 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해 복합적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확보 필요성을 판단하고 IP 포트폴리오(권리들의 묶음) 구축을 설계하는 단계

☞ 주로 설계가 이루어지는 단계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괄호내 기재 바랍니다. ( )-( )-( )

연구개발 기획 단계	연구개발 진행 단계	연구개발 완료 단계	후속연구 기획 단계	상품화 단계
①	②	③	④	⑤

## 12. 하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서로 다른 유형의 권리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의 효과 판단

	전략의 효과 수준						
	매우 낮음	← 중간 →			매우 높음		
(1) 권리의 독점/배타적 사용에 상호보완적 효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상대방의 모방/분쟁에 대응에 상호보완적 효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침해소송 피소 등에 대응에 상호보완적 효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기술판매, 라이선싱 협상에 상호보완적 효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홍보, 마케팅 등에 상호보완적(시장에서 인지도 상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VC 투자유치 등 자금 조달시 상호보완적(기업 역량 부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기타(상세 기재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13. 귀사의 복합적 권리 활용 사례에 대한 소개 (하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서로 다른 유형의 권리를 복합적으로 활용한 사례)

(예) 바이엘사의 '아스피린'의 경우, 관련 기술에 대해서 특허·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한편, 상표권을 통해 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기술적 우위에 대한 차별적 이미지를 확보

## 13-1. 복합적 활용 사례 관련, 인터뷰가 진행되는 경우(방식: 자문회의 또는 서면)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 )      ① 있음      ② 없음      문15로 이동

## 14. 권리의 복합적 활용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해당란에 V표시)

	주요 이유						
	전혀 아니다	← 중간 →			매우 그렇다		
(1) 지식재산권 출원/유지에 고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적시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하나의 지식재산권만으로도 충분히 권리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기술주기가 짧아서 권리화하여 보호할 실익이 없어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지식재산권을 주장하거나 침해소송을 당했을 때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IP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권리확보를 추진할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권리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이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기타(상세 기재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지난 3년간(2017년~2019년) 귀사의 지식재산 활용 성과**

15. 귀사의 제품·서비스 판매에 따른 매출액을 100이라고 했을 때, 귀사가 보유한 지식재산이 적용된 제품·서비스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매출기여도) (지난 3년간 평균, 숫자 기입)

	기업의 제품·서비스 매출 중 지식재산권 적용된 제품·서비스의 매출비중
지식재산(전체)	%
특허 및 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
저작권	%
신지식재산권	%
영업비밀	%

16.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활용한 R&D 수행 및 외부자금 유치여부 (해당란에 모두 V표시)

(1)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R&D 수주 여부	정부 R&D		민간 R&D		활용 경험 없음
	①		②		③
(2)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투자자금 유치	정책자금 조달 *정부용자·보증	VC 등 투자유치 *엔젤·VC 투자	대출 *은행, 비은행 대출	기타 *(상세기재 )	활용 경험 없음
	①	②	③	④	⑤

※ 정책자금: 민간금융기관보다 낮은 이자율의 융자 및 이를 위한 보증서발급 지원 등의 정부자금 지원  
 ※ VC: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및 엔젤·엔젤클럽으로부터의 개인투자  
 ※ 대출: 은행(시중은행, 지역은행, 특수은행 등)과 비은행(저축은행, 신탁, 새마을금고, 농협 등)으로부터의 대출

## ■ 향후 지식재산 경영

17. 이전 3년(2017년~2019년) 대비 향후 복합적 권리 활용 전략의 중요도 (해당란에 V표시)

중요도 매우 감소	중요도 감소	중요도 약간 감소	동일	중요도 약간 증가	중요도 증가	중요도 매우 증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 제도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주십시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표 1 | 평균 근로자 수

(단위: 개, %, 명)

	계	10인 미만	10인~ 30인 미만	30인~ 100인 미만	100인~ 300인 미만	300인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26.4	26.6	25.8	14.5	6.8	98.1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37.5	22.7	25.6	10.2	4.0	88.3
	의약품	81	14.8	17.3	24.7	25.9	17.3	169.7
	전기전자	180	15.0	35.6	28.9	14.4	6.1	94.4
	정보서비스	75	40.0	24.0	20.0	12.0	4.0	53.0
기업규모	대기업	8	12.5	0.0	25.0	25.0	37.5	762.8
	중견기업	31	0.0	3.2	3.2	22.6	71.0	619.8
	중소기업	473	28.3	28.5	27.3	13.7	2.1	52.7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45.6	14.4	24.4	10.0	5.6	123.7
	B to B	398	21.4	29.1	26.9	15.6	7.0	93.7
	기타	24	37.5	29.2	12.5	12.5	8.3	75.5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17.9	23.4	28.3	19.3	11.0	146.1
	수출 없음	222	37.4	30.6	22.5	8.1	1.4	35.5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부표 2 | 평균 연구개발인력 수

(단위: 개, %, 명)

	계	5인 미만	5인~ 10인 미만	10인~ 30인 미만	30인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496	48.8	25.4	16.9	8.9	14.7	
산업분류	음식료품	169	72.8	20.7	3.0	3.6	5.0
	의약품	79	26.6	22.8	31.6	19.0	39.0
	전기전자	177	31.1	36.2	22.0	10.7	15.7
	정보서비스	71	60.6	12.7	21.1	5.6	8.1
기업규모	대기업	7	42.9	14.3	14.3	28.6	27.9
	중견기업	29	10.3	10.3	24.1	55.2	103.0
	중소기업	460	51.3	26.5	16.5	5.7	8.9
비즈니스 대상	B to C	85	68.2	21.2	5.9	4.7	5.9
	B to B	389	43.7	26.2	19.8	10.3	17.1
	기타	22	63.6	27.3	9.1	0.0	4.5
수출활동	수출 있음	282	37.2	27.0	21.3	14.5	21.8
	수출 없음	214	64.0	23.4	11.2	1.4	5.3

\* 응답자 Base: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496)

## ▼ 부표 3 | 평균 연구개발비

(단위: 개, %, 백만 원)

	계	1억 원 미만	1억 원~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01	23.0	41.3	35.7	1,376.7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42.0	44.9	13.1	397.1
	의약품	78	16.7	20.5	62.8	3,567.1
	전기전자	177	5.1	44.1	50.8	1,727.5
	정보서비스	70	27.1	48.6	24.3	511.8
기업규모	대기업	8	25.0	12.5	62.5	4,757.0
	중견기업	30	16.7	13.3	70.0	8,498.6
	중소기업	463	23.3	43.6	33.0	856.8
비즈니스 대상	B to C	87	43.7	40.2	16.1	549.1
	B to B	390	19.2	40.3	40.5	1,583.2
	기타	24	8.3	62.5	29.2	1,020.9
수출활동	수출 있음	286	16.8	34.6	48.6	2,096.9
	수출 없음	215	31.2	50.2	18.6	418.5

\* 응답자 Base: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501)

## ▼ 부표 4 | 평균 총 매출액

(단위: 개, %, 백만 원)

	계	10억 원 미만	10억 원~50억 원 미만	50억 원~100억 원 미만	100억 원~200억 원 미만	200억 원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08	24.0	26.6	10.4	12.8	26.2	33,547.7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30.7	26.7	10.8	13.1	18.8	27,064.0
	의약품	80	20.0	16.3	7.5	7.5	48.8	56,228.6
	전기전자	180	11.7	31.1	11.7	16.7	28.9	37,197.4
	정보서비스	72	43.1	26.4	9.7	8.3	12.5	15,071.3
기업규모	대기업	8	12.5	12.5	0.0	0.0	75.0	249,688.3
	중견기업	31	0.0	3.2	0.0	0.0	96.8	272,268.4
	중소기업	469	25.8	28.4	11.3	13.9	20.7	14,081.9
비즈니스 대상	B to C	89	41.6	20.2	5.6	13.5	19.1	32,706.0
	B to B	395	18.7	28.4	11.9	13.2	27.8	34,355.8
	기타	24	45.8	20.8	4.2	4.2	25.0	23,369.4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15.5	24.1	10.3	12.1	37.9	50,801.0
	수출 없음	218	35.3	29.8	10.6	13.8	10.6	10,596.0

\* 응답자 Base: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508)

▼ 부표 5 | 평균 자산총계

(단위: 개, %, 백만 원)

	계	10억 원 미만	10억 원~50억 원 미만	50억 원 ~100억 원 미만	100억 원 ~200억 원 미만	200억 원 ~300억 원 미만	300억 원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00	15.8	27.2	15.6	10.8	5.2	25.4	50,672.6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20.5	34.1	18.2	7.4	4.5	15.3	32,072.0
	의약품	78	5.1	12.8	10.3	9.0	7.7	55.1	129,404.9
	전기전자	179	8.9	25.7	18.4	15.1	5.6	26.3	45,319.6
	정보서비스	67	34.3	29.9	7.5	10.4	3.0	14.9	22,176.6
기업규모	대기업	8	0.0	0.0	0.0	0.0	25.0	75.0	439,579.5
	중견기업	31	0.0	3.2	0.0	0.0	0.0	96.8	384,478.2
	중소기업	461	17.1	29.3	16.9	11.7	5.2	19.7	21,476.9
비즈니스 대상	B to C	89	30.3	23.6	14.6	12.4	1.1	18.0	47,796.2
	B to B	387	12.4	27.6	16.0	10.9	6.2	26.9	52,533.9
	기타	24	16.7	33.3	12.5	4.2	4.2	29.2	31,326.3
수출활동	수출 있음	289	9.0	22.5	15.6	10.7	6.2	36.0	77,945.0
	수출 없음	211	25.1	33.6	15.6	10.9	3.8	10.9	13,318.4

\* 응답자 Base: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500)

▼ 부표 6 | 2017~2019년 3년 내 수출 활동 유무

(단위: 개, %)

	계	수출 없음	수출 있음	
		비율	비율	
전체	512	43.4	56.6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40.3	59.7
	의약품	81	34.6	65.4
	전기전자	180	31.1	68.9
	정보서비스	75	89.3	10.7
기업규모	대기업	8	37.5	62.5
	중견기업	31	6.5	93.5
	중소기업	473	45.9	54.1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48.9	51.1
	B to B	398	42.0	58.0
	기타	24	45.8	54.2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0.0	100.0
	수출 없음	222	100.0	0.0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 부표 7 | 매출액 중 각 비즈니스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 - B to C

(단위: 개, %)

	계	0%	25% 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06	53.6	18.8	6.5	7.9	13.2	21.4	
산업분류	음식료품	175	21.7	29.1	12.6	17.1	19.4	36.1
	의약품	80	75.0	15.0	0.0	2.5	7.5	9.3
	전기전자	178	73.6	15.7	2.8	3.4	4.5	8.9
	정보서비스	73	57.5	5.5	8.2	2.7	26.0	29.9
기업규모	대기업	7	71.4	14.3	0.0	0.0	14.3	13.0
	중견기업	30	70.0	16.7	0.0	0.0	13.3	13.5
	중소기업	469	52.2	19.0	7.0	8.5	13.2	22.1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0.0	0.0	0.0	25.6	74.4	86.0
	B to B	398	67.8	23.9	8.3	0.0	0.0	5.6
	기타	18	5.6	0.0	0.0	94.4	0.0	47.2
수출활동	수출 있음	286	51.4	23.4	5.9	8.4	10.8	19.8
	수출 없음	220	56.4	12.7	7.3	7.3	16.4	23.5

\* 응답자 Base: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506)

## ▼ 부표 8 | 매출액 중 각 비즈니스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 - B to B

(단위: 개, %)

	계	0%	25% 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06	7.7	6.1	5.3	10.9	70.0	76.9	
산업분류	음식료품	175	9.1	10.9	10.3	19.4	50.3	63.0
	의약품	80	1.3	6.3	1.3	5.0	86.3	89.4
	전기전자	178	5.1	0.0	3.4	5.1	86.5	89.0
	정보서비스	73	17.8	9.6	2.7	11.0	58.9	66.9
기업규모	대기업	7	0.0	14.3	0.0	0.0	85.7	87.0
	중견기업	30	3.3	10.0	0.0	0.0	86.7	86.4
	중소기업	469	8.1	5.8	5.8	11.7	68.7	76.1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41.1	32.2	26.7	0.0	0.0	13.4
	B to B	398	0.3	0.5	0.8	9.5	88.9	92.6
	기타	18	5.6	0.0	0.0	94.4	0.0	47.2
수출활동	수출 있음	286	4.2	6.3	6.3	10.1	73.1	79.4
	수출 없음	220	12.3	5.9	4.1	11.8	65.9	73.6

\* 응답자 Base: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506)

▼ 부표 9 | 매출액 중 각 비즈니스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 - 기타

(단위: 개, %)

	계	0%	25% 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06	95.8	1.8	0.4	1.2	0.8	1.7	
산업분류	음식료품	175	97.7	1.1	0.0	0.6	0.6	0.9
	의약품	80	92.5	5.0	1.3	1.3	0.0	1.3
	전기전자	178	95.5	1.7	0.6	1.7	0.6	2.1
	정보서비스	73	95.9	0.0	0.0	1.4	2.7	3.2
기업규모	대기업	7	100.0	0.0	0.0	0.0	0.0	0.0
	중견기업	30	96.7	3.3	0.0	0.0	0.0	0.1
	중소기업	469	95.7	1.7	0.4	1.3	0.9	1.8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97.8	1.1	0.0	1.1	0.0	0.6
	B to B	398	95.5	2.0	0.5	1.3	0.8	1.8
	기타	18	94.4	0.0	0.0	0.0	5.6	5.6
수출활동	수출 있음	286	96.9	1.7	0.7	0.7	0.0	0.8
	수출 없음	220	94.5	1.8	0.0	1.8	1.8	2.9

\* 응답자 Base: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506)

▼ 부표 10 | 특허권 보유 건수 합계

(단위: 개, %, 건)

	계	0건	5건 미만	5건~10건 미만	10건~20건 미만	20건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9.2	31.8	21.9	15.2	21.9	19.5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14.2	46.0	23.3	8.5	8.0	7.6
	의약품	81	9.9	17.3	17.3	18.5	37.0	36.0
	전기전자	180	1.1	20.6	22.2	22.8	33.3	28.5
	정보서비스	75	16.0	41.3	22.7	9.3	10.7	8.1
기업규모	대기업	8	25.0	25.0	12.5	0.0	37.5	41.5
	중견기업	31	6.5	6.5	12.9	12.9	61.3	79.8
	중소기업	473	9.1	33.6	22.6	15.6	19.0	15.2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13.3	50.0	17.8	11.1	7.8	8.3
	B to B	398	8.0	28.1	22.1	15.6	26.1	22.7
	기타	24	12.5	25.0	33.3	25.0	4.2	9.0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3.8	26.9	22.4	14.5	32.4	29.2
	수출 없음	222	16.2	38.3	21.2	16.2	8.1	6.7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 부표 11 | 특허권 국내 보유 건수

(단위: 개, %, 건)

	계	0건	5건 미만	5건~ 10건 미만	10건~ 20건 미만	20건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9.2	33.4	22.7	16.0	18.8	15.1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14.2	46.6	23.3	8.0	8.0	6.8
	의약품	81	9.9	22.2	19.8	21.0	27.2	20.3
	전기전자	180	1.1	22.2	22.2	25.6	28.9	24.0
	정보서비스	75	16.0	41.3	25.3	6.7	10.7	7.5
기업규모	대기업	8	25.0	25.0	12.5	12.5	25.0	26.5
	중견기업	31	6.5	6.5	16.1	12.9	58.1	62.9
	중소기업	473	9.1	35.3	23.3	16.3	16.1	11.7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13.3	50.0	18.9	11.1	6.7	7.4
	B to B	398	8.0	29.9	22.9	16.8	22.4	17.3
	기타	24	12.5	29.2	33.3	20.8	4.2	7.3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3.8	29.0	22.4	16.9	27.9	21.9
	수출 없음	222	16.2	39.2	23.0	14.9	6.8	6.2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 부표 12 | 특허권 해외 보유 건수

(단위: 개, %, 건)

	계	0건	5건 미만	5건~ 10건 미만	10건~ 20건 미만	20건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74.2	11.9	4.5	4.7	4.7	4.4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90.3	5.1	1.7	1.7	1.1	0.8
	의약품	81	53.1	17.3	2.5	9.9	17.3	15.7
	전기전자	180	62.8	17.2	9.4	6.1	4.4	4.5
	정보서비스	75	86.7	9.3	1.3	2.7	0.0	0.6
기업규모	대기업	8	62.5	12.5	0.0	0.0	25.0	15.0
	중견기업	31	45.2	16.1	6.5	16.1	16.1	16.9
	중소기업	473	76.3	11.6	4.4	4.0	3.6	3.4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91.1	3.3	2.2	2.2	1.1	0.9
	B to B	398	70.4	13.6	5.3	5.0	5.8	5.4
	기타	24	75.0	16.7	0.0	8.3	0.0	1.7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61.4	16.2	7.2	7.6	7.6	7.4
	수출 없음	222	91.0	6.3	0.9	0.9	0.9	0.5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부표 13 | 실용신안권 보유 건수 합계

(단위: 개, %, 건)

	계	0건	5건 미만	5건~ 10건 미만	10건~ 20건 미만	20건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85.2	11.5	1.6	1.2	0.6	0.8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91.5	5.1	2.3	0.6	0.6	1.2
	의약품	81	84.0	12.3	1.2	0.0	2.5	0.9
	전기전자	180	73.9	21.7	1.7	2.8	0.0	0.8
	정보서비스	75	98.7	1.3	0.0	0.0	0.0	0.0
기업규모	대기업	8	87.5	0.0	0.0	12.5	0.0	1.8
	중견기업	31	71.0	19.4	6.5	3.2	0.0	1.1
	중소기업	473	86.0	11.2	1.3	0.8	0.6	0.8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90.0	8.9	0.0	1.1	0.0	0.3
	B to B	398	84.4	12.1	1.8	1.3	0.5	0.6
	기타	24	79.2	12.5	4.2	0.0	4.2	6.8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80.0	14.8	2.4	1.7	1.0	1.3
	수출 없음	222	91.9	7.2	0.5	0.5	0.0	0.2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부표 14 | 실용신안권 국내 보유 건수

(단위: 개, %, 건)

	계	0건	5건 미만	5건~ 10건 미만	10건~ 20건 미만	20건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85.9	11.1	1.8	0.8	0.4	0.7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91.5	5.7	2.3	0.0	0.6	1.1
	의약품	81	85.2	12.3	1.2	0.0	1.2	0.5
	전기전자	180	75.6	20.0	2.2	2.2	0.0	0.7
	정보서비스	75	98.7	1.3	0.0	0.0	0.0	0.0
기업규모	대기업	8	87.5	0.0	12.5	0.0	0.0	0.8
	중견기업	31	74.2	16.1	6.5	3.2	0.0	1.0
	중소기업	473	86.7	11.0	1.3	0.6	0.4	0.7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90.0	8.9	1.1	0.0	0.0	0.2
	B to B	398	85.2	11.8	1.8	1.0	0.3	0.5
	기타	24	83.3	8.3	4.2	0.0	4.2	6.8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81.0	14.5	2.8	1.0	0.7	1.1
	수출 없음	222	92.3	6.8	0.5	0.5	0.0	0.2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 부표 15 | 실용신안권 해외 보유 건수

(단위: 개, %, 건)

	계	0건	5건 미만	5건~ 10건 미만	10건~ 20건 미만	20건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97.7	1.6	0.6	0.0	0.2	0.1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98.9	0.0	1.1	0.0	0.0	0.1
	의약품	81	95.1	3.7	0.0	0.0	1.2	0.4
	전기전자	180	96.7	2.8	0.6	0.0	0.0	0.1
	정보서비스	75	100.0	0.0	0.0	0.0	0.0	0.0
기업규모	대기업	8	87.5	0.0	12.5	0.0	0.0	1.0
	중견기업	31	93.5	6.5	0.0	0.0	0.0	0.1
	중소기업	473	98.1	1.3	0.4	0.0	0.2	0.1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98.9	0.0	1.1	0.0	0.0	0.1
	B to B	398	97.5	1.8	0.5	0.0	0.3	0.1
	기타	24	95.8	4.2	0.0	0.0	0.0	0.0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96.2	2.4	1.0	0.0	0.3	0.2
	수출 없음	222	99.5	0.5	0.0	0.0	0.0	0.0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 부표 16 | 상표권 보유 건수 합계

(단위: 개, %, 건)

	계	0건	5건 미만	5건~ 10건 미만	10건~ 20건 미만	20건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26.2	35.7	15.0	7.2	15.8	25.6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13.1	35.8	24.4	12.5	14.2	32.6
	의약품	81	22.2	19.8	4.9	4.9	48.1	76.1
	전기전자	180	39.4	40.0	11.1	3.9	5.6	4.1
	정보서비스	75	29.3	42.7	13.3	5.3	9.3	6.0
기업규모	대기업	8	12.5	25.0	25.0	25.0	12.5	346.0
	중견기업	31	22.6	6.5	6.5	6.5	58.1	136.6
	중소기업	473	26.6	37.8	15.4	7.0	13.1	12.9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8.9	42.2	20.0	6.7	22.2	61.0
	B to B	398	30.4	34.2	13.3	7.3	14.8	17.3
	기타	24	20.8	37.5	25.0	8.3	8.3	29.9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21.0	31.7	15.9	8.6	22.8	40.8
	수출 없음	222	32.9	41.0	14.0	5.4	6.8	5.7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부표 17 | 상표권 국내 보유 건수

(단위: 개, %, 건)

	계	0건	5건 미만	5건~ 10건 미만	10건~ 20건 미만	20건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26.8	36.9	15.2	7.0	14.1	21.0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13.6	37.5	23.9	11.4	13.6	26.1
	의약품	81	24.7	18.5	8.6	2.5	45.7	63.9
	전기전자	180	39.4	41.7	11.1	5.6	2.2	3.1
	정보서비스	75	29.3	44.0	12.0	5.3	9.3	5.6
기업규모	대기업	8	12.5	37.5	37.5	0.0	12.5	269.6
	중견기업	31	22.6	6.5	9.7	9.7	51.6	114.0
	중소기업	473	27.3	38.9	15.2	7.0	11.6	10.7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8.9	45.6	17.8	5.6	22.2	49.7
	B to B	398	31.2	34.7	14.3	7.3	12.6	14.2
	기타	24	20.8	41.7	20.8	8.3	8.3	26.2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22.1	33.4	16.6	8.3	19.7	32.8
	수출 없음	222	32.9	41.4	13.5	5.4	6.8	5.5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부표 18 | 상표권 해외 보유 건수

(단위: 개, %, 건)

	계	0건	5건 미만	5건~ 10건 미만	10건~ 20건 미만	20건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84.2	6.3	2.9	2.3	4.3	4.6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80.7	10.8	2.3	1.7	4.5	6.5
	의약품	81	70.4	3.7	7.4	4.9	13.6	12.2
	전기전자	180	91.1	3.3	1.7	2.2	1.7	1.1
	정보서비스	75	90.7	5.3	2.7	1.3	0.0	0.5
기업규모	대기업	8	62.5	0.0	12.5	12.5	12.5	76.4
	중견기업	31	67.7	3.2	6.5	6.5	16.1	22.5
	중소기업	473	85.6	6.6	2.5	1.9	3.4	2.2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77.8	11.1	3.3	1.1	6.7	11.3
	B to B	398	85.7	4.8	3.0	2.8	3.8	3.2
	기타	24	83.3	12.5	0.0	0.0	4.2	3.7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75.2	9.3	4.5	3.4	7.6	8.0
	수출 없음	222	95.9	2.3	0.9	0.9	0.0	0.2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 부표 19 | 디자인권 보유 건수 합계

(단위: 개, %, 건)

	계	0건	5건 미만	5건~ 10건 미만	10건~ 20건 미만	20건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64.3	23.4	5.5	3.7	3.1	3.1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60.2	26.7	5.7	4.0	3.4	4.9
	의약품	81	74.1	16.0	2.5	3.7	3.7	2.0
	전기전자	180	56.1	28.9	7.8	3.9	3.3	2.8
	정보서비스	75	82.7	10.7	2.7	2.7	1.3	1.0
기업규모	대기업	8	75.0	0.0	12.5	0.0	12.5	59.6
	중견기업	31	67.7	6.5	9.7	3.2	12.9	5.4
	중소기업	473	63.8	24.9	5.1	3.8	2.3	2.0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60.0	24.4	6.7	3.3	5.6	8.0
	B to B	398	65.1	23.6	5.0	3.8	2.5	2.0
	기타	24	66.7	16.7	8.3	4.2	4.2	2.8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53.4	27.2	7.9	6.2	5.2	5.0
	수출 없음	222	78.4	18.5	2.3	0.5	0.5	0.7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 부표 20 | 디자인권 국내 보유 건수

(단위: 개, %, 건)

	계	0건	5건 미만	5건~ 10건 미만	10건~ 20건 미만	20건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64.3	23.8	6.3	3.1	2.5	2.8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60.2	27.3	6.3	3.4	2.8	4.2
	의약품	81	74.1	17.3	1.2	6.2	1.2	1.7
	전기전자	180	56.1	28.9	8.9	2.8	3.3	2.7
	정보서비스	75	82.7	10.7	5.3	0.0	1.3	0.9
기업규모	대기업	8	75.0	0.0	12.5	0.0	12.5	50.5
	중견기업	31	67.7	6.5	12.9	3.2	9.7	4.4
	중소기업	473	63.8	25.4	5.7	3.2	1.9	1.9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60.0	25.6	8.9	1.1	4.4	6.7
	B to B	398	65.1	23.9	5.5	3.5	2.0	1.9
	기타	24	66.7	16.7	8.3	4.2	4.2	2.5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53.4	27.9	9.0	5.5	4.1	4.4
	수출 없음	222	78.4	18.5	2.7	0.0	0.5	0.7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부표 21 | 디자인권 해외 보유 건수

(단위: 개, %, 건)

	계	0건	5건 미만	5건~ 10건 미만	10건~ 20건 미만	20건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96.3	2.5	0.6	0.2	0.4	0.3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96.0	1.7	1.1	0.0	1.1	0.7
	의약품	81	95.1	3.7	0.0	1.2	0.0	0.3
	전기전자	180	96.7	3.3	0.0	0.0	0.0	0.1
	정보서비스	75	97.3	1.3	1.3	0.0	0.0	0.1
기업규모	대기업	8	87.5	0.0	0.0	0.0	12.5	9.1
	중견기업	31	93.5	3.2	0.0	0.0	3.2	1.0
	중소기업	473	96.6	2.5	0.6	0.2	0.0	0.1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93.3	2.2	2.2	0.0	2.2	1.3
	B to B	398	97.0	2.8	0.0	0.3	0.0	0.1
	기타	24	95.8	0.0	4.2	0.0	0.0	0.3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94.1	3.8	1.0	0.3	0.7	0.6
	수출 없음	222	99.1	0.9	0.0	0.0	0.0	0.0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부표 22 | 저작권 보유 건수 합계

(단위: 개, %, 건)

	계	0건	5건 미만	5건~ 10건 미만	10건~ 20건 미만	20건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91.4	4.7	1.0	1.6	1.4	41.2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94.9	4.5	0.6	0.0	0.0	0.1
	의약품	81	95.1	2.5	0.0	1.2	1.2	0.9
	전기전자	180	87.8	6.1	2.2	2.8	1.1	1.0
	정보서비스	75	88.0	4.0	0.0	2.7	5.3	277.3
기업규모	대기업	8	100.0	0.0	0.0	0.0	0.0	0.0
	중견기업	31	80.6	3.2	0.0	9.7	6.5	3.5
	중소기업	473	92.0	4.9	1.1	1.1	1.1	44.3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93.3	6.7	0.0	0.0	0.0	0.1
	B to B	398	91.2	3.8	1.3	2.0	1.8	52.9
	기타	24	87.5	12.5	0.0	0.0	0.0	0.2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92.4	3.8	0.7	2.1	1.0	0.8
	수출 없음	222	90.1	5.9	1.4	0.9	1.8	93.9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 부표 23 | 저작권 국내 보유 건수

(단위: 개, %, 건)

	계	0건	5건 미만	5건~ 10건 미만	10건~ 20건 미만	20건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91.8	4.3	1.0	1.6	1.4	41.1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95.5	4.0	0.6	0.0	0.0	0.1
	의약품	81	96.3	1.2	0.0	1.2	1.2	0.9
	전기전자	180	87.8	6.1	2.2	2.8	1.1	1.0
	정보서비스	75	88.0	4.0	0.0	2.7	5.3	277.3
기업규모	대기업	8	100.0	0.0	0.0	0.0	0.0	0.0
	중견기업	31	80.6	3.2	0.0	9.7	6.5	3.5
	중소기업	473	92.4	4.4	1.1	1.1	1.1	44.3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93.3	6.7	0.0	0.0	0.0	0.1
	B to B	398	91.7	3.3	1.3	2.0	1.8	52.9
	기타	24	87.5	12.5	0.0	0.0	0.0	0.2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93.1	3.1	0.7	2.1	1.0	0.8
	수출 없음	222	90.1	5.9	1.4	0.9	1.8	93.9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 부표 24 | 저작권 해외 보유 건수

(단위: 개, %, 건)

	계	0건	5건 미만	5건~ 10건 미만	10건~ 20건 미만	20건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99.6	0.4	0.0	0.0	0.0	0.0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99.4	0.6	0.0	0.0	0.0	0.0
	의약품	81	98.8	1.2	0.0	0.0	0.0	0.0
	전기전자	180	100.0	0.0	0.0	0.0	0.0	0.0
	정보서비스	75	100.0	0.0	0.0	0.0	0.0	0.0
기업규모	대기업	8	100.0	0.0	0.0	0.0	0.0	0.0
	중견기업	31	100.0	0.0	0.0	0.0	0.0	0.0
	중소기업	473	99.6	0.4	0.0	0.0	0.0	0.0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100.0	0.0	0.0	0.0	0.0	0.0
	B to B	398	99.5	0.5	0.0	0.0	0.0	0.0
	기타	24	100.0	0.0	0.0	0.0	0.0	0.0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99.3	0.7	0.0	0.0	0.0	0.0
	수출 없음	222	100.0	0.0	0.0	0.0	0.0	0.0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부표 25 | 신지식재산권 보유 건수 합계

(단위: 개, %, 건)

	계	0건	5건 미만	5건~ 10건 미만	10건~ 20건 미만	20건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99.0	0.4	0.2	0.2	0.2	0.2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99.4	0.6	0.0	0.0	0.0	0.0
	의약품	81	100.0	0.0	0.0	0.0	0.0	0.0
	전기전자	180	99.4	0.6	0.0	0.0	0.0	0.0
	정보서비스	75	96.0	0.0	1.3	1.3	1.3	1.1
기업규모	대기업	8	100.0	0.0	0.0	0.0	0.0	0.0
	중견기업	31	100.0	0.0	0.0	0.0	0.0	0.0
	중소기업	473	98.9	0.4	0.2	0.2	0.2	0.2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96.7	1.1	1.1	0.0	1.1	0.8
	B to B	398	99.5	0.3	0.0	0.3	0.0	0.0
	기타	24	100.0	0.0	0.0	0.0	0.0	0.0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99.7	0.3	0.0	0.0	0.0	0.0
	수출 없음	222	98.2	0.5	0.5	0.5	0.5	0.4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부표 26 | 신지식재산권 국내 보유 건수

(단위: 개, %, 건)

	계	0건	5건 미만	5건~ 10건 미만	10건~ 20건 미만	20건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99.0	0.4	0.2	0.2	0.2	0.2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99.4	0.6	0.0	0.0	0.0	0.0
	의약품	81	100.0	0.0	0.0	0.0	0.0	0.0
	전기전자	180	99.4	0.6	0.0	0.0	0.0	0.0
	정보서비스	75	96.0	0.0	1.3	1.3	1.3	1.1
기업규모	대기업	8	100.0	0.0	0.0	0.0	0.0	0.0
	중견기업	31	100.0	0.0	0.0	0.0	0.0	0.0
	중소기업	473	98.9	0.4	0.2	0.2	0.2	0.2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96.7	1.1	1.1	0.0	1.1	0.8
	B to B	398	99.5	0.3	0.0	0.3	0.0	0.0
	기타	24	100.0	0.0	0.0	0.0	0.0	0.0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99.7	0.3	0.0	0.0	0.0	0.0
	수출 없음	222	98.2	0.5	0.5	0.5	0.5	0.4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 부표 27 | 신지식재산권 해외 보유 건수

(단위: 개, %, 건)

	계	0건	5건 미만	5건~ 10건 미만	10건~ 20건 미만	20건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100.0	0.0	0.0	0.0	0.0	0.0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100.0	0.0	0.0	0.0	0.0
	의약품	81	100.0	0.0	0.0	0.0	0.0
	전기전자	180	100.0	0.0	0.0	0.0	0.0
	정보서비스	75	100.0	0.0	0.0	0.0	0.0
기업규모	대기업	8	100.0	0.0	0.0	0.0	0.0
	중견기업	31	100.0	0.0	0.0	0.0	0.0
	중소기업	473	100.0	0.0	0.0	0.0	0.0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100.0	0.0	0.0	0.0	0.0
	B to B	398	100.0	0.0	0.0	0.0	0.0
	기타	24	100.0	0.0	0.0	0.0	0.0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100.0	0.0	0.0	0.0	0.0
	수출 없음	222	100.0	0.0	0.0	0.0	0.0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 부표 28 | 영업비밀 보유 건수 합계

(단위: 개, %, 건)

	계	0건	5건 미만	5건~ 10건 미만	10건~ 20건 미만	20건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97.9	1.4	0.2	0.2	0.4	0.2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97.2	1.7	0.6	0.0	0.6
	의약품	81	97.5	2.5	0.0	0.0	0.0
	전기전자	180	98.3	1.1	0.0	0.0	0.6
	정보서비스	75	98.7	0.0	0.0	1.3	0.0
기업규모	대기업	8	100.0	0.0	0.0	0.0	0.0
	중견기업	31	96.8	0.0	0.0	0.0	3.2
	중소기업	473	97.9	1.5	0.2	0.2	0.2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97.8	1.1	0.0	1.1	0.0
	B to B	398	98.2	1.0	0.3	0.0	0.5
	기타	24	91.7	8.3	0.0	0.0	0.0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98.3	1.4	0.0	0.0	0.3
	수출 없음	222	97.3	1.4	0.5	0.5	0.2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부표 29 | 영업비밀 국내 보유 건수

(단위: 개, %, 건)

	계	0건	5건 미만	5건~ 10건 미만	10건~ 20건 미만	20건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97.9	1.4	0.2	0.2	0.4	0.2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97.2	1.7	0.6	0.0	0.6	0.2
	의약품	81	97.5	2.5	0.0	0.0	0.0	0.0
	전기전자	180	98.3	1.1	0.0	0.0	0.6	0.2
	정보서비스	75	98.7	0.0	0.0	1.3	0.0	0.2
기업규모	대기업	8	100.0	0.0	0.0	0.0	0.0	0.0
	중견기업	31	96.8	0.0	0.0	0.0	3.2	0.8
	중소기업	473	97.9	1.5	0.2	0.2	0.2	0.1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97.8	1.1	0.0	1.1	0.0	0.2
	B to B	398	98.2	1.0	0.3	0.0	0.5	0.2
	기타	24	91.7	8.3	0.0	0.0	0.0	0.1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98.3	1.4	0.0	0.0	0.3	0.1
	수출 없음	222	97.3	1.4	0.5	0.5	0.5	0.2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부표 30 | 영업비밀 해외 보유 건수

(단위: 개, %, 건)

	계	0건	5건 미만	5건~ 10건 미만	10건~ 20건 미만	20건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99.8	0.2	0.0	0.0	0.0	0.0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99.4	0.6	0.0	0.0	0.0	0.0
	의약품	81	100.0	0.0	0.0	0.0	0.0	0.0
	전기전자	180	100.0	0.0	0.0	0.0	0.0	0.0
	정보서비스	75	100.0	0.0	0.0	0.0	0.0	0.0
기업규모	대기업	8	100.0	0.0	0.0	0.0	0.0	0.0
	중견기업	31	100.0	0.0	0.0	0.0	0.0	0.0
	중소기업	473	99.8	0.2	0.0	0.0	0.0	0.0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100.0	0.0	0.0	0.0	0.0	0.0
	B to B	398	99.7	0.3	0.0	0.0	0.0	0.0
	기타	24	100.0	0.0	0.0	0.0	0.0	0.0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100.0	0.0	0.0	0.0	0.0	0.0
	수출 없음	222	99.5	0.5	0.0	0.0	0.0	0.0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부표 31 | 지식재산 담당조직의 보유 여부

(단위: 개, %)

	계	독립 전담부서	법무조직/연구 개발 조직 내	기타 조직 내	담당조직은 없으나, 담당인력 보유	담당조직 없으며, 담당인력도 없음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4.3	13.1	3.3	58.2	21.1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1.7	8.5	3.4	58.5	27.8
	의약품	81	8.6	14.8	6.2	60.5	9.9
	전기전자	180	6.7	15.6	2.8	61.1	13.9
	정보서비스	75	0.0	16.0	1.3	48.0	34.7
기업규모	대기업	8	0.0	12.5	12.5	50.0	25.0
	중견기업	31	12.9	19.4	6.5	58.1	3.2
	중소기업	473	3.8	12.7	3.0	58.4	22.2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3.3	10.0	1.1	54.4	31.1
	B to B	398	4.5	13.3	4.0	59.3	18.8
	기타	24	4.2	20.8	0.0	54.2	20.8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5.2	16.2	4.1	60.3	14.1
	수출 없음	222	3.2	9.0	2.3	55.4	30.2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부표 32 | 지식재산 담당조직의 운영 방식

(단위: 개, %)

	계	통합 운영	분산 운영	지식재산 담당인력이 통합적으로 관리	권리 유형별 다른 담당인력이 개별적으로 관리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404	22.5	3.7	64.1	9.7	
산업분류	음식료품	127	16.5	2.4	68.5	12.6
	의약품	73	23.3	9.6	54.8	12.3
	전기전자	155	27.1	1.9	64.5	6.5
	정보서비스	49	22.4	4.1	65.3	8.2
기업규모	대기업	6	16.7	16.7	66.7	0.0
	중견기업	30	30.0	10.0	56.7	3.3
	중소기업	368	22.0	3.0	64.7	10.3
비즈니스 대상	B to C	62	17.7	3.2	59.7	19.4
	B to B	323	23.2	3.7	65.3	7.7
	기타	19	26.3	5.3	57.9	10.5
수출활동	수출 있음	249	24.9	4.8	60.2	10.0
	수출 없음	155	18.7	1.9	70.3	9.0

\* 응답자 Base: 지식재산 담당조직 없으며, 담당인력도 없음 응답 제외 업체(n=404)

▼ 부표 33 | 지식재산 담당인력 규모 - 지식재산 업무만 전담하는 인력

(단위: 개, %, 명)

	계	0명	1명	2명	3명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402	87.8	7.5	2.7	2.0	0.3	
산업분류	음식료품	127	90.6	6.3	2.4	0.8	0.1
	의약품	71	80.3	9.9	5.6	4.2	0.7
	전기전자	155	88.4	9.0	0.6	1.9	0.2
	정보서비스	49	89.8	2.0	6.1	2.0	0.2
기업규모	대기업	6	83.3	16.7	0.0	0.0	0.2
	중견기업	30	70.0	16.7	6.7	6.7	1.4
	중소기업	366	89.3	6.6	2.5	1.6	0.2
비즈니스 대상	B to C	62	95.2	4.8	0.0	0.0	0.0
	B to B	321	86.9	8.1	2.8	2.2	0.3
	기타	19	78.9	5.3	10.5	5.3	0.5
수출활동	수출 있음	248	86.3	8.9	2.4	2.4	0.4
	수출 없음	154	90.3	5.2	3.2	1.3	0.2

\* 응답자 Base: 지식재산 담당조직 없으며, 담당인력도 없음 응답 + 무응답 제외 업체(n=402)

▼ 부표 34 | 지식재산 담당인력 규모 - 다른 업무와 지식재산 업무를 병행하는 인력

(단위: 개, %, 명)

	계	0명	1명	2명	3명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404	6.2	61.1	21.8	10.9	1.5	
산업분류	음식료품	127	1.6	71.7	20.5	6.3	1.4
	의약품	73	15.1	47.9	20.5	16.4	1.6
	전기전자	155	5.8	63.2	18.7	12.3	1.5
	정보서비스	49	6.1	46.9	36.7	10.2	1.6
기업규모	대기업	6	0.0	83.3	0.0	16.7	1.5
	중견기업	30	20.0	50.0	20.0	10.0	1.3
	중소기업	368	5.2	61.7	22.3	10.9	1.5
비즈니스 대상	B to C	62	1.6	59.7	24.2	14.5	1.5
	B to B	323	6.5	61.9	20.7	10.8	1.5
	기타	19	15.8	52.6	31.6	0.0	1.2
수출활동	수출 있음	249	6.8	59.0	24.1	10.0	1.5
	수출 없음	155	5.2	64.5	18.1	12.3	1.4

\* 응답자 Base: 지식재산 담당조직 없으며, 담당인력도 없음 응답 제외 업체(n=404)

## ▼ 부표 35 | 연구개발, 혁신 성과물 보호 전략 활용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단위: 개, %, 점)

	계	활용 하지 않음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1	0.8	2.9	3.9	3.9	29.2	18.2	18.8	22.3	5.0	71.3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1.7	4.0	6.3	5.1	30.7	16.5	21.0	14.8	4.7	66.6
	의약품	81	0.0	6.2	2.5	2.5	29.6	21.0	18.5	19.8	4.9	70.2
	전기전자	179	0.6	1.1	3.4	3.9	21.8	23.5	22.9	22.9	5.2	74.5
	정보서비스	75	0.0	1.3	1.3	2.7	42.7	6.7	4.0	41.3	5.3	75.6
기업규모	대기업	8	0.0	0.0	0.0	0.0	62.5	0.0	12.5	25.0	5.0	71.4
	중견기업	31	0.0	0.0	3.2	0.0	19.4	32.3	16.1	29.0	5.5	77.9
	중소기업	472	0.8	3.2	4.0	4.2	29.2	17.6	19.1	21.8	5.0	70.9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2.2	1.1	7.8	3.3	33.3	12.2	20.0	20.0	4.8	68.7
	B to B	397	0.5	3.5	3.0	4.0	28.2	20.4	18.6	21.7	5.0	71.4
	기타	24	0.0	0.0	4.2	4.2	29.2	4.2	16.7	41.7	5.5	78.6
수출활동	수출 있음	289	0.7	2.1	2.4	4.5	25.3	20.4	23.5	21.1	5.1	73.2
	수출 없음	222	0.9	4.1	5.9	3.2	34.2	15.3	12.6	23.9	4.8	68.8

\* 응답자 Base: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511)

## ▼ 부표 36 | 연구개발, 혁신 성과물 보호 전략 활용도 - 영업비밀로 유지

(단위: 개, %, 점)

	계	활용 하지 않음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1	6.8	3.9	7.8	4.9	34.1	13.5	12.5	16.4	4.3	61.2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8.0	5.7	8.5	6.8	38.1	13.6	11.9	7.4	3.9	55.3
	의약품	81	8.6	7.4	12.3	1.2	24.7	13.6	13.6	18.5	4.1	59.1
	전기전자	179	5.0	1.7	7.8	6.1	30.7	16.8	16.2	15.6	4.5	64.2
	정보서비스	75	6.7	1.3	1.3	1.3	42.7	5.3	4.0	37.3	4.9	70.1
기업규모	대기업	8	25.0	0.0	0.0	0.0	62.5	12.5	0.0	0.0	3.1	44.6
	중견기업	31	0.0	9.7	29.0	6.5	16.1	19.4	6.5	12.9	3.8	53.9
	중소기업	472	7.0	3.6	6.6	4.9	34.7	13.1	13.1	16.9	4.3	61.9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6.7	1.1	13.3	6.7	34.4	17.8	7.8	12.2	4.1	58.1
	B to B	397	6.5	4.8	6.8	4.5	33.5	12.8	13.6	17.4	4.3	61.9
	기타	24	12.5	0.0	4.2	4.2	41.7	8.3	12.5	16.7	4.2	60.1
수출활동	수출 있음	289	4.5	4.8	8.0	6.2	33.6	16.6	13.5	12.8	4.3	61.0
	수출 없음	222	9.9	2.7	7.7	3.2	34.7	9.5	11.3	21.2	4.3	61.3

\* 응답자 Base: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511)

▼ 부표 37 | 연구개발, 혁신 성과물 보호 전략 활용도 - 경쟁기업에 앞서 시장 선점

(단위: 개, %, 점)

	계	활용 하지 않음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0	5.5	3.9	6.1	5.3	30.6	15.9	16.5	16.3	4.5	63.8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7.4	6.3	8.5	5.1	31.3	18.2	16.5	6.8	4.0	57.3
	의약품	81	4.9	7.4	3.7	7.4	30.9	13.6	16.0	16.0	4.4	62.4
	전기전자	178	3.9	1.7	6.7	6.2	27.0	17.4	21.3	15.7	4.7	66.7
	정보서비스	75	5.3	0.0	1.3	1.3	37.3	9.3	5.3	40.0	5.1	73.5
기업규모	대기업	8	25.0	0.0	0.0	0.0	25.0	25.0	25.0	0.0	3.8	53.6
	중견기업	31	9.7	6.5	0.0	9.7	29.0	29.0	3.2	12.9	4.1	58.1
	중소기업	471	4.9	3.8	6.6	5.1	30.8	14.9	17.2	16.8	4.5	64.3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7.8	1.1	6.7	5.6	30.0	15.6	20.0	13.3	4.4	63.2
	B to B	396	4.5	4.5	6.1	5.3	31.1	16.7	15.4	16.4	4.5	63.9
	기타	24	12.5	4.2	4.2	4.2	25.0	4.2	20.8	25.0	4.5	63.7
수출활동	수출 있음	289	4.5	5.2	4.8	6.6	27.0	19.4	17.6	14.9	4.5	64.2
	수출 없음	221	6.8	2.3	7.7	3.6	35.3	11.3	14.9	18.1	4.4	63.2

\* 응답자 Base: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510)

▼ 부표 38 | 연구개발, 혁신 성과물 보호 전략 활용도 - 복잡한 설계방식을 채택

(단위: 개, %, 점)

	계	활용 하지 않음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0	11.6	7.8	10.6	10.6	36.9	10.0	4.7	7.8	3.4	48.8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17.0	11.4	13.6	15.3	33.0	6.3	2.3	1.1	2.7	38.5
	의약품	81	12.3	11.1	11.1	6.2	44.4	6.2	2.5	6.2	3.2	45.5
	전기전자	178	7.3	4.5	10.7	11.2	35.4	17.4	7.9	5.6	3.7	53.5
	정보서비스	75	8.0	4.0	2.7	2.7	41.3	5.3	5.3	30.7	4.6	65.1
기업규모	대기업	8	25.0	12.5	0.0	12.5	37.5	0.0	12.5	0.0	2.8	39.3
	중견기업	31	12.9	22.6	19.4	0.0	25.8	16.1	0.0	3.2	2.7	38.2
	중소기업	471	11.3	6.8	10.2	11.3	37.6	9.8	4.9	8.3	3.5	49.6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15.6	6.7	16.7	12.2	33.3	4.4	2.2	8.9	3.1	44.0
	B to B	396	10.6	8.3	9.6	9.6	37.9	11.1	5.6	7.3	3.5	49.7
	기타	24	12.5	4.2	4.2	20.8	33.3	12.5	0.0	12.5	3.6	51.2
수출활동	수출 있음	288	11.5	7.6	11.1	12.5	33.0	13.9	6.3	4.2	3.4	47.9
	수출 없음	222	11.7	8.1	9.9	8.1	41.9	5.0	2.7	12.6	3.5	49.9

\* 응답자 Base: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510)

## ▼ 부표 39 | 혁신 성과물 보호 위한 지식재산 확보 선호도 - 특허 및 실용신안권

(단위: 개, %, 점)

	계	활용 하지 않음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5.3	2.9	2.1	2.9	19.3	13.1	22.1	32.2	5.2	73.8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4.5	5.1	4.0	3.4	21.6	16.5	25.0	19.9	4.8	68.7
	의약품	81	8.6	4.9	1.2	2.5	23.5	9.9	17.3	32.1	4.9	69.5
	전기전자	180	0.0	0.6	1.7	3.3	12.2	14.4	27.2	40.6	5.8	83.2
	정보서비스	75	16.0	1.3	0.0	1.3	26.7	5.3	8.0	41.3	4.8	68.0
기업규모	대기업	8	25.0	12.5	0.0	0.0	25.0	0.0	25.0	12.5	3.5	50.0
	중견기업	31	3.2	0.0	3.2	9.7	16.1	12.9	19.4	35.5	5.3	75.6
	중소기업	473	5.1	3.0	2.1	2.5	19.5	13.3	22.2	32.3	5.2	74.1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8.9	3.3	4.4	3.3	18.9	12.2	26.7	22.2	4.7	67.8
	B to B	398	4.3	3.0	1.5	2.5	19.6	13.8	21.4	33.9	5.3	75.2
	기타	24	8.3	0.0	4.2	8.3	16.7	4.2	16.7	41.7	5.1	73.2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1.4	2.1	2.1	3.4	16.2	14.1	26.6	34.1	5.5	78.6
	수출 없음	222	10.4	4.1	2.3	2.3	23.4	11.7	16.2	29.7	4.7	67.6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 부표 40 | 혁신 성과물 보호 위한 지식재산 확보 선호도 - 상표권

(단위: 개, %, 점)

	계	활용 하지 않음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16.8	2.9	3.3	3.3	23.0	12.5	19.1	18.9	4.2	60.2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6.3	2.8	4.0	3.4	21.0	15.9	29.0	17.6	4.8	68.8
	의약품	81	13.6	6.2	4.9	3.7	25.9	8.6	14.8	22.2	4.2	59.8
	전기전자	180	25.0	1.7	3.3	3.9	21.7	14.4	17.8	12.2	3.7	53.0
	정보서비스	75	25.3	2.7	0.0	1.3	28.0	4.0	4.0	34.7	4.1	57.9
기업규모	대기업	8	12.5	12.5	0.0	0.0	25.0	12.5	12.5	25.0	4.3	60.7
	중견기업	31	16.1	6.5	0.0	3.2	22.6	16.1	22.6	12.9	4.1	59.0
	중소기업	473	16.9	2.5	3.6	3.4	23.0	12.3	19.0	19.2	4.2	60.3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4.4	2.2	4.4	2.2	27.8	11.1	26.7	21.1	4.9	70.3
	B to B	398	20.1	3.3	2.8	3.5	22.1	13.1	17.3	17.8	4.0	57.4
	기타	24	8.3	0.0	8.3	4.2	20.8	8.3	20.8	29.2	4.8	69.0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12.4	2.4	2.8	2.8	19.7	14.8	24.8	20.3	4.6	65.8
	수출 없음	222	22.5	3.6	4.1	4.1	27.5	9.5	11.7	17.1	3.7	53.0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부표 41 | 혁신 성과를 보호 위한 지식재산 확보 선호도 - 디자인권

(단위: 개, %, 점)

	계	활용 하지 않음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36.3	5.9	3.7	4.9	19.1	10.4	10.9	8.8	2.8	40.5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22.2	8.5	4.5	6.3	22.7	14.2	14.2	7.4	3.4	47.9
	의약품	81	51.9	6.2	4.9	3.7	13.6	6.2	4.9	8.6	2.0	28.9
	전기전자	180	29.4	4.4	3.9	5.6	21.7	12.2	13.3	9.4	3.2	46.1
	정보서비스	75	69.3	2.7	0.0	1.3	10.7	1.3	4.0	10.7	1.5	22.1
기업규모	대기업	8	50.0	0.0	0.0	0.0	37.5	0.0	0.0	12.5	2.4	33.9
	중견기업	31	45.2	9.7	12.9	0.0	16.1	6.5	3.2	6.5	2.0	28.1
	중소기업	473	35.5	5.7	3.2	5.3	19.0	10.8	11.6	8.9	2.9	41.4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30.0	5.6	5.6	5.6	16.7	12.2	17.8	6.7	3.1	44.9
	B to B	398	38.2	6.0	3.3	4.8	19.8	10.1	9.3	8.5	2.7	38.9
	기타	24	29.2	4.2	4.2	4.2	16.7	8.3	12.5	20.8	3.5	50.6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26.2	5.9	4.1	4.1	21.4	13.1	14.1	11.0	3.4	48.5
	수출 없음	222	49.5	5.9	3.2	5.9	16.2	6.8	6.8	5.9	2.1	30.0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부표 42 | 혁신 성과를 보호 위한 지식재산 확보 선호도 - 저작권

(단위: 개, %, 점)

	계	활용 하지 않음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50.4	8.6	4.7	6.3	16.0	6.8	4.1	3.1	1.8	25.9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32.4	13.1	5.7	9.7	19.9	12.5	5.1	1.7	2.4	34.0
	의약품	81	66.7	13.6	1.2	2.5	7.4	4.9	1.2	2.5	1.0	14.6
	전기전자	180	48.3	5.0	6.7	7.2	19.4	4.4	5.6	3.3	2.0	28.1
	정보서비스	75	80.0	1.3	1.3	0.0	8.0	1.3	1.3	6.7	1.0	13.9
기업규모	대기업	8	62.5	12.5	0.0	0.0	12.5	0.0	12.5	0.0	1.4	19.6
	중견기업	31	48.4	12.9	12.9	0.0	16.1	3.2	0.0	6.5	1.6	23.5
	중소기업	473	50.3	8.2	4.2	6.8	16.1	7.2	4.2	3.0	1.8	26.2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48.9	10.0	4.4	3.3	15.6	13.3	4.4	0.0	1.8	26.3
	B to B	398	51.0	8.3	5.0	7.0	15.3	5.8	3.8	3.8	1.8	25.5
	기타	24	45.8	8.3	0.0	4.2	29.2	0.0	8.3	4.2	2.2	31.0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44.1	9.7	5.9	5.5	18.6	7.9	4.8	3.4	2.1	29.3
	수출 없음	222	58.6	7.2	3.2	7.2	12.6	5.4	3.2	2.7	1.5	21.5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 부표 43 | 혁신 성과를 보호 위한 지식재산 확보 선호도 - 신지식재산권

(단위: 개, %, 점)

	계	활용 하지 않음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53.1	9.6	5.1	5.3	16.0	5.3	3.5	2.1	1.6	23.2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33.5	15.9	5.7	6.8	23.3	9.1	4.5	1.1	2.2	31.7
	의약품	81	69.1	13.6	2.5	0.0	9.9	1.2	2.5	1.2	0.9	12.5
	전기전자	180	51.7	5.0	7.2	7.8	16.7	4.4	3.9	3.3	1.8	25.5
	정보서비스	75	85.3	1.3	1.3	1.3	4.0	2.7	1.3	2.7	0.6	9.1
기업규모	대기업	8	62.5	0.0	0.0	0.0	25.0	0.0	12.5	0.0	1.8	25.0
	중견기업	31	61.3	12.9	6.5	6.5	9.7	3.2	0.0	0.0	1.0	14.3
	중소기업	473	52.4	9.5	5.1	5.3	16.3	5.5	3.6	2.3	1.7	23.7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50.0	12.2	5.6	2.2	14.4	10.0	5.6	0.0	1.7	24.4
	B to B	398	54.0	9.3	5.0	6.0	15.3	4.5	3.0	2.8	1.6	22.7
	기타	24	50.0	4.2	4.2	4.2	33.3	0.0	4.2	0.0	1.8	26.2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46.6	10.0	5.9	5.2	19.3	5.9	4.5	2.8	1.9	27.1
	수출 없음	222	61.7	9.0	4.1	5.4	11.7	4.5	2.3	1.4	1.3	18.0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 부표 44 | 혁신 성과를 보호 위한 지식재산 확보 선호도 - 영업비밀

(단위: 개, %, 점)

	계	활용 하지 않음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44.3	6.4	5.5	3.9	17.0	8.2	8.6	6.1	2.3	33.1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23.9	9.7	8.5	5.7	23.9	11.4	13.6	3.4	3.0	43.1
	의약품	81	60.5	12.3	1.2	1.2	9.9	2.5	6.2	6.2	1.5	21.5
	전기전자	180	39.4	2.8	6.7	5.0	17.8	10.0	8.3	10.0	2.7	38.9
	정보서비스	75	86.7	1.3	0.0	0.0	6.7	2.7	0.0	2.7	0.6	8.6
기업규모	대기업	8	62.5	0.0	0.0	0.0	25.0	0.0	12.5	0.0	1.8	25.0
	중견기업	31	45.2	6.5	12.9	0.0	19.4	6.5	6.5	3.2	2.0	29.0
	중소기업	473	44.0	6.6	5.1	4.2	16.7	8.5	8.7	6.3	2.3	33.6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45.6	7.8	5.6	1.1	14.4	11.1	10.0	4.4	2.3	32.4
	B to B	398	44.5	6.0	5.5	4.5	16.8	7.5	8.3	6.8	2.3	33.3
	기타	24	37.5	8.3	4.2	4.2	29.2	8.3	8.3	0.0	2.4	33.9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35.5	7.2	7.2	3.8	20.3	10.3	8.6	6.9	2.7	38.0
	수출 없음	222	55.9	5.4	3.2	4.1	12.6	5.4	8.6	5.0	1.9	26.8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부표 45 |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주요 요인 - 권리의 독점적 사용을 위해

(단위: 개, %, 점)

	계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1	2.0	3.3	4.7	21.7	15.3	23.7	29.4	5.3	76.2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2.8	5.1	5.1	22.7	18.8	26.1	19.3	5.1	72.2
	의약품	81	0.0	3.7	2.5	25.9	7.4	23.5	37.0	5.6	79.4
	전기전자	179	1.1	2.8	6.7	16.2	19.6	26.3	27.4	5.4	76.9
	정보서비스	75	4.0	0.0	1.3	28.0	5.3	12.0	49.3	5.6	80.6
기업규모	대기업	8	12.5	0.0	0.0	12.5	0.0	12.5	62.5	5.8	82.1
	중견기업	31	0.0	3.2	9.7	25.8	6.5	19.4	35.5	5.4	76.5
	중소기업	472	1.9	3.4	4.4	21.6	16.1	24.2	28.4	5.3	76.1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0.0	4.4	6.7	17.8	14.4	27.8	28.9	5.4	77.3
	B to B	397	2.3	3.3	4.5	22.7	15.1	23.2	29.0	5.3	75.8
	기타	24	4.2	0.0	0.0	20.8	20.8	16.7	37.5	5.5	79.2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1.4	3.4	5.2	20.0	15.5	24.8	29.7	5.4	76.8
	수출 없음	221	2.7	3.2	4.1	24.0	14.9	22.2	29.0	5.3	75.4

\* 응답자 Base: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511)

▼ 부표 46 |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주요 요인 - 상대방의 모방/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단위: 개, %, 점)

	계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2.9	3.7	4.3	18.4	16.4	22.3	32.0	5.4	76.6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4.0	5.7	4.0	18.8	25.0	25.6	17.0	5.0	71.4
	의약품	81	1.2	4.9	4.9	18.5	9.9	25.9	34.6	5.5	78.1
	전기전자	180	2.2	2.2	6.1	14.4	15.6	25.0	34.4	5.5	78.8
	정보서비스	75	4.0	1.3	0.0	26.7	5.3	4.0	58.7	5.7	82.1
기업규모	대기업	8	12.5	0.0	0.0	12.5	0.0	12.5	62.5	5.8	82.1
	중견기업	31	0.0	0.0	12.9	22.6	9.7	32.3	22.6	5.3	75.6
	중소기업	473	3.0	4.0	3.8	18.2	17.1	21.8	32.1	5.4	76.6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2.2	6.7	3.3	14.4	20.0	18.9	34.4	5.4	76.8
	B to B	398	3.0	3.3	4.8	19.1	15.3	22.9	31.7	5.4	76.5
	기타	24	4.2	0.0	0.0	20.8	20.8	25.0	29.2	5.5	78.0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2.1	3.8	4.1	16.6	15.9	27.9	29.7	5.4	77.5
	수출 없음	222	4.1	3.6	4.5	20.7	17.1	14.9	35.1	5.3	75.5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부표 47 |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주요 요인 - 침해소송 피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단위: 개, %, 점)

	계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3.1	6.4	6.6	24.0	12.7	21.1	26.0	5.0	72.0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4.0	8.5	10.2	25.6	18.8	22.7	10.2	4.6	65.1
	의약품	81	1.2	8.6	6.2	22.2	11.1	22.2	28.4	5.1	73.4
	전기전자	180	2.2	5.0	6.1	20.0	10.6	26.1	30.0	5.3	75.7
	정보서비스	75	5.3	2.7	0.0	32.0	5.3	4.0	50.7	5.4	77.7
기업규모	대기업	8	12.5	0.0	0.0	12.5	0.0	25.0	50.0	5.6	80.4
	중견기업	31	0.0	6.5	3.2	19.4	16.1	25.8	29.0	5.4	77.0
	중소기업	473	3.2	6.6	7.0	24.5	12.7	20.7	25.4	5.0	71.5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2.2	11.1	8.9	23.3	11.1	17.8	25.6	4.9	69.4
	B to B	398	3.3	5.5	6.5	24.4	13.1	21.4	25.9	5.1	72.3
	기타	24	4.2	4.2	0.0	20.8	12.5	29.2	29.2	5.4	76.8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2.1	6.9	6.2	20.0	13.1	27.9	23.8	5.1	73.4
	수출 없음	222	4.5	5.9	7.2	29.3	12.2	12.2	28.8	4.9	70.1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부표 48 |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주요 요인 - 기술판매, 라이선싱을 위한 권리확보를 위해

(단위: 개, %, 점)

	계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4.7	5.9	5.1	25.6	16.4	17.6	24.8	5.0	70.7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4.5	5.7	6.8	27.8	18.2	23.3	13.6	4.7	67.7
	의약품	81	3.7	7.4	1.2	21.0	18.5	22.2	25.9	5.1	73.4
	전기전자	180	2.8	7.2	7.2	22.2	17.2	15.6	27.8	5.0	71.7
	정보서비스	75	10.7	1.3	0.0	33.3	8.0	4.0	42.7	5.1	72.8
기업규모	대기업	8	12.5	0.0	0.0	37.5	12.5	0.0	37.5	4.9	69.6
	중견기업	31	12.9	9.7	6.5	35.5	12.9	9.7	12.9	4.1	58.1
	중소기업	473	4.0	5.7	5.1	24.7	16.7	18.4	25.4	5.0	71.6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5.6	10.0	6.7	26.7	16.7	15.6	18.9	4.6	65.9
	B to B	398	4.5	4.8	4.5	26.1	16.3	17.6	26.1	5.0	71.8
	기타	24	4.2	8.3	8.3	12.5	16.7	25.0	25.0	5.0	72.0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3.4	6.9	4.5	22.4	17.6	21.7	23.4	5.0	71.8
	수출 없음	222	6.3	4.5	5.9	29.7	14.9	12.2	26.6	4.9	69.3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부표 49 |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주요 요인 - 홍보, 마케팅 등에 활용을 위해

(단위: 개, %, 점)

	계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3.5	4.3	4.7	25.0	18.4	21.3	22.9	5.1	72.2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2.8	4.5	4.5	19.3	23.9	29.0	15.9	5.1	72.5
	의약품	81	1.2	2.5	4.9	35.8	14.8	28.4	12.3	5.0	70.7
	전기전자	180	2.8	5.0	6.1	27.2	19.4	17.8	21.7	5.0	70.8
	정보서비스	75	9.3	4.0	1.3	21.3	6.7	4.0	53.3	5.4	76.8
기업규모	대기업	8	12.5	0.0	0.0	37.5	12.5	25.0	12.5	4.6	66.1
	중견기업	31	6.5	9.7	6.5	29.0	25.8	16.1	6.5	4.3	61.8
	중소기업	473	3.2	4.0	4.7	24.5	18.0	21.6	24.1	5.1	73.0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2.2	5.6	3.3	20.0	20.0	20.0	28.9	5.3	75.1
	B to B	398	3.8	4.3	5.3	25.9	17.8	21.9	21.1	5.0	71.4
	기타	24	4.2	0.0	0.0	29.2	20.8	16.7	29.2	5.3	75.6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1.7	4.1	4.8	24.8	19.3	26.2	19.0	5.1	72.9
	수출 없음	222	5.9	4.5	4.5	25.2	17.1	14.9	27.9	5.0	71.4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부표 50 |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주요 요인 - 자금조달에 활용하기 위해

(단위: 개, %, 점)

	계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8.8	13.9	8.6	31.4	13.1	10.5	13.7	4.1	58.9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7.4	15.9	7.4	31.3	17.6	13.6	6.8	4.0	57.7
	의약품	81	13.6	27.2	7.4	34.6	4.9	6.2	6.2	3.3	47.6
	전기전자	180	5.6	9.4	12.2	32.8	16.1	12.8	11.1	4.3	61.0
	정보서비스	75	14.7	5.3	4.0	25.3	4.0	2.7	44.0	4.8	69.0
기업규모	대기업	8	37.5	25.0	0.0	37.5	0.0	0.0	0.0	2.4	33.9
	중견기업	31	16.1	29.0	6.5	38.7	3.2	3.2	3.2	3.1	43.8
	중소기업	473	7.8	12.7	8.9	30.9	14.0	11.2	14.6	4.2	60.3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8.9	17.8	7.8	27.8	12.2	7.8	17.8	4.1	58.7
	B to B	398	8.5	13.1	8.8	32.7	13.3	11.1	12.6	4.1	58.9
	기타	24	12.5	12.5	8.3	25.0	12.5	12.5	16.7	4.2	59.5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7.6	15.9	8.6	31.7	14.8	12.1	9.3	4.0	57.7
	수출 없음	222	10.4	11.3	8.6	31.1	10.8	8.6	19.4	4.2	60.6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 부표 51 | 권리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 - 특허·실용신안권 &amp; 상표권

(단위: 개, %, 점)

	계	활용 하지 않음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48.6	1.0	2.5	3.5	12.5	8.2	12.5	11.1	2.6	37.2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51.1	0.6	2.8	2.3	12.5	9.1	13.1	8.5	2.5	35.2
	의약품	81	37.0	0.0	2.5	4.9	19.8	6.2	16.0	13.6	3.2	45.9
	전기전자	180	42.8	2.2	2.8	5.0	10.6	11.1	13.3	12.2	2.9	40.9
	정보서비스	75	69.3	0.0	1.3	1.3	9.3	1.3	5.3	12.0	1.7	23.8
기업규모	대기업	8	50.0	0.0	0.0	0.0	12.5	12.5	12.5	12.5	2.8	39.3
	중견기업	31	54.8	0.0	12.9	6.5	6.5	3.2	3.2	12.9	2.0	28.1
	중소기업	473	48.2	1.1	1.9	3.4	12.9	8.5	13.1	11.0	2.6	37.8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45.6	0.0	5.6	4.4	11.1	8.9	14.4	10.0	2.7	38.6
	B to B	398	50.3	1.0	1.8	3.3	12.1	8.0	12.3	11.3	2.6	36.5
	기타	24	33.3	4.2	4.2	4.2	25.0	8.3	8.3	12.5	3.0	43.5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39.3	1.0	2.8	4.1	15.5	9.7	15.2	12.4	3.1	43.9
	수출 없음	222	60.8	0.9	2.3	2.7	8.6	6.3	9.0	9.5	2.0	28.5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 부표 52 | 권리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 - 특허·실용신안권 &amp; 디자인권

(단위: 개, %, 점)

	계	활용 하지 않음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59.8	2.0	3.5	3.5	10.2	6.6	8.2	6.3	1.9	26.6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58.5	1.7	4.0	3.4	13.1	6.8	8.0	4.5	1.9	26.5
	의약품	81	63.0	4.9	2.5	2.5	8.6	6.2	8.6	3.7	1.6	22.9
	전기전자	180	50.6	1.7	4.4	4.4	9.4	8.9	10.6	10.0	2.4	34.2
	정보서비스	75	81.3	0.0	1.3	2.7	6.7	1.3	2.7	4.0	0.9	12.6
기업규모	대기업	8	75.0	0.0	12.5	0.0	0.0	12.5	0.0	0.0	0.9	12.5
	중견기업	31	67.7	3.2	9.7	0.0	6.5	0.0	3.2	9.7	1.4	19.4
	중소기업	473	59.0	1.9	3.0	3.8	10.6	7.0	8.7	6.1	1.9	27.3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56.7	1.1	5.6	4.4	10.0	6.7	7.8	7.8	2.0	28.6
	B to B	398	61.6	2.0	3.3	3.3	9.5	6.0	8.5	5.8	1.8	25.5
	기타	24	41.7	4.2	0.0	4.2	20.8	16.7	4.2	8.3	2.7	38.1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49.7	2.8	4.5	2.8	12.8	9.0	11.0	7.6	2.4	33.6
	수출 없음	222	73.0	0.9	2.3	4.5	6.8	3.6	4.5	4.5	1.2	17.5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부표 53 | 권리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 - 상표권 & 디자인권

(단위: 개, %, 점)

	계	활용 하지 않음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59.6	2.9	2.9	3.7	10.9	7.4	7.4	5.1	1.8	25.8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55.7	2.8	1.1	4.0	13.1	10.2	8.0	5.1	29.1
	의약품	81	60.5	4.9	1.2	3.7	11.1	3.7	9.9	4.9	25.0
	전기전자	180	55.0	2.8	5.6	3.3	10.6	8.9	8.9	5.0	28.4
	정보서비스	75	78.7	1.3	2.7	4.0	6.7	1.3	0.0	5.3	12.8
기업규모	대기업	8	62.5	0.0	0.0	0.0	12.5	12.5	0.0	12.5	28.6
	중견기업	31	67.7	0.0	3.2	6.5	3.2	0.0	3.2	16.1	24.4
	중소기업	473	59.0	3.2	3.0	3.6	11.4	7.8	7.8	4.2	25.9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57.8	1.1	3.3	5.6	10.0	6.7	8.9	6.7	28.3
	B to B	398	61.3	3.3	3.0	2.8	10.8	7.8	6.5	4.5	24.4
	기타	24	37.5	4.2	0.0	12.5	16.7	4.2	16.7	8.3	41.1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51.0	3.4	2.8	2.8	14.1	10.0	10.3	5.5	32.1
	수출 없음	222	70.7	2.3	3.2	5.0	6.8	4.1	3.6	4.5	17.7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부표 54 | 권리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 - 특허·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단위: 개, %, 점)

	계	활용 하지 않음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61.7	2.5	2.5	3.3	10.4	6.6	7.2	5.7	1.8	25.0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59.1	1.7	3.4	4.0	14.2	4.5	6.8	6.3	26.4
	의약품	81	65.4	3.7	0.0	1.2	12.3	6.2	7.4	3.7	22.6
	전기전자	180	54.4	3.3	3.3	3.9	8.3	9.4	9.4	7.8	30.5
	정보서비스	75	81.3	1.3	1.3	2.7	4.0	5.3	2.7	1.3	11.4
기업규모	대기업	8	75.0	0.0	0.0	12.5	0.0	0.0	0.0	12.5	17.9
	중견기업	31	67.7	3.2	6.5	3.2	6.5	6.5	0.0	6.5	18.4
	중소기업	473	61.1	2.5	2.3	3.2	10.8	6.8	7.8	5.5	25.6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60.0	1.1	4.4	3.3	12.2	7.8	5.6	5.6	25.7
	B to B	398	63.3	2.5	2.3	3.3	9.3	6.5	7.0	5.8	24.2
	기타	24	41.7	8.3	0.0	4.2	20.8	4.2	16.7	4.2	36.3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53.4	3.1	2.8	3.4	12.4	9.7	8.6	6.6	30.6
	수출 없음	222	72.5	1.8	2.3	3.2	7.7	2.7	5.4	4.5	17.7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 부표 55 | 권리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 - 산업재산권 &amp; 저작권

(단위: 개, %, 점)

	계	활용 하지 않음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72.1	3.9	3.5	2.7	9.8	4.1	2.3	1.6	1.0	14.8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71.0	5.1	1.1	3.4	9.7	6.8	2.3	0.6	1.1	15.4
	의약품	81	74.1	6.2	4.9	0.0	9.9	2.5	2.5	0.0	0.8	11.8
	전기전자	180	67.8	2.8	5.6	2.8	11.7	3.9	2.8	2.8	1.2	17.8
	정보서비스	75	82.7	1.3	2.7	4.0	5.3	0.0	1.3	2.7	0.7	9.5
기업규모	대기업	8	75.0	0.0	0.0	12.5	0.0	12.5	0.0	0.0	1.0	14.3
	중견기업	31	67.7	3.2	9.7	0.0	6.5	9.7	0.0	3.2	1.2	17.1
	중소기업	473	72.3	4.0	3.2	2.7	10.1	3.6	2.5	1.5	1.0	14.7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73.3	3.3	5.6	4.4	7.8	5.6	0.0	0.0	0.9	12.4
	B to B	398	72.6	4.0	3.3	2.3	9.5	3.3	3.0	2.0	1.0	14.9
	기타	24	58.3	4.2	0.0	4.2	20.8	12.5	0.0	0.0	1.6	23.2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67.2	5.2	4.1	2.8	11.0	5.2	3.4	1.0	1.2	17.1
	수출 없음	222	78.4	2.3	2.7	2.7	8.1	2.7	0.9	2.3	0.8	11.8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 부표 56 | 권리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 - 산업재산권 &amp; 신지식재산권

(단위: 개, %, 점)

	계	활용 하지 않음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74.6	3.7	3.3	2.3	9.0	3.3	2.9	0.8	0.9	13.3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71.0	4.5	1.7	2.3	11.9	5.7	2.3	0.6	1.1	15.5
	의약품	81	79.0	4.9	4.9	0.0	7.4	1.2	2.5	0.0	0.7	9.3
	전기전자	180	71.7	3.3	5.0	2.8	9.4	2.8	3.9	1.1	1.0	14.9
	정보서비스	75	85.3	1.3	1.3	4.0	2.7	1.3	2.7	1.3	0.6	8.4
기업규모	대기업	8	75.0	0.0	0.0	12.5	0.0	12.5	0.0	0.0	1.0	14.3
	중견기업	31	83.9	0.0	9.7	0.0	6.5	0.0	0.0	0.0	0.5	6.5
	중소기업	473	74.0	4.0	3.0	2.3	9.3	3.4	3.2	0.8	1.0	13.7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72.2	3.3	6.7	3.3	10.0	2.2	1.1	1.1	0.9	13.2
	B to B	398	75.9	4.0	2.8	2.0	8.0	3.0	3.5	0.8	0.9	12.7
	기타	24	62.5	0.0	0.0	4.2	20.8	12.5	0.0	0.0	1.6	22.6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70.7	4.8	4.1	2.1	10.0	4.1	3.8	0.3	1.1	15.0
	수출 없음	222	79.7	2.3	2.3	2.7	7.7	2.3	1.8	1.4	0.8	11.0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부표 57 | 권리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 - 산업재산권 & 영업비밀

(단위: 개, %, 점)

	계	활용 하지 않음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70.3	2.7	3.7	2.0	10.2	4.3	4.9	2.0	1.2	17.3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65.3	2.8	3.4	1.1	13.6	5.1	6.8	1.7	15.5
	의약품	81	69.1	4.9	1.2	2.5	9.9	3.7	4.9	3.7	18.3
	전기전자	180	68.9	2.2	5.6	1.7	10.0	4.4	5.0	2.2	18.0
	정보서비스	75	86.7	1.3	2.7	4.0	2.7	2.7	0.0	0.0	6.1
기업규모	대기업	8	75.0	0.0	0.0	0.0	12.5	12.5	0.0	0.0	16.1
	중견기업	31	64.5	6.5	9.7	0.0	12.9	3.2	0.0	3.2	16.6
	중소기업	473	70.6	2.5	3.4	2.1	9.9	4.2	5.3	1.9	17.4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67.8	2.2	7.8	3.3	10.0	3.3	4.4	1.1	17.0
	B to B	398	71.9	2.8	3.0	1.8	9.0	4.5	4.8	2.3	16.8
	기타	24	54.2	4.2	0.0	0.0	29.2	4.2	8.3	0.0	27.4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64.5	3.4	4.8	1.7	11.4	4.8	7.2	2.1	20.8
	수출 없음	222	77.9	1.8	2.3	2.3	8.6	3.6	1.8	0.9	12.7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부표 58 | 복합적 지식재산권 확보 필요성 판단, IP 포트폴리오 구축 설계 단계 - 1순위

(단위: 개, %)

	계	연구개발 기획 단계	연구개발 진행 단계	연구개발 완료 단계	후속연구 기획 단계	상품화 단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280	44.6	29.3	16.4	3.6	6.1
산업분류	음식료품	92	51.1	25.0	16.3	2.2
	의약품	52	71.2	21.2	7.7	0.0
	전기전자	112	28.6	35.7	19.6	6.3
	정보서비스	24	37.5	33.3	20.8	4.2
기업규모	대기업	4	0.0	50.0	25.0	25.0
	중견기업	17	52.9	41.2	5.9	0.0
	중소기업	259	44.8	28.2	17.0	3.5
비즈니스 대상	B to C	51	45.1	19.6	29.4	2.0
	B to B	214	44.9	30.8	13.6	4.2
	기타	15	40.0	40.0	13.3	0.0
수출활동	수출 있음	188	45.2	28.2	16.0	3.7
	수출 없음	92	43.5	31.5	17.4	3.3

\* 응답자 Base: 어떤 유형의 복합적 활용전략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280)

▼ 부표 59 | 복합적 지식재산권 확보 필요성 판단, IP 포트폴리오 구축 설계 단계 - 2순위

(단위: 개, %)

	계	연구개발 기획 단계	연구개발 진행 단계	연구개발 완료 단계	후속연구 기획 단계	상품화 단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209	5.7	41.1	34.4	9.1	9.6	
산업분류	음식료품	70	4.3	37.1	38.6	8.6	11.4
	의약품	49	6.1	55.1	28.6	6.1	4.1
	전기전자	69	7.2	36.2	37.7	10.1	8.7
	정보서비스	21	4.8	38.1	23.8	14.3	19.0
기업규모	대기업	3	33.3	0.0	33.3	0.0	33.3
	중견기업	15	20.0	40.0	20.0	13.3	6.7
	중소기업	191	4.2	41.9	35.6	8.9	9.4
비즈니스 대상	B to C	37	0.0	29.7	35.1	10.8	24.3
	B to B	161	5.6	44.1	34.2	9.3	6.8
	기타	11	27.3	36.4	36.4	0.0	0.0
수출활동	수출 있음	137	5.8	40.9	35.8	8.8	8.8
	수출 없음	72	5.6	41.7	31.9	9.7	11.1

\* 응답자 Base: 어떤 유형의 복합적 활용전략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209)

▼ 부표 60 | 복합적 지식재산권 확보 필요성 판단, IP 포트폴리오 구축 설계 단계 - 3순위

(단위: 개, %)

	계	연구개발 기획 단계	연구개발 진행 단계	연구개발 완료 단계	후속연구 기획 단계	상품화 단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176	3.4	4.0	35.2	21.6	35.8	
산업분류	음식료품	63	3.2	6.3	28.6	17.5	44.4
	의약품	47	4.3	0.0	46.8	21.3	27.7
	전기전자	47	2.1	6.4	34.0	21.3	36.2
	정보서비스	19	5.3	0.0	31.6	36.8	26.3
기업규모	대기업	3	33.3	33.3	0.0	33.3	0.0
	중견기업	13	0.0	0.0	53.8	15.4	30.8
	중소기업	160	3.1	3.8	34.4	21.9	36.9
비즈니스 대상	B to C	31	0.0	6.5	22.6	25.8	45.2
	B to B	134	4.5	3.0	38.8	20.1	33.6
	기타	11	0.0	9.1	27.3	27.3	36.4
수출활동	수출 있음	114	3.5	4.4	35.1	21.1	36.0
	수출 없음	62	3.2	3.2	35.5	22.6	35.5

\* 응답자 Base: 어떤 유형의 복합적 활용전략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176)

▼ 부표 61 | 복합적 지식재산권 확보 필요성 판단, IP 포트폴리오 구축 설계 단계 - 복수응답

(단위: 개, %)

	계	연구개발 기획 단계	연구개발 진행 단계	연구개발 완료 단계	후속연구 기획 단계	상품화 단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280	51.1	62.5	64.3	23.9	35.7	
산업분류	음식료품	92	56.5	57.6	65.2	20.7	44.6
	의약품	52	80.8	73.1	76.9	25.0	28.8
	전기전자	112	33.9	60.7	57.1	21.4	30.4
	정보서비스	24	45.8	66.7	66.7	45.8	41.7
기업규모	대기업	4	50.0	75.0	50.0	50.0	25.0
	중견기업	17	70.6	76.5	64.7	23.5	29.4
	중소기업	259	49.8	61.4	64.5	23.6	36.3
비즈니스 대상	B to C	51	45.1	45.1	68.6	25.5	49.0
	B to B	214	51.9	65.9	63.6	23.8	32.7
	기타	15	60.0	73.3	60.0	20.0	33.3
수출활동	수출 있음	188	51.6	60.6	63.3	22.9	35.1
	수출 없음	92	50.0	66.3	66.3	26.1	37.0

\* 응답자 Base: 어떤 유형의 복합적 활용전략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280)

▼ 부표 62 | 권리 복합적 활용 전략의 효과 판단 - 권리의 독점/배타적 사용에 상호보완적 효과

(단위: 개, %, 점)

	계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281	0.7	4.3	5.7	24.2	25.3	22.1	17.8	5.1	72.3	
산업분류	음식료품	91	2.2	5.5	8.8	22.0	26.4	25.3	9.9	4.8	68.6
	의약품	52	0.0	5.8	5.8	32.7	21.2	13.5	21.2	4.9	70.6
	전기전자	114	0.0	3.5	4.4	20.2	29.8	24.6	17.5	5.2	74.3
	정보서비스	24	0.0	0.0	0.0	33.3	8.3	16.7	41.7	5.7	81.0
기업규모	대기업	4	0.0	25.0	0.0	25.0	25.0	25.0	0.0	4.3	60.7
	중견기업	17	0.0	11.8	11.8	11.8	29.4	17.6	17.6	4.8	68.9
	중소기업	260	0.8	3.5	5.4	25.0	25.0	22.3	18.1	5.1	72.7
비즈니스 대상	B to C	51	0.0	5.9	13.7	29.4	23.5	13.7	13.7	4.7	66.7
	B to B	215	0.9	4.2	4.2	23.3	24.7	23.7	19.1	5.1	73.4
	기타	15	0.0	0.0	0.0	20.0	40.0	26.7	13.3	5.3	76.2
수출활동	수출 있음	189	0.5	3.7	5.8	22.2	27.5	25.4	14.8	5.1	72.6
	수출 없음	92	1.1	5.4	5.4	28.3	20.7	15.2	23.9	5.0	71.9

\* 응답자 Base: 어떤 유형의 복합적 활용전략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281)

▼ 부표 63 | 권리 복합적 활용 전략의 효과 판단 - 상대방의 모방/분쟁에 대응에 상호보완적 효과

(단위: 개, %, 점)

	계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281	1.4	6.0	3.2	25.6	24.6	18.9	20.3	5.0	71.9	
산업분류	음식료품	91	1.1	4.4	6.6	30.8	22.0	23.1	12.1	4.9	69.4
	의약품	52	0.0	13.5	0.0	26.9	25.0	13.5	21.2	4.9	69.8
	전기전자	114	2.6	5.3	1.8	18.4	30.7	20.2	21.1	5.1	73.4
	정보서비스	24	0.0	0.0	4.2	37.5	4.2	8.3	45.8	5.5	79.2
기업규모	대기업	4	0.0	25.0	0.0	25.0	25.0	25.0	0.0	4.3	60.7
	중견기업	17	0.0	5.9	5.9	11.8	41.2	11.8	23.5	5.2	73.9
	중소기업	260	1.5	5.8	3.1	26.5	23.5	19.2	20.4	5.0	72.0
비즈니스 대상	B to C	51	0.0	7.8	5.9	37.3	17.6	9.8	21.6	4.8	68.6
	B to B	215	1.9	6.0	2.8	23.3	25.1	20.9	20.0	5.1	72.4
	기타	15	0.0	0.0	0.0	20.0	40.0	20.0	20.0	5.4	77.1
수출활동	수출 있음	189	1.1	5.8	2.6	22.2	28.6	21.7	18.0	5.1	72.6
	수출 없음	92	2.2	6.5	4.3	32.6	16.3	13.0	25.0	4.9	70.5

\* 응답자 Base: 어떤 유형의 복합적 활용전략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281)

▼ 부표 64 | 권리 복합적 활용 전략의 효과 판단 - 침해소송 피소 등 대응에 상호보완적 효과

(단위: 개, %, 점)

	계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281	2.1	7.8	3.2	23.8	24.6	18.9	19.6	5.0	70.8	
산업분류	음식료품	91	2.2	11.0	5.5	24.2	23.1	24.2	9.9	4.7	66.7
	의약품	52	0.0	11.5	0.0	32.7	21.2	15.4	19.2	4.9	69.5
	전기전자	114	3.5	5.3	2.6	16.7	32.5	18.4	21.1	5.1	72.7
	정보서비스	24	0.0	0.0	4.2	37.5	0.0	8.3	50.0	5.6	80.4
기업규모	대기업	4	0.0	25.0	0.0	25.0	25.0	25.0	0.0	4.3	60.7
	중견기업	17	0.0	17.6	0.0	5.9	47.1	5.9	23.5	4.9	70.6
	중소기업	260	2.3	6.9	3.5	25.0	23.1	19.6	19.6	5.0	71.0
비즈니스 대상	B to C	51	0.0	15.7	3.9	31.4	13.7	15.7	19.6	4.7	66.9
	B to B	215	2.8	6.5	3.3	22.3	26.5	18.6	20.0	5.0	71.3
	기타	15	0.0	0.0	0.0	20.0	33.3	33.3	13.3	5.4	77.1
수출활동	수출 있음	189	1.6	7.4	2.6	20.6	27.5	24.3	15.9	5.0	71.7
	수출 없음	92	3.3	8.7	4.3	30.4	18.5	7.6	27.2	4.8	69.1

\* 응답자 Base: 어떤 유형의 복합적 활용전략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281)

▼ 부표 65 | 권리 복합적 활용 전략의 효과 판단 - 기술판매, 라이선싱 협상에 상호보완적 효과

(단위: 개, %, 점)

	계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281	2.8	8.9	6.0	30.2	18.1	18.5	15.3	4.7	67.0	
산업분류	음식료품	91	3.3	11.0	6.6	30.8	23.1	16.5	8.8	4.4	63.4
	의약품	52	0.0	13.5	1.9	40.4	9.6	17.3	17.3	4.7	66.8
	전기전자	114	3.5	7.0	7.0	26.3	20.2	22.8	13.2	4.7	67.7
	정보서비스	24	4.2	0.0	8.3	25.0	8.3	8.3	45.8	5.4	77.4
기업규모	대기업	4	0.0	25.0	0.0	25.0	25.0	25.0	0.0	4.3	60.7
	중견기업	17	0.0	35.3	5.9	11.8	17.6	11.8	17.6	4.2	59.7
	중소기업	260	3.1	6.9	6.2	31.5	18.1	18.8	15.4	4.7	67.5
비즈니스 대상	B to C	51	2.0	13.7	9.8	37.3	9.8	11.8	15.7	4.4	62.5
	B to B	215	3.3	7.9	5.6	29.3	19.5	19.1	15.3	4.7	67.5
	기타	15	0.0	6.7	0.0	20.0	26.7	33.3	13.3	5.2	74.3
수출활동	수출 있음	189	2.6	9.5	6.9	28.6	20.1	21.2	11.1	4.6	66.0
	수출 없음	92	3.3	7.6	4.3	33.7	14.1	13.0	23.9	4.8	68.9

\* 응답자 Base: 어떤 유형의 복합적 활용전략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281)

▼ 부표 66 | 권리 복합적 활용 전략의 효과 판단 - 홍보, 마케팅 등에 상호보완적

(단위: 개, %, 점)

	계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281	1.1	6.8	6.4	27.4	19.2	21.7	17.4	4.9	70.3	
산업분류	음식료품	91	1.1	5.5	5.5	28.6	22.0	24.2	13.2	4.9	70.0
	의약품	52	0.0	15.4	3.8	36.5	11.5	11.5	21.2	4.6	66.2
	전기전자	114	1.8	5.3	7.9	21.1	23.7	26.3	14.0	4.9	70.7
	정보서비스	24	0.0	0.0	8.3	33.3	4.2	12.5	41.7	5.5	78.0
기업규모	대기업	4	0.0	50.0	0.0	25.0	25.0	0.0	0.0	3.3	46.4
	중견기업	17	0.0	17.6	5.9	11.8	29.4	5.9	29.4	4.9	69.7
	중소기업	260	1.2	5.4	6.5	28.5	18.5	23.1	16.9	4.9	70.7
비즈니스 대상	B to C	51	0.0	5.9	9.8	27.5	21.6	13.7	21.6	4.9	70.3
	B to B	215	1.4	7.4	6.0	27.9	17.7	22.8	16.7	4.9	69.8
	기타	15	0.0	0.0	0.0	20.0	33.3	33.3	13.3	5.4	77.1
수출활동	수출 있음	189	1.1	7.4	8.5	25.4	19.6	23.3	14.8	4.8	69.2
	수출 없음	92	1.1	5.4	2.2	31.5	18.5	18.5	22.8	5.1	72.5

\* 응답자 Base: 어떤 유형의 복합적 활용전략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281)

▼ 부표 67 | 권리 복합적 활용 전략의 효과 판단 - VC 투자유치 등 자금 조달시 상호보완적

(단위: 개, %, 점)

	계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281	4.6	11.7	8.9	28.5	18.5	16.0	11.7	4.4	62.8	
산업분류	음식료품	91	6.6	15.4	7.7	29.7	20.9	13.2	6.6	4.1	58.4
	의약품	52	5.8	19.2	7.7	32.7	5.8	17.3	11.5	4.1	58.8
	전기전자	114	2.6	7.9	10.5	25.4	25.4	18.4	9.6	4.6	65.3
	정보서비스	24	4.2	0.0	8.3	29.2	4.2	12.5	41.7	5.3	76.2
기업규모	대기업	4	0.0	50.0	0.0	50.0	0.0	0.0	0.0	3.0	42.9
	중견기업	17	0.0	29.4	11.8	17.6	23.5	0.0	17.6	4.1	58.0
	중소기업	260	5.0	10.0	8.8	28.8	18.5	17.3	11.5	4.4	63.4
비즈니스 대상	B to C	51	5.9	21.6	7.8	31.4	19.6	7.8	5.9	3.8	54.9
	B to B	215	4.7	10.2	9.3	28.4	18.1	16.3	13.0	4.5	63.7
	기타	15	0.0	0.0	6.7	20.0	20.0	40.0	13.3	5.3	76.2
수출활동	수출 있음	189	4.2	12.7	10.1	29.6	19.0	15.9	8.5	4.3	61.1
	수출 없음	92	5.4	9.8	6.5	26.1	17.4	16.3	18.5	4.6	66.1

\* 응답자 Base: 어떤 유형의 복합적 활용전략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281)

▼ 부표 68 | 권리의 복합적 활용 하지 않는 이유 - 지식재산권 출원/유지에 고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단위: 개, %, 점)

	계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229	27.1	9.6	7.4	31.9	14.8	4.4	4.8	3.3	47.2	
산업분류	음식료품	83	13.3	7.2	8.4	38.6	20.5	8.4	3.6	3.9	55.1
	의약품	29	20.7	13.8	10.3	37.9	10.3	0.0	6.9	3.3	47.3
	전기전자	66	13.6	13.6	10.6	30.3	19.7	4.5	7.6	3.7	53.2
	정보서비스	51	70.6	5.9	0.0	19.6	2.0	0.0	2.0	1.8	26.3
기업규모	대기업	4	0.0	25.0	0.0	50.0	25.0	0.0	0.0	3.8	53.6
	중견기업	14	21.4	14.3	7.1	50.0	0.0	0.0	7.1	3.2	45.9
	중소기업	211	28.0	9.0	7.6	30.3	15.6	4.7	4.7	3.3	47.1
비즈니스 대상	B to C	39	35.9	12.8	10.3	28.2	10.3	2.6	0.0	2.7	38.8
	B to B	182	25.3	9.3	6.6	32.4	15.4	4.9	6.0	3.4	48.9
	기타	8	25.0	0.0	12.5	37.5	25.0	0.0	0.0	3.4	48.2
수출활동	수출 있음	99	15.2	11.1	12.1	31.3	18.2	7.1	5.1	3.7	52.5
	수출 없음	130	36.2	8.5	3.8	32.3	12.3	2.3	4.6	3.0	43.1

\* 응답자 Base: 어떤 유형의 복합적 활용전략도 사용하지 않는 업체(n=229)

▼ 부표 69 | 권리의 복합적 활용 하지 않는 이유 - 적시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위: 개, %, 점)

	계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229	23.6	10.0	7.0	34.5	12.7	9.6	2.6	3.4	48.8	
산업분류	음식료품	83	9.6	8.4	8.4	37.3	19.3	12.0	4.8	4.0	57.7
	의약품	29	13.8	10.3	10.3	37.9	0.0	24.1	3.4	3.9	55.2
	전기전자	66	10.6	16.7	7.6	37.9	18.2	7.6	1.5	3.7	52.2
	정보서비스	51	68.6	3.9	2.0	23.5	2.0	0.0	0.0	1.9	26.6
기업규모	대기업	4	0.0	0.0	25.0	50.0	0.0	25.0	0.0	4.3	60.7
	중견기업	14	21.4	28.6	14.3	21.4	0.0	7.1	7.1	3.0	42.9
	중소기업	211	24.2	9.0	6.2	35.1	13.7	9.5	2.4	3.4	49.0
비즈니스 대상	B to C	39	33.3	7.7	5.1	23.1	17.9	10.3	2.6	3.3	46.5
	B to B	182	21.4	11.0	7.1	37.4	10.4	9.9	2.7	3.5	49.3
	기타	8	25.0	0.0	12.5	25.0	37.5	0.0	0.0	3.5	50.0
수출활동	수출 있음	99	11.1	15.2	11.1	35.4	12.1	12.1	3.0	3.7	53.0
	수출 없음	130	33.1	6.2	3.8	33.8	13.1	7.7	2.3	3.2	45.7

\* 응답자 Base: 어떤 유형의 복합적 활용전략도 사용하지 않는 업체(n=229)

▼ 부표 70 | 권리의 복합적 활용 하지 않는 이유 - 하나의 지식재산권만으로도 충분히 권리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위: 개, %, 점)

	계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229	5.2	7.9	7.4	34.5	14.8	16.2	14.0	4.5	64.3	
산업분류	음식료품	83	6.0	4.8	13.3	42.2	15.7	15.7	2.4	4.1	59.0
	의약품	29	6.9	17.2	6.9	24.1	13.8	27.6	3.4	4.2	59.6
	전기전자	66	1.5	10.6	6.1	28.8	18.2	24.2	10.6	4.7	66.7
	정보서비스	51	7.8	3.9	0.0	35.3	9.8	0.0	43.1	5.1	72.5
기업규모	대기업	4	0.0	0.0	25.0	50.0	0.0	25.0	0.0	4.3	60.7
	중견기업	14	0.0	7.1	0.0	35.7	7.1	21.4	28.6	5.2	74.5
	중소기업	211	5.7	8.1	7.6	34.1	15.6	15.6	13.3	4.5	63.7
비즈니스 대상	B to C	39	7.7	2.6	15.4	35.9	12.8	7.7	17.9	4.4	62.6
	B to B	182	4.9	9.3	6.0	35.7	14.3	17.0	12.6	4.5	63.8
	기타	8	0.0	0.0	0.0	0.0	37.5	37.5	25.0	5.9	83.9
수출활동	수출 있음	99	3.0	10.1	10.1	32.3	14.1	19.2	11.1	4.5	63.8
	수출 없음	130	6.9	6.2	5.4	36.2	15.4	13.8	16.2	4.5	64.7

\* 응답자 Base: 어떤 유형의 복합적 활용전략도 사용하지 않는 업체(n=229)

▼ 부표 71 | 권리의 복합적 활용 하지 않는 이유 - 기술주기가 짧아서 권리화하여 보호할 실익이 없어서

(단위: 개, %, 점)

	계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229	23.1	17.5	8.7	31.9	7.9	9.6	1.3	3.2	45.4	
산업분류	음식료품	83	10.8	15.7	9.6	43.4	13.3	7.2	0.0	3.5	50.6
	의약품	29	13.8	20.7	10.3	17.2	10.3	24.1	3.4	3.8	53.7
	전기전자	66	4.5	30.3	13.6	30.3	6.1	12.1	3.0	3.5	50.2
	정보서비스	51	72.5	2.0	0.0	23.5	0.0	2.0	0.0	1.8	26.1
기업규모	대기업	4	0.0	25.0	0.0	50.0	0.0	25.0	0.0	4.0	57.1
	중견기업	14	14.3	42.9	14.3	21.4	7.1	0.0	0.0	2.6	37.8
	중소기업	211	24.2	15.6	8.5	32.2	8.1	10.0	1.4	3.2	45.7
비즈니스 대상	B to C	39	33.3	10.3	12.8	30.8	7.7	5.1	0.0	2.8	40.7
	B to B	182	20.9	19.8	8.2	33.0	6.6	9.9	1.6	3.2	45.8
	기타	8	25.0	0.0	0.0	12.5	37.5	25.0	0.0	4.1	58.9
수출활동	수출 있음	99	9.1	25.3	14.1	33.3	7.1	9.1	2.0	3.4	48.5
	수출 없음	130	33.8	11.5	4.6	30.8	8.5	10.0	0.8	3.0	43.1

\* 응답자 Base: 어떤 유형의 복합적 활용전략도 사용하지 않는 업체(n=229)

▼ 부표 72 | 권리의 복합적 활용 하지 않는 이유

- 지식재산권을 주장하거나 침해소송을 당했을 때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단위: 개, %, 점)

	계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229	24.0	15.7	9.2	37.1	7.9	5.7	0.4	3.1	44.0	
산업분류	음식료품	83	10.8	16.9	13.3	44.6	9.6	4.8	0.0	3.4	48.5
	의약품	29	17.2	24.1	13.8	20.7	6.9	17.2	0.0	3.3	46.8
	전기전자	66	7.6	21.2	9.1	43.9	10.6	6.1	1.5	3.5	50.4
	정보서비스	51	70.6	2.0	0.0	25.5	2.0	0.0	0.0	1.9	26.6
기업규모	대기업	4	25.0	0.0	0.0	50.0	0.0	25.0	0.0	3.8	53.6
	중견기업	14	21.4	35.7	0.0	42.9	0.0	0.0	0.0	2.6	37.8
	중소기업	211	24.2	14.7	10.0	36.5	8.5	5.7	0.5	3.1	44.2
비즈니스 대상	B to C	39	33.3	10.3	12.8	38.5	2.6	2.6	0.0	2.7	39.2
	B to B	182	22.0	17.0	8.8	37.4	8.2	6.0	0.5	3.1	44.7
	기타	8	25.0	12.5	0.0	25.0	25.0	12.5	0.0	3.5	50.0
수출활동	수출 있음	99	11.1	22.2	14.1	41.4	6.1	5.1	0.0	3.2	46.3
	수출 없음	130	33.8	10.8	5.4	33.8	9.2	6.2	0.8	3.0	42.2

\* 응답자 Base: 어떤 유형의 복합적 활용전략도 사용하지 않는 업체(n=229)

▼ 부표 73 | 권리의 복합적 활용 하지 않는 이유 - IP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권리확보를 추진할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단위: 개, %, 점)

	계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229	21.8	13.5	4.8	31.9	12.2	10.0	5.7	3.5	50.3	
산업분류	음식료품	83	6.0	14.5	6.0	43.4	15.7	7.2	7.2	4.0	57.0
	의약품	29	17.2	20.7	6.9	20.7	13.8	17.2	3.4	3.6	51.2
	전기전자	66	9.1	15.2	6.1	30.3	15.2	15.2	9.1	4.1	58.4
	정보서비스	51	66.7	5.9	0.0	21.6	2.0	3.9	0.0	2.0	28.3
기업규모	대기업	4	0.0	25.0	0.0	50.0	0.0	25.0	0.0	4.0	57.1
	중견기업	14	14.3	28.6	7.1	28.6	0.0	0.0	21.4	3.6	51.0
	중소기업	211	22.7	12.3	4.7	31.8	13.3	10.4	4.7	3.5	50.1
비즈니스 대상	B to C	39	23.1	15.4	5.1	33.3	5.1	10.3	7.7	3.4	49.1
	B to B	182	21.4	13.7	4.9	31.9	12.1	10.4	5.5	3.5	50.4
	기타	8	25.0	0.0	0.0	25.0	50.0	0.0	0.0	3.8	53.6
수출활동	수출 있음	99	8.1	16.2	6.1	36.4	14.1	13.1	6.1	4.0	56.6
	수출 없음	130	32.3	11.5	3.8	28.5	10.8	7.7	5.4	3.2	45.5

\* 응답자 Base: 어떤 유형의 복합적 활용전략도 사용하지 않는 업체(n=229)

▼ 부표 74 | 권리의 복합적 활용 하지 않는 이유 - 권리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이 부족해서

(단위: 개, %, 점)

	계	1	2	3	4	5	6	7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227	27.8	15.0	6.2	32.2	10.6	4.8	3.5	3.1	44.5	
산업분류	음식료품	83	8.4	19.3	7.2	39.8	14.5	4.8	6.0	3.7	53.0
	의약품	28	25.0	25.0	7.1	25.0	14.3	0.0	3.6	2.9	41.8
	전기전자	66	18.2	15.2	7.6	33.3	12.1	10.6	3.0	3.5	50.0
	정보서비스	50	74.0	2.0	2.0	22.0	0.0	0.0	0.0	1.7	24.6
기업규모	대기업	4	0.0	25.0	0.0	75.0	0.0	0.0	0.0	3.5	50.0
	중견기업	14	28.6	21.4	7.1	35.7	0.0	0.0	7.1	2.9	40.8
	중소기업	209	28.2	14.4	6.2	31.1	11.5	5.3	3.3	3.1	44.6
비즈니스 대상	B to C	39	33.3	12.8	5.1	25.6	7.7	2.6	12.8	3.2	45.8
	B to B	180	26.1	16.1	6.7	34.4	9.4	5.6	1.7	3.1	44.0
	기타	8	37.5	0.0	0.0	12.5	50.0	0.0	0.0	3.4	48.2
수출활동	수출 있음	99	15.2	19.2	9.1	32.3	14.1	6.1	4.0	3.5	49.4
	수출 없음	128	37.5	11.7	3.9	32.0	7.8	3.9	3.1	2.9	40.7

\* 응답자 Base: 어떤 유형의 복합적 활용전략도 사용하지 않는 업체+무응답 및 응답 거절 업체 제외(n=227)

## ▼ 부표 75 | 보유 지식재산 적용 제품·서비스 매출기여도 - 지식재산 전체

(단위: 개, %)

	계	0%	25% 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01	13.2	27.7	18.4	22.0	18.8	38.6	
산업분류	음식료품	175	7.4	24.6	24.6	22.9	20.6	42.3
	의약품	79	11.4	34.2	11.4	20.3	22.8	37.1
	전기전자	177	7.3	27.1	18.6	26.6	20.3	43.9
	정보서비스	70	44.3	30.0	10.0	10.0	5.7	17.5
기업규모	대기업	8	37.5	37.5	0.0	12.5	12.5	18.0
	중견기업	28	7.1	25.0	32.1	14.3	21.4	40.1
	중소기업	465	13.1	27.7	17.8	22.6	18.7	38.8
비즈니스 대상	B to C	88	12.5	21.6	19.3	30.7	15.9	40.8
	B to B	391	13.0	29.7	18.4	19.4	19.4	37.9
	기타	22	18.2	18.2	13.6	31.8	18.2	41.8
수출활동	수출 있음	285	6.3	24.2	20.4	26.7	22.5	44.8
	수출 없음	216	22.2	32.4	15.7	15.7	13.9	30.4

\* 응답자 Base: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501)

## ▼ 부표 76 | 보유 지식재산 적용 제품·서비스 매출기여도 - 특허 및 실용신안권

(단위: 단위: 개, %)

	계	0%	25% 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02	24.1	34.3	17.1	16.7	7.8	25.7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25.6	34.7	17.6	16.5	5.7	23.5
	의약품	79	24.1	46.8	12.7	10.1	6.3	19.7
	전기전자	177	10.2	31.1	21.5	24.9	12.4	36.1
	정보서비스	70	55.7	27.1	10.0	4.3	2.9	11.7
기업규모	대기업	8	50.0	50.0	0.0	0.0	0.0	3.3
	중견기업	28	14.3	50.0	17.9	3.6	14.3	24.2
	중소기업	466	24.2	33.0	17.4	17.8	7.5	26.2
비즈니스 대상	B to C	88	27.3	36.4	12.5	20.5	3.4	22.2
	B to B	392	23.0	34.2	17.9	16.1	8.9	26.7
	기타	22	31.8	27.3	22.7	13.6	4.5	21.6
수출활동	수출 있음	285	13.0	39.3	18.6	19.6	9.5	29.8
	수출 없음	217	38.7	27.6	15.2	12.9	5.5	20.3

\* 응답자 Base: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502)

▼ 부표 77 | 보유 지식재산 적용 제품·서비스 매출기여도 - 상표권

(단위: 개, %)

	계	0%	25% 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04	42.9	35.1	10.1	7.3	4.6	15.3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21.0	39.2	17.0	11.9	10.8	26.3
	의약품	79	35.4	48.1	10.1	5.1	1.3	11.9
	전기전자	178	55.1	32.6	3.9	6.7	1.7	10.2
	정보서비스	71	74.6	16.9	8.5	0.0	0.0	4.3
기업규모	대기업	8	75.0	12.5	0.0	0.0	12.5	12.5
	중견기업	28	46.4	25.0	7.1	17.9	3.6	18.6
	중소기업	468	42.1	36.1	10.5	6.8	4.5	15.1
비즈니스 대상	B to C	88	29.5	34.1	15.9	15.9	4.5	22.1
	B to B	393	46.3	35.4	8.7	5.6	4.1	13.3
	기타	23	34.8	34.8	13.0	4.3	13.0	22.6
수출활동	수출 있음	286	32.2	41.6	11.9	9.4	4.9	18.3
	수출 없음	218	56.9	26.6	7.8	4.6	4.1	11.3

\* 응답자 Base: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504)

▼ 부표 78 | 보유 지식재산 적용 제품·서비스 매출기여도 - 디자인권

(단위: 개, %)

	계	0%	25% 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07	73.4	20.3	3.4	2.6	0.4	5.0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71.6	20.5	4.5	2.3	1.1	5.7
	의약품	80	81.3	16.3	1.3	1.3	0.0	2.5
	전기전자	178	62.9	28.7	4.5	3.9	0.0	7.1
	정보서비스	73	94.5	4.1	0.0	1.4	0.0	0.9
기업규모	대기업	8	75.0	25.0	0.0	0.0	0.0	2.9
	중견기업	30	83.3	16.7	0.0	0.0	0.0	1.6
	중소기업	469	72.7	20.5	3.6	2.8	0.4	5.2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68.9	22.2	4.4	4.4	0.0	6.5
	B to B	393	74.8	19.6	3.1	2.3	0.3	4.4
	기타	24	66.7	25.0	4.2	0.0	4.2	8.3
수출활동	수출 있음	287	64.5	27.9	3.8	3.5	0.3	6.6
	수출 없음	220	85.0	10.5	2.7	1.4	0.5	2.9

\* 응답자 Base: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507)

## ▼ 부표 79 | 보유 지식재산 적용 제품·서비스 매출기여도 - 저작권

(단위: 개, %)

	계	0%	25% 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0	95.9	3.3	0.6	0.2	0.0	0.5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96.0	4.0	0.0	0.0	0.0	0.2
	의약품	80	98.8	1.3	0.0	0.0	0.0	0.0
	전기전자	180	93.9	3.9	1.7	0.6	0.0	1.1
	정보서비스	74	97.3	2.7	0.0	0.0	0.0	0.3
기업규모	대기업	8	100.0	0.0	0.0	0.0	0.0	0.0
	중견기업	30	86.7	10.0	3.3	0.0	0.0	1.7
	중소기업	472	96.4	3.0	0.4	0.2	0.0	0.4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95.6	3.3	0.0	1.1	0.0	0.8
	B to B	396	96.2	3.3	0.5	0.0	0.0	0.4
	기타	24	91.7	4.2	4.2	0.0	0.0	2.1
수출활동	수출 있음	289	95.5	3.5	1.0	0.0	0.0	0.6
	수출 없음	221	96.4	3.2	0.0	0.5	0.0	0.5

\* 응답자 Base: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510)

## ▼ 부표 80 | 보유 지식재산 적용 제품·서비스 매출기여도 - 신지식재산권

(단위: 개, %)

	계	0%	25% 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 이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99.8	0.2	0.0	0.0	0.0	0.0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100.0	0.0	0.0	0.0	0.0	0.0
	의약품	81	100.0	0.0	0.0	0.0	0.0	0.0
	전기전자	180	99.4	0.6	0.0	0.0	0.0	0.1
	정보서비스	75	100.0	0.0	0.0	0.0	0.0	0.0
기업규모	대기업	8	100.0	0.0	0.0	0.0	0.0	0.0
	중견기업	31	100.0	0.0	0.0	0.0	0.0	0.0
	중소기업	473	99.8	0.2	0.0	0.0	0.0	0.0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100.0	0.0	0.0	0.0	0.0	0.0
	B to B	398	99.7	0.3	0.0	0.0	0.0	0.0
	기타	24	100.0	0.0	0.0	0.0	0.0	0.0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99.7	0.3	0.0	0.0	0.0	0.0
	수출 없음	222	100.0	0.0	0.0	0.0	0.0	0.0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부표 81 | 보유 지식재산 적용 제품·서비스 매출기여도 - 영업비밀

(단위: 개, %)

	계	0%	25% 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 이상	영업비밀 매출기여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평균
전체	511	97.1	2.0	0.4	0.4	0.2	0.8
산업분류	음식료품	175	96.6	3.4	0.0	0.0	0.4
	의약품	81	93.8	3.7	1.2	0.0	2.0
	전기전자	180	97.8	0.6	0.6	1.1	0.9
	정보서비스	75	100.0	0.0	0.0	0.0	0.0
기업규모	대기업	8	100.0	0.0	0.0	0.0	0.0
	중견기업	31	96.8	0.0	3.2	0.0	1.3
	중소기업	472	97.0	2.1	0.2	0.4	0.8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98.9	0.0	0.0	0.0	1.1
	B to B	397	97.2	1.8	0.5	0.5	0.7
	기타	24	87.5	12.5	0.0	0.0	1.5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96.9	1.7	0.7	0.7	0.8
	수출 없음	221	97.3	2.3	0.0	0.0	0.8

\* 응답자 Base: 응답 거절 및 무응답 제외 업체(n=511)

▼ 부표 82 |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R&D 수주 - 정부 R&D

(단위: 개, %)

	계	없음	있음	
		비율	비율	
전체	512	55.9	44.1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65.9	34.1
	의약품	81	51.9	48.1
	전기전자	180	48.9	51.1
	정보서비스	75	53.3	46.7
기업규모	대기업	8	87.5	12.5
	중견기업	31	51.6	48.4
	중소기업	473	55.6	44.4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63.3	36.7
	B to B	398	55.3	44.7
	기타	24	37.5	62.5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51.7	48.3
	수출 없음	222	61.3	38.7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 부표 83 |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R&amp;D 수주 - 민간 R&amp;D

(단위: 개, %)

	계	없음	있음
		비율	비율
전체	512	92.0	8.0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90.9
	의약품	81	96.3
	전기전자	180	93.3
	정보서비스	75	86.7
기업규모	대기업	8	100.0
	중견기업	31	90.3
	중소기업	473	92.0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93.3
	B to B	398	92.2
	기타	24	83.3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91.4
	수출 없음	222	92.8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 부표 84 |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투자자금 유치 - 정책자금 조달

(단위: 개, %)

	계	없음	있음
		비율	비율
전체	512	78.1	21.9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79.0
	의약품	81	82.7
	전기전자	180	78.9
	정보서비스	75	69.3
기업규모	대기업	8	100.0
	중견기업	31	87.1
	중소기업	473	77.2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75.6
	B to B	398	79.1
	기타	24	70.8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77.6
	수출 없음	222	78.8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부표 85 |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투자자금 유치 - VC 등 투자유치

(단위: 개, %)

	계	없음	있음
		비율	비율
전체	512	92.4	7.6
산업분류	음식료품	97.7	2.3
	의약품	90.1	9.9
	전기전자	92.8	7.2
	정보서비스	81.3	18.7
기업규모	대기업	100.0	0.0
	중견기업	100.0	0.0
	중소기업	91.8	8.2
비즈니스 대상	B to C	91.1	8.9
	B to B	92.5	7.5
	기타	95.8	4.2
수출활동	수출 있음	93.4	6.6
	수출 없음	91.0	9.0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부표 86 |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투자자금 유치 - 대출

(단위: 개, %)

	계	없음	있음
		비율	비율
전체	512	84.4	15.6
산업분류	음식료품	86.9	13.1
	의약품	92.6	7.4
	전기전자	82.2	17.8
	정보서비스	74.7	25.3
기업규모	대기업	100.0	0.0
	중견기업	93.5	6.5
	중소기업	83.5	16.5
비즈니스 대상	B to C	83.3	16.7
	B to B	84.4	15.6
	기타	87.5	12.5
수출활동	수출 있음	84.1	15.9
	수출 없음	84.7	15.3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 부표 87 | 2017~2019년 대비 향후 복합적 권리 활용 전략의 중요도

(단위: 개, %, 점)

	계	중요도 매우 감소	중요도 감소	중요도 약간 감소	동일	중요도 약간 증가	중요도 증가	중요도 매우 증가	평균	100점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12	1.0	2.0	2.5	39.6	25.0	21.9	8.0	4.8	69.1	
산업분류	음식료품	176	2.3	3.4	4.5	28.4	31.8	21.0	8.5	4.8	68.7
	의약품	81	0.0	2.5	0.0	42.0	14.8	34.6	6.2	5.0	71.1
	전기전자	180	0.6	0.6	1.7	40.6	31.1	20.6	5.0	4.8	69.0
	정보서비스	75	0.0	1.3	2.7	61.3	5.3	13.3	16.0	4.7	67.8
기업규모	대기업	8	12.5	0.0	0.0	62.5	12.5	0.0	12.5	4.1	58.9
	중견기업	31	3.2	0.0	0.0	35.5	29.0	25.8	6.5	4.9	70.0
	중소기업	473	0.6	2.1	2.7	39.5	24.9	22.0	8.0	4.8	69.2
비즈니스 대상	B to C	90	1.1	4.4	2.2	41.1	25.6	16.7	8.9	4.7	67.3
	B to B	398	1.0	1.5	2.8	39.7	25.4	22.4	7.3	4.8	69.0
	기타	24	0.0	0.0	0.0	33.3	16.7	33.3	16.7	5.3	76.2
수출활동	수출 있음	290	0.7	2.1	2.4	37.9	26.2	24.1	6.6	4.9	69.4
	수출 없음	222	1.4	1.8	2.7	41.9	23.4	18.9	9.9	4.8	68.7

\* 응답자 Base: 응답 업체 전체(n=512)



혁신·경제 - 기업경영

**지식재산 경영과 기업 성과:  
복합적 권리 활용을 중심으로**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발행인 권택민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3, 9층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화 02-2189-2600  
홈페이지 [www.kiip.re.kr](http://www.kiip.re.kr)  
디자인/인쇄 (주)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



혁신경제

기업경영...

## 지식재산 경영과 기업 성과 : 복합적 권리 활용을 중심으로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대전 서구 청사로 189  
Tel : 1544-8080 Fax : 042)489-0194  
<http://www.kipo.go.k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Tel : 02)2189-2600 Fax : 02)2189-2694  
<http://www.kiip.re.kr>

ISBN : 979-11-91116-38-0  
DOI : 10.8080/P9791191116380